

2017 건설공사손해공제 관련 법규집



LOCAL FINANCE ASSOCIATION

차 례 CONTENTS

1. 건설공사손해공제 사업안내	5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11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21
4. 건설공사손해공제규정	39
5. 건설공사손해공제규칙	49
6. 건설공사손해공제 약관	
별첨 1. 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번역문)	65
별첨 2. 영국식 건설공사보험약관(번역문)	109
별첨 3. 독일식 조립공사보험약관(번역문)	183
7. 건설공사손해공제 가입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	231
□ 공제가입 및 사고처리 문의처	235



2017 건설공사손해공제 관련 법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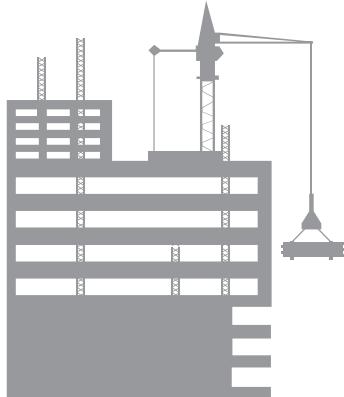
01

건설공사손해공제 사업안내

L O C A L F I N A N C E A S S O C I A T I O N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회원에 대한 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주요 공제사업



재해복구공제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재산에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비 지급



손해배상공제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 관리하자 및
행정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단체상해공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사망 및 상해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



시민안전공제

시민의 일상생활 중에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공제사업의 특징 (회원의 혜택)

경제성

민간 보험 대비 매우 저렴한 공제회비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보상

공공성

공제사업 운영 수익을 적립하여
회원에게 환원
(융자·무상 지방재정 지원)

편리성

공제가입 절차 간소화, 공제회비 납부유예,
신속한 보상 및 민원처리·소송업무 대행



건설공사손해공제

건설공사 중 사고로 인한
공사목적물 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손해보상금 지급

토목 및 건축, 플랜트 등의 공사 중에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 관계자가 입은 공사목적물 손해와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 설립근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법률 제6872호, 2003.5.15)



• 주요연혁 •

1964. 9월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

1988. 6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명칭 변경



• 회원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공사·공단·조합

행정안전부



* 건설공사손해공제 사업이란?



사업 추진 목적

1

회원의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을 공제가입으로 전환하고 발주자 가입방식을 활성화시켜
보험료 예산 절감을 도모

1 건설공사 보험가입 방식

- **발주자 가입(OCIP)** 건설공사 발주청이 직접 보험가입
 - **시공자 가입(CCIP)** 공사원가에 보험료 계상, 시공자가 보험가입
- ▶ CCIP의 단점 : 공사원가에 계상한 보험료와 실제 지불한 보험료의 차액정산 불가 및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므로 보험료 인하가 어려운 실정

2 OCIP 가입방식 적용 사례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부터 공기업 최초로 발주자 가입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각 공공기관에서 발주자 가입 방식에 의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 예산을 절감

〈건설공사손해공제 가입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

제1장 제5절(공사 손해보험 운용)

2. 보험가입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 입찰공사, 해당 공종 추정가격이 200억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공제가입 (보험가입)

2

1 가입대상 : 건축 · 토목 및 플랜트 등 모든 공사

- **건설공사** 건물, 도로, 철도시설, 지하철, 교량, 터널, 상하수도, 부두, 방파제, 항만시설 등의 신·증·개축 공사 등
- **조립공사** 발전소, 석유화학 공장, 쓰레기 소각시설, 전기설비, 발전기 등 각종 기계류 및 플랜트 설치·조립 공사 등

2 가입신청 : 발주자 가입 및 시공자 가입 병행

- **원칙** 발주자 가입 → 회원이 직접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 **예외** 시공자 가입 → 시공자가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 ▶ 회원의 공제가입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시공자에게 공제가입을 위임한 경우에 시공자도 신청이 가능

3 가입형태 : 개별가입 또는 포괄가입 중 선택

구 분	개별가입	포괄가입(OP)
의 의	각 공사별로 공제가입	모든 공사에 대해 일괄 가입 (1년간 예정 공사목록 통보)
가입액	각 공사별 총 공사비 계약액	연도별 공사비 집행예정액
가입기간	각 공사별 공사 소요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연도 중간에 가입 가능)
공제회비	각 공사별로 회비납부	매년 예정 공사 일괄 납부후, 11월 말에 정산 (OP가입시 회비 추가 할인)

4 가입절차

※ 민간 보험가입은 경쟁입찰이 필요하나, 회원의 공제가입시 입찰 불필요

사고처리 (보험금 지급)

3

1 사고처리 기준 : 공제가입시 선택한 건설공사보험약관을 적용

- 독일식 약관** 진동·지지대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한 손해 및 주변손해 보상을 특별약관으로 담보
- 영국식 약관** 진동·지지대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한 손해 및 주변손해 보상을 보통약관으로 담보

2 주요 보상하는 손해**• 공사목적물**

- ▶ 폭풍, 태풍, 흉수, 강우, 강설, 해일 등의 자연재해
- ▶ 화재, 낙뢰, 폭발, 전기적 사고
- ▶ 차량 및 항공기 충돌 또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
- ▶ 지면침하, 암석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절도, 도난 손해
- ▶ 공사시공 중의 작업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로 인한 사고

• 제3자 배상책임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전쟁, 침략, 내란 등으로 생긴 손해와
핵반응, 방사선 오염 등

3 사고처리 절차

※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처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내 10개의 손해보험사와 MOU체결
(간사보험사 : 삼성화재)을 통해 사고처리

4 건설공사관련 민원 대응 : 민원처리전담조직 운영

- 위험관리 MOU체결 손해보험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 → 쟁송발생시 소송 대행

※ 건설공사손해공제의 피공제자(피보험자)는 회원뿐만 아니라, 시공자 등도 포함되므로
이해관계자 공동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건설공사손해공제

FAQ

Q

- 건설공사에 기계장치류의 조립공사가 일부 포함되거나 조립공사에 건축, 토목공사가 일부 포함된 경우의 공제등록 선택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A

통상적으로 공사는 건축, 토목공사가 100%이거나 또는 설비, 기계장치의 조립공사가 100%인 경우보다는 양자가 일정부분 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공제 등록은 건축, 토목공사가 주(主)가 되면 독일식 또는 영국식 건설공사 공제약관을 선택하고, 설비, 기계류의 조립공사가 주(主)가 되면 독일식 조립공사 공제약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Q

-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건설공사손해공제에서 주위재산이란 회원 또는 시공자가 보호, 관리 또는 통제하고 있는 공사현장 주변의 시설물을 말하는데, 이 시설물은 공사 목적물 자체에 포함되지 않고, 제3자의 배상책임담보 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므로 별도의 가입금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건설공사 손해공제에서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위재산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Q

- 공제가입금액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A

공제가입시 회원의 관급 또는 지급 자재비를 공제등록금액에 포함시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물가 상승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 변동시 변동금액을 통보하여 변경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포괄가입시에는 매년 11월 말에 정산을 하기에 변경등록이 필요 없음)

Q

- 공제기간 설정시 주의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공제기간 중 공사 중단시 공제회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공사 완공 전 공제기간 종료 예상시 반드시 공제회에 통보하여 공제기간을 연장 조치해야 합니다.
- 증권상의 공제기간 종료 전에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공제회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1개의 공제증권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시공될 경우 각각의 시설물이 완성되어 인도되거나 사용에 들어가면 먼저 완성된 시설물부터 공제효력이 종료됩니다.

Q

- 공사시작 후 공제가입은 가능합니까?

A

공사가 이미 시작된 후에 공제가입 하고자 할 경우, 가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의 공제가입은 공사 시작지점부터 공제가입시점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하며 공제기간은 전체기간으로 합니다.(단, 사고 발생이 추후 확인될 때는 동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2003. 5. 15 제정 법률 제 6872호
 2008. 2. 29 개정 법률 제 8852호
 2011. 8. 4 개정 법률 제10994호
 2013. 3. 23 개정 법률 제11690호
 2014. 11. 19 개정 법률 제12844호
 2017. 3. 21 개정 법률 제14620호
 2017. 7. 26 개정 법률 제1483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 시 · 군 · 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8.4.]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와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전문개정 2011.8.4.]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8.4.]

제9조(총회)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전문개정 2017.3.21.]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응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填)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전문개정 2011.8.4.]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2.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3.21.>]

-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에서 이동 <2017.3.21.>]

부 칙 <제6872호, 2003. 5.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제회의 자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공제회에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제6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 칙 <제8852호, 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 까지 생략

〈23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10994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690호, 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 까지 생략

〈2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4〉 부터 〈71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 까지 생략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620호, 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L O C A L F I N A N C E A S S O C I A T I O N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1964.	9.	3	제정	1969.	1.	1	개정
1971.	12.	13	개정	1977.	10.	29	개정
1979.	7.	19	개정	1979.	12.	1	개정
1981.	9.	22	개정	1983.	1.	25	개정
1986.	1.	28	개정	1988.	6.	1	전문개정
1989.	7.	29	개정	1991.	12.	30	개정
1993.	5.	18	개정	1994.	1.	1	개정
1994.	6.	10	개정	1996.	1.	1	개정
1998.	2.	23	개정	1998.	11.	11	개정
2000.	2.	19	개정	2002.	10.	31	전문개정
2003.	8.	8	전문개정	2007.	4.	5	개정
2008.	2.	27	개정	2008.	4.	1	개정
2009.	12.	31	개정	2011.	4.	26	개정
2012.	2.	10	개정	2012.	12.	26	개정
2013.	10.	22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8.	14	개정	2015.	2.	13	개정
2015.	9.	22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8.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42번지에 둔다. <개정 2008.2.27.>

②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 지부를 둔다. <개정 2008.2.27., 2012.12.26.>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2.10.>

1. 행정자치부 <개정 2013.10.22., 2015.2.1.>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개정 2008.2.27, 2012.2.10>
3.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제5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회원은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회원은 공제회의 사업수행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납부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회원이 통·폐합 되었을 경우
2. 제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개정 2017.8.1.>
3.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제 3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8조(구성) ①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된다.

제9조(소집과 의사)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이사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012.2.10.>

④ 이사장이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일 5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와 회의안건을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회원은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표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공제회의 해산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록)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회의의 전말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행정자치부 공제회업무 담당과장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다만,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은 옥외광고업무 관련 안건에 한하여 참석한다. <개정 2007.4.5., 2008.2.27., 2008.4.1., 2013.10.22., 2014.2.13., 2017.8.1.>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공유재산 담당국장 <개정 2008.2.27., 2012.12.26.>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된다.

제13조(소집과 의사) ①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회의개회일 5일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와 회의안건을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사항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고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운영위원은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표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구할 수 있다.

⑥임원해임 등에 관한 안건 등 운영위원 1/3이상이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제14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의 추천과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7.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회의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회의의 전말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문위원회

제16조(경영자문위원회) ①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구성 등) 삭제 <2016.12.22.>

제 4 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공제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4인 <개정 2008.2.27., 2017.8.1.>
3. 감사 2인 이내 <개정 2017.8.1.>
- ②이사장 및 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8.1.>
- ③감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신설 2017.8.1.>
- ④이사장 및 이사와 상임감사는 공제회 이외의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7.8.1.>

제19조(임원의 자격)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행정·재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지방행정·재정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자
3. 공제회에서 다년간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4. 옥외광고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신설 2008.2.27.>

제20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4.1., 2013.10.22., 2015.2.13.>

- ②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4.1., 2013.10.22., 2015.2.13.>

제2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새로이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8.14.>

제22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순서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7., 2017.8.1.>

- ③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의2(신분보장 등) ①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때
- ② 임원이 제1항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 및 총회의 의결로 해임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해당 임원에 대해 운영위원회 의결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시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제 5 장 조 직

제24조(사무기구) ①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부설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부설기관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1.>

② 사무기구의 분장사무와 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제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9.22.>

제24조의2(공무원등의 파견) 공제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7., 2008.4.1., 2013.10.22., 2015.2. 13., 2016.12.22.>

제25조(지부) ① 지부에는 지부장을 두며 지부장은 특별시의 행정제1부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로 한다. <개정 2008.2.27., 2012.12.26.>

② 지부장은 당해 지부의 공제사무를 관장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자문위원 위촉) 공제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회계·세무·사업개발·기금운용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장 사 업

제27조(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지방재정지원 공제사업 <개정 2012.12.26.>
- 3의2. 상해공제사업 <신설 2017.8.1.>
4. 삭제 <2012.12.26.>
5.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6. 삭제 <2011.4.26.>
7.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8.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9.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 광고사업 및 부대사업 등 관련사업 <개정 2008.2.27., 2016.12.22.>
10.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회계제도 연구지원사업 및 지방계약지원 사업 <신설 2015.9.22., 개정 2017.8.1.>
11.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2008.2.27.>
12. 그 밖에 공제회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수의사업 <개정 2008.2.27.>

제28조(재해복구공제사업) ①공제회는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및 관공선 등 (이하 “공제등록물건”이라 한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②공제회는 공제등록물건의 사고예방과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재원을 대여할 수 있다.
 ③공제등록물건에 대한 등록·회비납부·재해복구비 지급 및 대여 등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배상공제사업) ①공제회는 회원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업무 를 지원한다.

- ②공제회는 손해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배상공제사업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 또는 민원업무의 등록·회비납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 ①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서울특별시와 그 관할 자치 구는 제외한다)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의 신·증축 매입 또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상의 지방채 발행대상사업과 지방관공선 신규건조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12.31., 2012.12.26., 2013.12.31. >

②지원대상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지원 공제적립금 운용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8.4.1., 2012.12.26., 2013.10.22., 2015.2.13. >

③재원조성, 회비납부·지원금 지원 및 환수 등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6. >

제31조 삭제 <2011.4.26.>

제32조(회원지원사업) ①공제회는 회원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관련 도서발간사업
2. 지방재정관련 학술행사 등 지방재정제도발전연구사업
3. 지방재정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4. 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연찬사업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회원지원사업비는 공제회계 재원으로 한다.

③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2(옥외광고사업 등) ①공제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및 부대사업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2. >

②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기타 수익금 배분 등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

[본조신설 2008.2.27.]

제32조의3(지방회계통계사업 등) ①공제회는 지방회계통계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1. >

1. 지방회계 및 지방재정통계 개선방안 연구사업 <개정 2017.8.1. >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무회계결산 지원사업
3. 국가/국제기준에 의한 재정통계 분석 사업
4.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5. 지방계약 상담·교육, 계약분쟁 사건 검토 및 조사사업

②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출연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2.27.>

② 공제회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필요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7.>

제34조(경비)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입금과 적립금의 증식이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2.27.>

제35조(특별회계)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의 편성과 승인)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4.1., 2013.10.22., 2015.2.13.>

제37조(결산보고)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재산목록이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 2013.10.22., 2015.2.13.>

제38조(적립금조성) 공제회는 매 결산기마다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과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7.>

1. 회비
2. 이자수입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신설 2008.2.27.>
5. 그 밖의 수입 <개정 2008.2.27.>

제39조(현금자산의 관리) 공제회의 자산 중 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이 관리한다.

1. 은행예금 또는 신탁
2. 국공채·주식 또는 증권투자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방법

제40조(회계처리) 공제회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재무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장 해 산

제41조(해산) 공제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 2013.10.22., 2015.2.13.>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8.4.1., 2013.10.22., 2015.2.13.>

제9장 보 칙

제43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되 사업·조직·인사 및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부설기관에 대한 사업·조직·인사에 관한 사항은 부설기관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경영공시) 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88.6.1.>

- (시행일) 본 정관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정관 제12호, 1989.7.29.>

본 정관은 198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3호, 1991.12.30.>

-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기획이사 및 업무이사의 분장업무는 종전의 기획관리실장과 사무국장이 각각 그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정관 제14호, 1993.5.18.〉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5호, 1993.11.18.〉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6호, 1994.1.1.〉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7호, 1994.6.10.〉

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 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대여되었거나 대여키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최초 임명일은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 한다.

부 칙 〈정관 제18호, 1996.1.1.〉

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2조의 사계전문가 비상임이사 2인의 최초임명일은 이 정관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폐지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공공시설정비기금특별회계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정관 제19호, 1998.2.23.〉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0호, 1998.11.11.〉

1. (시행일) 본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재해복구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관 제26조”를 “정관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정관 제25조제2항”을 “정관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정관 제25조와 제26조”를 “정관 제27조와 제28조”로 한다.
②재해복구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26조”를 “정관 제28조”로 한다.
③재해복구비대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4조 5호 및 제27조2”를 “정관 제4조 5호 및 제29조”로 한다.
④지방관공선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4조 및 제28조의 2”를 “정관 제4조 및 제30조”로 한다.
⑤공공시설정비지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시설정비지원규정”을 “공공청사정비지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정관 제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3조”를 “정관 제4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정관 제33조”를 “정관 제35조”로 한다.
⑥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기획이사, 업무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
⑦회원공동및지원사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4조제6호 및 제7호와 제34조의 2”를 “정관 제8호 및 제39조”로 한다.
⑧지부조직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22조”를 “정관 제23조”로 한다.
⑨재무회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소관담당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
⑩다른 규정 및 규칙의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정관 제21호, 2000.2.19.>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2호, 2002.10.31.>

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지부조직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23조”를 “정관 제22조”로 한다.
 ②재해복구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관 제27조”를 “정관 제26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정관 제27조”를 “정관 제26조”로 한다.
 제15조중 “정관 제26조와 제28조”를 “정관 제25조와 제26조”로 한다.
 ③재해복구비대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4조5호 및 제29조”를 “정관 제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④지방관공선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4조 및 제30조”를 “정관 제4조 및 제2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배상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4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를 “정관 제4조, 제31조, 제32조”로 한다.
 제3조중 “정관 제37조”를 “정관 제32조”로 한다.
 제6조중 “정관 제37조”를 “정관 제32조”로 한다.
 제8조중 “정관 제38조”를 “정관 제32조”로 한다.
 ⑥공공시설정비지원규정의 제목을 공공청사정비공제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정관 제4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를 “정관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청사정비공제기금의”로 한다.
 제6조중 “정관 제35조”를 “정관 제30조”로 한다.
 ⑦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4조 및 제39조”를 “정관 제4조 및 제35조”로 한다.
 ⑧지방공기업발전지원사업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관 제4조, 제36조의2 내지 제38조의4”를 “정관 제4조, 제3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⑨다른 규정 및 규칙의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지방재정경제국장”으로 “재정경제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정관 제23호, 2003.8.8.>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4호, 2007.4.5.>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5호, 2008.2.27.〉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6호, 2008.4.1.〉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7호, 2009.12.31.〉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8호, 2011.4.26.〉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9호, 2012.2.10.〉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0호, 2012.12.26.〉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1호, 2013.10.22.〉

1. (시행일) 이 정관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다른 규정 및 규칙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정관 제32호, 2013.12.31.>

이 정관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3호, 2014.8.14.>

이 정관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4호, 2015.2.13.>

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다른 규정 및 규칙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정관 제35호, 2015.9.22.>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6호, 2016.12.22.>

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정관, 다른 규정 및 규칙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3. (다른 규정의 인용) 정관, 다른 규정 및 규칙에서 인용한 정관 “제24조의1”은 “제23조의2”로 “32조의1”은 “제32조의2”로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정관 제37호, 2017.8.1.>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4

건설공사손해공제규정

건설공사손해공제규정

2017. 7. 1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손해공제(이하 “건설공제”라 한다)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건설공제라 함은 회원이 공공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발주한 건설공사의 관리자 등으로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공제자 : 건설공사 중의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손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자로서 회원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2. 공제등록 :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건설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제요율 : 공제등록 물건에 대한 공제회비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요율 및 손해율에 따른 조정계수를 말한다.
4. 공제회비 : 공제등록 물건의 공종, 공법 및 특별담보 등에 따라 건설공사 손해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공제가액 : 공제목적물의 재산가액으로서 공제등록 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6. 공제등록금액 : 회원이 공제등록시 신청한 금액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7. 공제목적물 : 회원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건물, 구축물 및 부대설비 등 공사

- 목적물과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사용 기계 등을 말한다.
8. 공제기간 : 공제등록에 따른 손해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제기간의 시기와 종기는 해당 공사의 개시 또는 공사 목적물이 공사현장에 최초로 하역되었을 때부터 회원이 인수 또는 사용에 들어 갈 때까지로 한다.
 9. 공제등록증권 :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10. 공제금 : 공제등록 물건에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공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11. 건설공사 : 공공시설물의 설치, 유지, 보수 또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또는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일반도로, 고속도로, 교량, 댐 등의 토목공사
 - 나. 발전소,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산업설비공사
 - 다. 고층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주택공사
 - 라. 경기장, 전시시설, 사무용 빌딩, 학교, 병원 등의 건축공사
 - 마. 조경공사 또는 기타 토목시설 및 기타 건물공사

제 2 장 공제등록

제4조(공제등록 대상) 회원이 공제등록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계약의 목적물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회원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 중인 공공시설물

제5조(공제등록 신청) ① 회원은 공제등록 대상을 공제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등록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에게 공제 회의 건설공제에 등록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계약자가 공제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공제등록한 회원 또는 계약자에게 공제등록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제등록금액) ① 공제등록 대상 건설공사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공제등록금액은 공제목적 물이 완성된 시점의 공제가액(공사자재, 임금, 운송비, 관세, 세제공과금 및 회원이 공급하는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완성가액”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공사용 기계기구 및 공사용 중장비의 공제등록금액은 공제목적물과 같은 종류 또는 같은 능력의 신조달가액이어야 한다.
 ③ 회원 또는 계약자는 물가 또는 임금의 뚜렷한 변동으로 공제등록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 공제등록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잔존 공제등록금액) ① 공제회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회원 또는 계약자가 추가 공제회비를 납부하여 공제등록금액을 복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등록금액에서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잔액을 손해가 발생한 후의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등록금액으로 한다.
 ② 공제목적물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공제등록의 무효)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등록신청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공제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공제등록의 해지) ① 회원 또는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등록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계약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회원 또는 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4.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회원 또는 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공제등록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공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없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공제회비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3. 공제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제 3 장 공제회비

제10조(공제회비 납부) ① 회원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제등록한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제회비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공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자가 공제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제회비는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손해율에 따라 추가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

③ 공제회비의 납부기한은 공제등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예산의 미확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회비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공제회비 환급) ① 제8조에 의하여 공제등록이 무효인 경우에는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을 환급한다.

②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날로 하며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에, 제9조제2항 각호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날에 각각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공제기간에 대하여 일단으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환급한다.

③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공제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공제금 지급

제12조(손해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손해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

② 공제회가 회원 또는 계약자로 부터 공제등록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손해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기간의 첫날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입증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3조(공제금의 지급범위) ① 공제회는 약관의 제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제3자

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② 공제회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개별 공제등록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공제등록금액 한도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고에 따른 공제목적물의 잔존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등록증권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④ 공제회는 제6조 및 제7조의 공제등록금액이 완성가액 또는 신조달가액 보다 적을 경우에 피공제자가 보상받을 금액은 공제등록금액이 완성가액 또는 신조달가액에 비례하는 정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⑤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고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급행운임 등의 특별비용은 서면으로 사전에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4조(재물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공제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 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통지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손해를 입은 물건은 공제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승인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손해상황조서, 수리견적서, 신조달가액 견적서 및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서류, 장부, 기타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 또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③ 사고를 입은 물건을 완전히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 또는 가동하거나 공제회의 동의없이 임시로 수리하여 사용 또는 가동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배상책임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회원 또는 계약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회원 또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제금의 지급신청)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금 지급신청서
2. 공제회가 발급한 공제등록증권 사본
3. 배상책임 손해발생으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한 증빙서류
4. 기타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17조(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금의 지급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회가 추정한 공제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한다)이 경과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통지의무) ① 회원 또는 계약자는 공제등록 이전에 공사종류, 공사금액 등 공제목적물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 또는 계약자는 공제등록 이후에 공제목적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하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공제등록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공제등록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공사를 중단 또는 재개한 때.
 4. 설계, 공사방법서 또는 시행방법 등에 중요한 변경이 있은 때.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의 공제회비를 환급하여야 하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소멸시효)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회비 또는 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약관의 제공 및 해석)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회원 또는 계약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적립금 조성) 건설공제 사업의 적립금은 공제회비, 이자수익,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제22조(관할법원) 건설공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업무협정) ① 공제회는 건설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건설공사손해공제 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업무협정에 필요한 보험료는 공제회 재원으로 우선 납부한다.

② 보험사는 제1항의 업무협정에 따라 건설공제에 가입한 공제등록 물건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조사, 공제금 산정 및 지급, 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대행 등을 수행한다.

③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 당사자는 회원과 보험사가 되며, 공제회는 권리·의무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24조(규칙의 제정·운영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설공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17. 7. 12. 규정 제235호 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5

건설공사손해공제규칙

건설공사손해공제규칙

2017. 7. 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공사손해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제등록 신청) 공제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제등록신청서
2.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3. 공사비내역서 사본
4. 공사개요서 / 공사일정표 / 설계도면 사본(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법, 지질조사보고서)
5. 배치도 또는 주변상황도(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사본
6. 추정 손익계산서(예정이익상실 담보를 추가하는 경우)
7.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제등록 위임 통보서 (회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제등록을 위임한 경우 한함)
8. 기타 공제회가 요청하는 서류

제3조(포괄 공제등록 신청) ① 회원이 매년도 1년동안 발주하는 개별 건설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모든 공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제등록(이하 “포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건설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회와 협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포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포괄등록의 대상이 되는 예상공사 목록을 포괄공제 등록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공제 등록을 신청한 후에 공사목록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 이전에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제기간) ① 공제등록 물건의 공제기간은 공제등록 물건별 공사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하여 포괄등록한 경우에는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에 포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제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험도 조사) 공제회는 공제등록 신청 물건이 개별 건설공사비가 1,500억원 이상 또는 교량, 항만, 매립 등 고위험의 공사에 대하여 공제회비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제등록 변경) ① 회원 또는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공제등록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제등록 변경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등록 대상의 담보조건
 2. 공제기간
 3. 회원 또는 피공제자
 4. 공제등록금액 또는 공제회비 등 기타 공제등록 내용
- ② 공제회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는 회원 또는 계약자가 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공제등록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공제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경과하지 아니한 공제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회원 또는 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제회비 산정기준) ① 공제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공제요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회원이 제3조에 따라 포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공제등록금액은 해당년도의 공사비 집행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납부한 공제회비는 매년 11월 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별표 1의 공제요율은 매년도 손해율과 공제등록 물건의 개별 특성요인 및 특별담보의 추가와 포괄등록 등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공제회비 납부기한) 공제회비 납부기한은 공제등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포괄등록대상 공사목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통보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공제등록 해지신청) 공제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제등록을 해지할 경우에는 회원 또는 계약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제등록 해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제등록 실태조사) ①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 될 때까지 공제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공제등록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보험약관) ① 공제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손해보험약관은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등록을 신청할 때에 선택한 기본공제약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공제약관의 종류는 별첨 1의 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 별첨 2의 영국식 건설공사보험약관과 별첨 3의 독일식 조립공사보험약관으로 구분한다.

제12조(사고예방 의무) ① 피공제자는 공제목적물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 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피공제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제회의 적절한 권고 및 법률상의 준수사항과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공제목적물에 대하여 위험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제목적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공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제금의 지급범위) ① 공제회는 공제규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등록을 신청할 때에 선택한 기본공제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공제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제1항에 의하여 사고의 발생을 공제회에 알린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2.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다만, 공제회는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공제규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공제등록의 해지는 손해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가 동 규정의 공제등록의 해지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피공제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발생 통지)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규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통지 등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설공사손해공제 사고통보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제금 지급신청) 회원 또는 계약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사고발생 통지를 한 후에 공제규정 제16조제1호에 따라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제금 지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제금 지급액 산정) ① 공제규정 제17조제1항의 지급할 공제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제18조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손해액에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한개의 사고로 인하여 수개의 공제목적물이 각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합계에서 자기부담금 중 최고액(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② 공제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제등록금액이 공제목적물의 완성가액(또는 신조달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공제회는 공제등록금액의 완성가액(또는 신조달가액)에 대한 비율로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text{공제금 지급액} = (\text{손해액} - \text{잔존물가액}) \times \frac{\text{공제등록금액}}{\text{공제목적물의 완성가액}}$$

- ③ 동일한 공제목적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완성가액(또는 신조달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공제금을 계산한다.

1. 다른 계약이 이 공제등록과 공제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공제가입 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공제(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공제등록과 공제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공제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금(보험금)의 합계액}}$$

제17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목적물에 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인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한다.)은 공제등록금액의 공제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16조의 공제금 지급액 산정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한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존 또는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공제등록 물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수리가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공제목적물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2. 전부 손해의 경우 사고발생 직전의 시가

② 공제회는 수리나 대체가 완료된 뒤 수리비 견적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후에 공제금을 지급하며, 수리가 가능한 손해는 반드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수리비가 손해발생 직전의 공제목적물의 가액과 같은 가격이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③ 임시 수리비용은 그것이 본 수리의 일부로 인정되며 또한 총 수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손해액의 일부로 인정된다. 다만, 변경, 추가 또는 개량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현물보상) 공제회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제회가 행한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공제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잔존물)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공제회의 소유로 한다.

제21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을 포함한다)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는 이 공제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공제의 등록,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제회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참여기관의 선정) ① 건설공제사업의 추진에 참여하는 보험사 등 참여기관의 선정은 재무 건전성과 건설공사손해 공제사업 운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의 지분은 참여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건설공사보험의 시장점유율, 건설공제사업

운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할 수 있다.

부 칙 <2017.7.27. 규칙 제296호 제정>

이 규칙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손해공제 공제등록 신청서

회원명		공제계약자	
계약 담당자		연락처	
공사명		공사소재지	
피공제자	회원사, 시공사, 공사(하)도급업자 등 동공사 이해관계자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현황

시공사	
주요공종	
진행사항	
주요공법	
지질현황	
발파여부	발파공법
굴착심도	
이격거리	
주변현황	

담보사항

공사목적물담보 (Section I)	공제등록금액 자기부담금	공사목적물	원
		잔존물제거비용	원
		공사용설비 및 장비	원
		건설기계	원
제3자배상책임담보 (Section II)		천재지변	원
		기타	원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대물only)	보상한도액	원
		자기부담금(대물only)	원

□ 공제가입조건

기본공제약관	<input type="checkbox"/> 독일식건설공사 <input type="checkbox"/> 영국식건설공사 <input type="checkbox"/> 독일식조립공사
특별약관	<p>1. 선택사항</p> <p><input type="checkbox"/> 진동, 지진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p> <p><input type="checkbox"/> 잔존물제거비용담보 특별약관</p> <p><input type="checkbox"/>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 (총보상한도액 : 원)</p> <p><input type="checkbox"/> 기타 특별약관 (약관명 :)</p> <p>2. 기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 건설현장의 방화설비와 화재안전에 대한 추가약관 - 지하매설 전선,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 산사태제거에 관한 추가약관 - 농작물, 산림 및 양식 등 부담보 추가약관 - 강우, 흉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 계획에 대한 추가약관 - 지하수위에 관한 추가약관

* 기본사항은 기본공제약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제등록 필요서류

필 요 서 류	내 용
1) 공사도급계약서	발주처 및 계약자(시공자)간 직인이 기재된 계약서
2) 공사일정표	세부 공사별 일정이 명기된 자료
3) 공사비내역서	전체 공사금액이 세부 공사별로 분리된 자료 - 여러 공사가 복합되어서 진행되는 경우 세부 공종별 가액 분리된 자료 (예:공제등록금액 100억 중 도로 30억원, 교량 40억원, 터널 30억원)
4) 도면	- 전체공사평면도 : 공사현장 전체의 가로, 세로, 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단면도 : 지하 및 지상 층수가 식별가능하며, 지상 및 굴착깊이가 명시된 자료 - 주변현황도 : 주변 인접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명시되어 있는 자료
5) 지질조사자료	해당 공사현장의 지질 조사 보고서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손해공제 공제등록 위임 통보서

위임자	회원명		
	업무담당	소속	
		직위(급)	
		성명	
		전화번호	
건설공사계약자 (공제계약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담당	소속	
직위(급)			
성명			
전화번호			
공사명			

위와 같이 건설공사 계약자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건설공사손해공제 공제등록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

(직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공사손해공제 포괄등록 신청서

회원명		공제계약자	
계약 담당자		연락처	
피공제자	회원사, 시공사, 공사(하)도급업자 등 동공사 이해관계자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예상 공사 목록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공사손해공제 공제등록 변경 신청서

회원명		공제등록번호	
공제계약자			

현 등록사항

계약 담당자		연락처	
공사명		공사소재지	
피공제자	회원사, 시공사, 공사(하)도급업자 등 동공사 이해관계자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제회비			

변경사항

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공제기간 변경	<input type="checkbox"/> 공사금액 증감	<input type="checkbox"/> 보상한도액 변경
	<input type="checkbox"/> 공제조건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재사항 정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해지·무효·취소·정산 등 환급		
변경내역	항목명	변경전	변경후
	공제기간		
	공사금액		
	보상한도액		
	공제조건		
	기타		
환급시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변경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공사손해공제 공제등록 해지 신청서

회원명		공제등록번호	
공제계약자			

 현 등록사항

계약 담당자		연락처	
공사명		공사소재지	
피공제자	회원사, 시공사, 공사(하)도급업자 등 동공사 이해관계자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해지사항

해지사유				
	은행명		계좌번호	
환급시	예금주명			

상기와 같이 공제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건설공사손해공제 사고 통보서

일반 사항

회원명			공제계약자	
공제증권번호			공사명	
사고처리 업무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팩스	

사고 내용 및 손해내역 (해당 사고유형에 표기 재물 배상책임)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시각	
사고장소			
사고경위			
피해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배상사고 발생시)	성명		연락처

별지 제7호 서식

건설공사손해공제 공제금 지급신청서

 일반 사항

회원명		공제계약자	
공제증권번호		공사명	
사고처리 업무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팩스	

 사고 내용 및 손해내역 (해당 사고유형에 표기 재물 배상책임)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시각	
사고장소			
사고경위			
피해사항	1. 재물 - 추정 손해액 : - 피해 사항 : 2. 배상책임 - 추정 손해액 : - 피해 사항 :		
	피해자 인적사항 (배상사고 발생시)	성명	연락처

 공제금 수령계좌(통장사본 첨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위의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상기 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신청합니다. 만일 공제금 신청서류를 허위 작성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 공제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첨 1

건설공사손해공제 약관

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번역문)

본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참고로 제작 된 것이며, 사고시 모든 보상은 해당 영문 담보 명세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 차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제1부문	– 재물 손해.....	71
제2부문	– 제3자 배상책임.....	73
제3부문	– 발주자 예정 이익상실 담보.....	75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특별약관, 추가약관 및 담보조항

1) 동맹파업, 폭동 및 민중봉기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79
2)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81
3) 유지담보 특별약관.....	81
4)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81
5)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82
6)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82
7)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82
8)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82
9) 공사완료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83
10)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담보 특별약관.....	83
11)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	83
12)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84
13) 내륙운송 및 보관 중 담보 특별약관.....	84
14)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84
15) 공동보험 특별약관.....	85
16)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85
17) 환율 특별약관.....	86
18) 지진 부담보 특별약관.....	86
19) 홍수 및 범람 부담보 특별약관.....	86
20) 폭풍, 바람으로 인한 수해(水害) 부담보 특별약관.....	86
21)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 계획에 대한 추가약관.....	86
22) 건설플랜트, 장비 및 기계에 관한 추가약관.....	87
23) 건설현장의 방화설비와 화재안전에 대한 추가약관.....	87
24) 건설자재에 관한 추가약관.....	88
25) 캠프 및 보관창고에 대한 추가약관.....	88
26) 지진지역의 구조물담보 특별약관.....	88
27) 터널, 간도공사, 영구 또는 임시의 지표 아래 구조물 또는 설치물에 대한 추가약관.....	89
28)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89
29) 지하매설 전선, 배관 또는 기타 설비에 관한 추가약관.....	89
30) 농작물, 산림 및 양식 등 부담보 추가약관.....	90
31) 댐 및 저수지공사 추가약관.....	90
32) 공정구간에 관한 추가약관.....	90
33)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91
34) 산사태제거에 관한 추가약관.....	91

35)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91
36) 심정(깊은 우물)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92
37) 파일기초 및 응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92
38) 상하수관설치에 관한 추가약관	93
39) 배수작업 추가약관	93
40)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	94
41) 기상대와 연락에 관한 특별조항	94
42) 건설현장과 해상로와의 항해 거리에 관한 특별조항	95
43) Wet Risk와 관련한 면책조항	95
44) Wet Risk와 관련한 보증	95
45) 통상적인 바다/강의 작용	95
46) 건설현장외 보관창고에 관한 특별약관	96
47) 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96
48) 화재 부담보 특별약관	97
49) 보험료 환급 특별약관	97
50) 정보통신조항	97
51) 정치적 위험 부담보 조항	98
52)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98
53) 72 시간 특별약관	99
54) 보험기간 자동연장 특별약관	99
55) 임시 물막이(Cofferdam) 수위 초과 손해에 대한 추가약관	99
56) 자연재해 부담보 추가약관	100
57) 폭발, 붕괴, 지하매설물 확장담보 특별약관	100
58)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특별약관	100
59)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101
60) 잔존물제거비용 담보 특별약관	101
61)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101
62) 공공기관 특별약관	101
63) 50:50 해상/건설 손해 분담 특별약관	102
64) 전문가 및 조사자비용 담보 특별약관	102
65) 대주단보호조항	102
66) 보험금 가지급 조항	104
67) 보험금직접청구조항	104
68) 보험금 수취인 조항	104
69) 도면과 서류 조항	105
70) 급격하고 우연한 누출, 오염, 오탁 추가약관	105
71) 우선적용 조항	105
72) 내륙운송 특별약관	105
73) 터널 및 강도 공사에 관한 복원 비용 담보 특별약관	106
74) 사면유실 보강 비용 담보 특별약관	107
75) 지하수위에 관한 추가약관	107
76) 사면에 관한 추가약관	108
77) 지하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108
78) 방화설비에 대한 추가약관	108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번역문)

스케줄상의 기명 피보험자는 질문서와 함께 기타 이 계약을 위해 작성한 문서를 통해 보험회사 (이하회사라 한다)에 청약을 하며 당해 사항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 증권상 피보험자는 스케줄에 표시된 보험료를 회사에 지불하고 이 증권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 또는 추가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제 보험조건, 면책사항 및 각 조항에 따라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한도내에서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일반면책사항

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구하고 다음의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실, 손해 또는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a)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함), 내란, 모반, 혁명, 반란, 폭동, 소요, 파업, 직장폐쇄, 민중봉기, 군사력이나 친탈자의 폭력, 어떤 정치 조직을 위하여나 관련된 단체 또는 악의적인 사람들 또는 사람들, 음모, 몰수, 징발, 법에(de jure) 의하거나 사실에(de facto) 의하거나 공권력에 의한 압류, 파괴 또는 손해
- b) 핵반응, 핵방사선 또는 방사능오염
- c)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고의적 과실
- d) 전부 또는 일부의 공사 중단

어떠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 회사가 상기 a)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 파괴, 손해 또는 배상책임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파괴, 손해 또는 배상책임이 이 보험에서 담보된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담보기간

회사의 책임은 스케줄에 기재된 여하한 일자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개시 또는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물이 공사현장에 하역된 직후부터 개시된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일부가 인도되거나 사용되는 데에 따라 종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은 스케줄에 기재된 만기일에 종료된다. 보험기간의 연장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전제로 한다.

일반조건

1. 피보험자가 이행 및 수행할 것에 관련되는 이 증권의 제조건을 성실히 준수 및 이행함과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질의서 및 청약서의 회답과 제진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는 것은 회사의 보상책임의 전제조건이 된다.
2. 스케줄과 각 부문은 이 증권에 포함되어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이 증권”이라는 표현은 스케줄과 각 부문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증권 또는 스케줄의 일부분 또는 각 부문의 일부에 있는 특정의미로써 사용되는 단어, 또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더라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한다.
3.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하여 회사의 합리적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규정 상의 필수조건과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4. a) 회사의 대리인은 언제라도 보험목적에 대한 안전조사 및 위험진단을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위험평가에 필요한 모든 명세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b) 피보험자는 위험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보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신의비용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예방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에 대하여 담보범위와 보험료도 조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 보험의 지속성을 서면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피보험자에 의한 중요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이 증권하에 보험금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는
 - a) 지체없이 손실 또는 손해의 속성과 정도를 밝힌 서면뿐만 아니라 유선 또는 전보로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b) 손실 또는 손해를 최대한 경감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손해부분을 보존하고 회사, 대리인 또는 손해사정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d)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e) 절도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에는 경찰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사고통지를 받지 아니하면 손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조건하에서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를 수행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회사의 대리인은 수리나 변경 전에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만약 회사의 대리인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내에 사고조사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수리 또는 교체를 할 권리가 있다.

- 이 증권하에서 피해가 지속되는 목적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목적물이 지체없이 적절하게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료된다.
6. 피보험자는 손해보상의 전후를 막론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가 이 증권에 의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취득 또는 대위하는 제3자(이 증권하의 피보험자는 제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또는 배상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와 사실을 이행하거나 이를 위하여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사실을 이행하고 협력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7. 책임에 관한 해석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 증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서면으로 선정된 1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만약 양당사자가 단일중재인의 선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요청한 후 1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가 지정하는 2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며 중재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1명의 심판인이 중재인의 서면에 의하여 임명된다. 심판인은 중재인과 함께 참석하여 그 심의를 주재한다. 배상금의 판정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권취득의 전제조건이 된다.
 8. 만약 보험금의 청구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도 부당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거나 또는 이 증권 하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의 청구가 기각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인이나 심판인의 판정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증권 하의 모든 이익이 상실된다.
 9. 이 증권하에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과 같은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타보험(보험)이 있을 경우 이러한 손실, 손해 및 책임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그 각각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1부문 - 재물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이 증권에서 특별히 보상되지 않는 원인을 제외한 모든 예기치 못한 급격한 사고로 발생한 물적 손실 또는 손해를 입어 이를 수리 또는 대체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스케줄에 기재된 개별품목에 대한 담보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책임을 지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스케줄에 명기된 총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에 규정한 대로 현금지불, 교체 또는 수리(피보험자의 선택)를 통하여 손해

를 보상한다.

또한 회사는 이 증권에서 스케줄에 별도금액이 기재되면 보험금 청구시 잔존물 제거비용도 보상한다.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회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a) 1사고당 스케줄에 명기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 b) 별금, 지연으로 인한 손실, 이행의 결여, 계약 상실 등의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 c)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d) 재질결함이나 기술적 졸렬로 인한 교체, 수리 또는 세공 비용. 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목적물에만 적용되며, 재질결함이나 기술적 졸렬로 인한 사고의 결과로 정당하게 사용된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은 보상한다.
- e) 사용부족 그리고 정상 기압상태로 인한 마모, 침식, 산화, 악화
- f) 전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 정지, 파손 또는 교란, 냉매 또는 다른 유체의 동결, 결함있는 윤활작용 또는 오일/냉매 부족으로 발생한 건설플랜트, 장비 및 건설기계류의 손실 또는 손해. 그러나 이러한 고장 또는 교란의 결과로 사고가 외적 손실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적 손해는 보상한다.
- g) 일반도로 전용허가를 가진 차량, 수상수송선박, 항공기의 손실 및 손해
- h) 서류, 제도, 계산서, 청구서, 통화, 인지, 증거서류, 채권, 화폐, 유가증권 및 수표의 손실 또는 손해
- i) 재고 조사중에 발견된 손실 또는 손해

제1부문에 대한 적용조항

메모 1.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의 필요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가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Item 1 : 건설공사 종료시까지의 총계약금액. 공사자재, 임금, 운임, 관세, 세금, 부대비용 및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 포함

Item 2 & 3 : 건설플랜트, 장비 및 기계의 재조달가액; 재조달가액이란 동종 동능력의 신품으로 대체하는 재조달 비용을 뜻함; 피보험자는 임금이나 물가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그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시켜야 하며. 그러나 이것은 회사가 증권에 기재한 이후에

만 효력을 갖는다.

만약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보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이 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보상받는 금액은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차감하여 비례보상한다. 모든 목적들과 비목은 개별적으로 이 조건에 따른다.

메모 2. 손해사정의 기초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이 증권상의 손해사정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a) 수리가 가능한 손해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단, salvage 제외)

b) 전손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의 시가(단, salvage 제외) 그러나 그 한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이내로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이어야 하며 제 조항 및 조건에 적합하여야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회사는 경우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가 이행된 것을 증명하는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승인 후 지급한다. 그러나 수리될 수 있는 모든 손해는 수리를 하되, 만약 수리비가 사고 직전의 가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전항(b)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손해사정한다.

최종 수리비용의 일부로서 총 수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잠정 수리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변경, 추가, 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이 증권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메모 3. 담보의 확장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공휴일 작업, 급행운임에 대한 특별비용은 사전에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한 경우에만 이 보험에서 담보한다.

제2부문 - 제3자 배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스케줄에 명기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 a) 제 3자가 입은 우연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치명여부에 관계없이)
- b) 제 3자가 입은 우연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

제1부문 하에 보험 가입된 목적물의 건설 및 조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해야하며 보험기간

증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의 비용도 추가로 지급한다.

- a)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 b) 회사에 서면으로서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이 부문에서 회사의 배상책임액은 스케줄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회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1사고당 스케줄에 명기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2. 이 증권의 제 1부문에서 담보하였거나 담보된 것의 작업 또는 개량, 수리하는데 따른 비용
3. 진동, 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로 야기된 재물,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손해 또는 이러한 손해에 의해 야기되거나 이러한 손해의 결과로 발생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4. 다음의 결과적 책임
 - a) 공사업자, 발주자 또는 제1부문에서 담보가 된 부분이나 공사와 관련된 기타 다른 회사의 종업원, 근로자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상해 또는 질병
 - b) 공사업자, 발주자, 제1부문에서 담보가 된 부분이나 공사와 관련된 기타 다른 회사, 상기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소유, 관리, 관할, 통제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
 - c) 항공기, 수상수송선박 또는 일반도로운행허가를 가진 차량으로 인한 손해
 - d) 피보험자에게 소속되지 않는 배상책임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배상책임

제2부문에 대한 특수조건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인정, 제의, 지불 또는 보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회사가 원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명의로 변호 또는 손해의 사정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명의로 배상청구, 손해보상 청구나 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어떠한 소송절차의 이행이나 손해보상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며, 피보험자는 회사가 요구할 때에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어떠한 사고라도, 피보험자에게 1사고에 대한 보상한도까지 지급하거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 또는 당해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가 합의될 수 있는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회사는 당해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을 이 부문하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부문 - 발주자 예정 이익상실 담보

회사는 피보험자(이 보험증권 제1부문 스케줄의 기명 발주자)에게 이 부문에서 정의한 매출액의 감소 또는 특별비용의 증가로 실제 총이익의 상실을, 이 부문에서 특별히 면책하지 않은 한,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기간 동안 제1부문하에서 담보되는 계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작업에 지장이 되어 사업개시가 지연되었거나 (이하(이)연) 피보험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 보상한다.

이 부문하에서 보상하는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 총이익 상실액 : 보상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달성하였을 매출액과의 차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특별비용 : 오로지 보상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을 매출액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 단, 이 비용 없이는 매출액 감소가 보상기간 내에 발생하였어야하고 이 비용은 방지시킨 매출 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문하의 연간보험가입금액이 연간매출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용어의 정의

보험기간

제1부문의 건설공사보험 물적손해 담보가 끝나는 시점과 이 부문의 스케줄상 명기된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종기로 하는 스케줄상 명기된 기간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

지연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이 개시되었을 이 부문의 스케줄상 명기된 개시일이나 수정된 개시일자

보상기간

이 부문의 스케줄상의 최대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로부터 지연으로 인해 피보험사업이 영향을 받는 동안의 기간

자기부담기간

회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스케줄상 명기된 기간. 해당금액은 자기부담기간으로 합의된 일수에 보상기간 중 발생한 일일평균손실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출액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피보험사업과정에서 임대한 설비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금액 (할인보험 가능)

연간매출액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에 달성하였을 매출액

연간총이익

연간매출액에서 특정변동비용을 차감한 금액. 특정변동비용이란 변동비용, 예를 들면 상품, 자재, 예비품 또는 서비스(작업의 유지상 필요하지 않는 한)를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포장비, 운반비, 화물비, 보관료,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 감찰료, 로열티 등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모든 비용.

총이익율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기간동안 달성하였을 매출액에 대한 이익비율

제3부문에 대한 특별 면책사항

회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어떠한 지연이나 지연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총이익상실액과 특별비용;
 - 1-1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되지 않는 한 제1부문의 특별약관으로 담보되는 손실 또는 손해;
 - 1-2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되지 않는 한 지진, 화산 폭발, 해일;
 - 1-3 주변의 재산, 건설기계, 플랜트, 그리고 장비에 미친 손실 또는 손해;
 - 1-4 작업 매체 또는 공급 원료의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피보험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자재

- 의 부족, 파손, 변질, 악화 또는 손해;
- 1-5 공권력에 의한 제한 조치;
- 1-6 자금조달부족;
- 1-7 사고 발생 후 이루어지는 어떠한 결함이나 하자의 수정, 보완, 개선, 교정, 제거;
- 1-8 피보험자에게 인도되었거나 사용되어지거나 제1부문하의 담보가 끝난 손실 또는 손해;
2. 어떠한 벌금으로 인한 손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공사의 지연 또는 미수행, 모든 종류의 벌금
3. 사업의 실제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 면허 또는 주문의 중단,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야기되는 사업상의 손해;
4. 특별약관에 의하여 합의되지 않는 한 시험적 유형의 건설공사의 손실 또는 손해.

제3부문에 대한 적용조항

메모 1. 보험기간의 연장

제1부문에서의 보험기간 연장은 이 부문의 스케줄에 명기된 보험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시키지 않는다. 이 부문하의 보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연장사유와 함께 요청하여 하며,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문에 유효하다.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의 변경이 있을 경우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문에 유효하다.

메모 2. 손해사정의 기초

총이익율, 연간매출액 산정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로부터 획득 할 수 있는 피보험사업의 결과를 실질과 근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다음의 요인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 a) 사업 개시 후 12개월 동안의 피보험사업의 결과
- b) 지연이 발생치 않았을 경우 피보험사업에 영향을 주었을 변화와 특수상황
- c) 사업 개시 후 피보험사업에 영향을 주는 변화와 특수상황

메모 3. 보험료의 환급

피보험자가 피보험사업의 개시일 또는 지연의 발생없이 사업이 개시한 날 이후 회계기간 12개 월 동안의 총이익이 보험금액보다 적다는 것(피보험자의 감사에 의해 확인돼야함)을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동안에 지불된 보험료의 1/3범위내에서 그 차액과 관련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단, 이 증권하에서 보상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환급보험료는

이러한 손해로 기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 차액만을 환급한다.

제3부문에 대한 특별조항

1. 피보험자는 이 부문의 스케줄에 명기된 간격으로 최근 공정 진척도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아래사항과 같이 최초 고지된 위험의 여하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가 승인한 약정 서에 의해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이 증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예상 공정프로그램의 변경
 - 모든 작업항목의 변경, 조정, 추가
 - 규정된 건설방법의 이탈
 - 피보험이익의 변경(사업의 중단, 청산 또는 관재인이 임명되었을 경우 등)
3. 이 부문에서 지연이나 보상청구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a) 피보험자는 유선이나 전보로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확정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b) 피보험자는 어떠한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하여 공사의 방해를 감소시키거나 저지하는데 유익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하는데 동의, 협력하여야 한다.
 - c) 회사와 회사의 혜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보험에 가입된 당사자들에 대한 편견없이, 당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책임있는 원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손해의 원인, 손실 또는 손해의 정도, 피보험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의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연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피보험자가 회사에게 이러한 행위 협력하는 증거가 된다. 만약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이 상기 활동 동안에 회사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문 하의 모든 이익은 상실된다.
4.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는 지연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협용한 시일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가 손해액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장부나 회계서류 및 관련청구서, 대차대조표, 증거물, 정보, 설명서, 기타 증거자료와 회사의 요청 시 보상청구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법적 진술서도 함께 작성, 구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 보험금의 최종확정이 있은 후, 한달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상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회사가 손해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받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후 한 달 후에, 일반

적인 조건 하에서의 최소금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아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a)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필요한 증거가 제시될 때 까지
- b) 만약 어떤 손해나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의 자연과 관련 피보험자에 혐의를 두고 경찰, 형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사가 완결 될 때까지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를 제하고는 보류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특별약관 (번역문)

동맹파업, 폭동 및 민중봉기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폭동, 파업 및 민중봉기에 관련하여 이 특별약관상(항상 아래 특별조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으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1. 이 특별약관의 특별조건 2의 손해가 아닌 모든 공공질서 교란행위(파업이나 직장폐쇄와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에 참가한 자의 행위
2. 교란행위를 진압하거나, 진압을 시도하거나 또는 그 교란행위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기관의 행위
3. 파업을 선동하거나 직장폐쇄에 항거하는 파업자 또는 직장폐쇄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
4. 이 같은 행위를 저지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기관의 행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약정한다 :

1. 이 보험증권의 제 조건과 제 면책 조항 및 제 규정은 다음의 특별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특별약관에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증권상의 손실 및 손해에 관한 규정도 이 특별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에 적용되어야 한다.

2. 다음의 특별조건은 이 특별약관에만 적용되며 보험증권의 제 규정은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보험에 적용된다.

특별조건

1. 회사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a.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공정이나 작업의 지연이나 방해 및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b. 합법기관의 몰수, 징발 또는 명령에 따른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c. 타인의 불법적인 건물 점유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d. 모든 종류와 유형의 결과적 손해 또는 배상책임,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중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

그러나 회사는 전항 b, c.의 손해 중 소유권 박탈 이전에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 중에 발생하는 보험목적물의 물리적인 손해는 보상한다.

2. 회사는 직간접여부와 상관없이 아래로 인하여 또는 아래의 결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a.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함) 또는 내란
 - b. 모반, 민중봉기에 상당하는 소요, 군사적 봉기, 반역, 반란,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폭력
 - c. 강제적으로 법률상의(de jure) 또는 사실상의(de facto)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테러리즘 또는 폭력을 통해 압력을 가하려 하는 단체를 위한 또는 대신한 모든 사람의 행위 어떠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 회사가 이 조항을 이유로 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가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가 이 보험에서 담보된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3. 회사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마지막으로 등록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함으로 이 보험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회사는 계약 파기일로부터 보험미 경과기간에 비례한 보험료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
4. 이 특별약관에서의 1사고당 보상한도란 168시간 지속되는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한다.

이 증권의 담보기간 동안 회사의 총보상한도는 1사고당 보상한도의 2배로 한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스케줄에 기재된 모든 피보험자가 이 증권의 제3자 배상책임으로 담보되며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 아래와 관련된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 보통약관의 제1부문에 의하여 담보되었거나 담보될 수 있는 항목 (보상한도 또는 초과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 치명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담보되었거나 담보될 수 있는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신체상해 또는 질병
- 1사고 또는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연속적인 사고들의 경우 회사의 총보상한도액은 스케줄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추가보험료

유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아래 명기된 유지기간 동안 피보험자인 공사업자가 계약 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계약공사에 입힌 손해를 보상한다.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유지기간 동안에 계약공사에 발생한 아래의 손해를 보상한다.

- 피보험자인 공사업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유지조항(Maintenance Provisions)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입힌 손해
- 건설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유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아래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화물(항공운임 제외)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보험의 목적의 손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손해 품목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특별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된다.

보상한도액 : 1사고당

추가보험료 :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항공운임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보험목적의 손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중에 지급될 항공운임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아래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자기부담금액 : 보상가능한 추가비용의 20%, 단 1사고당 최저

- 최대 보상한도액 :

- 추가 보험료 :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c)항은 삭제된다. 그리고 (d)항은 (d) 재질결함이나 기술적 졸렬 또는 설계결함으로 인한 교체, 수리 또는 세공 비용. 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목적물에만 적용되며, 재질결함이나 기술적 졸렬 또는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결과로 정당하게 사용된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은 보상한다로 대체된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공사완료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공사의 일부가 인도되거나 사용되어 이 보통약관 제1부문에서 담보되는 항목의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4주이내의 시운전 또는 시선적기간이 보험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설비 또는 기계의 일부가 시운전이 완료되었거나 사용되었거나 또는 발주자에게 인도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종료되고 그 외의 부분은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증권의 보통약관 제1부문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c)와 (d)는 삭제되고 아래의 조항이 적용된다.

설계결함, 재질 또는 캐스팅(casting)결함이나 조립결함을 제외한 기술적 졸렬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중고품에 대한 보험기간은 시운전개시와 동시에 종료된다.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현존하는 재산 또는 피보험자의 관리, 관할, 통제하에 있는 재산이 제1부문에서 담보되는 건설 또는 조립 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목적물 :

보험가입금액 :

회사는 보험가입목적물이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온전한 상태였고 또한 필요한 사고예방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만 피보험자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에 회사는 보험목적물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붕괴사고가 있었어야 보상하며 보험목적물의 안정성(stability)을 저해하지 않거나 그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경상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회사는 다음은 보상하지 않는다.

- 건설공사의 성격이나 수행방법으로 보아 예견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기간중에 손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제비용

자기부담금 :

추가보험료 :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하는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케줄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내륙운송 및 보관 중 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지역한 도내에서 보험목적물을 계약현장으로 운송(수로 또는 항공운임 제외)하는 중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운송별로 이 특별약관의 최대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한다.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2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당해 배상책임 관련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붕괴사고가 있었어야 한다.
-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상태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온전한 상태이었어야 하며 필요한 사고예방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경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상태에 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건설공사의 성격이나 수행방법으로 보아 예견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
-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안정성(stability)을 저해하지 않거나 그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경상의 손해
- 보험기간중에 손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제비용

보상한도액 : /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액 :

추가보험료 :

공동보험 특별약관

이 증권은 아래의 공동보험자를 대리하여 간사사인 ()가 발행하며 각 보험자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인수비율

회사명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이 증권상의 보험료를 회사에 ()회로 분납한다.

2. 1) ()회 분납

제 1 회 : 책임개시일까지 보험료의 ()%

제() 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

제() 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

제() 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

2) 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3) 미납입 보험료 전액을 차감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3. 1)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약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 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둔다. 이 유예기간 동안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2) 회사는 유예기간 만료 7일전에 계약효력상실을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 기간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환율 특별약관

- a)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한다.
- b)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한다.

지진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홍수 및 범람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홍수 및 범람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폭풍, 바람으로 인한 수해(水害) 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페트풍력계급 8등급(평균 풍속 62 km/h 초과) 이상의 폭풍 또는 이로 인한 수해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 계획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가 작성 제출한 건설 및 조립공사의 일정계획 및 기타서류와 기술적인 자료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계획이 아래에 명기된 기간 이상 변경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실 또는 손해는 회사가 손해 발생 전에 그 일정 계획의 변경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일정계획 변경기간 : 주

건설플랜트, 장비 및 기계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흥수 또는 범람으로 인해 입은 건설플랜트, 장비 및 기계의 손실, 손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책임에 대해 공사수행 후나 공사중단 기간 동안에 이들 건설플랜트, 장비 및 기계가 20년 주기의 흥수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지역에 보존되어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건설현장의 방화설비와 화재안전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또는 이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1.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방화 설비, 소방기구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가능한 소화전이 현재 공사의 최상층보다 1층 아래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임시 마개로 봉인 되어있어야 한다.
2. 호스릴(hose reels)과 소화기를 보관하는 선반은 최소 2주 간격으로 점검한다.
3. 현지법에 따라 필요한 소방구역은 거푸집이 제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덱트 또는 기타 개구간은 공사 개시이전까지 잠정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4. 폐기물은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공사 중인 모든 층은 가연성 폐기물을 매 작업일마다 제거해야 한다.
5. 아래와 같은 가열성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공사업자는 허가 작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그라인딩(grinding), 절단 또는 용접 작업
 - 발염장치(blow lamps and torches)의 사용
 - 가열된 염청(bitumen)의 사용 또는 기타 모든 가열 작업
 가열성 작업은 소방교육을 받고 소화기를 갖춘 최소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열성 작업현장은 작업 완료 후 1시간 후에 점검한다.
6. 건설공사 또는 조립공사시 보관되는 자재는 보관 단위당 가액은 아래의 명기된 가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각 보관 단위는 각기 50m의 공지 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가연성 물질 특별히 액체와 기체는 건설공사 또는 조립공사 중인 재산과 모든 가열성 작업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보관되어야 한다.

7. 현장 안전 책임자가 임명돼야 하며 믿을 수 있는 화재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가까운 소방대와 직접적인 통신연결이 지속되어야 한다. 방화계획과 현장화재계획이 실행되고 주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공사업자의 고용인들은 소방교육을 받고 매주 소방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까운 소방대는 건설현장을 익히고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8. 건설현장은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관리를 해야 한다.

건설자재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홍수 또는 범람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건설자재에 발생한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단, 건설자재는 3일분의 소요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초과분은 10년 주기의 홍수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캠프 및 보관창고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화재, 홍수, 범람에 의하여 캠프 및 보관창고에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다만, 이 캠프 및 보관창고가 과거 20년 동안에 기록된 최고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각 저장 창고가 적어도 5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방화벽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다.

캠프당 보상한도액 :

개별 보관창고당 보상한도액 :

지진지역의 구조물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설계시에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건축관련 규정에 따라 지진위험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공사업자 및 공사기술과 제반 역학계산이 적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진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터널, 쟁도공사, 영구 또는 임시의 지표 아래 구조물 또는 설치물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건설방법의 변경 또는 예기치 못한 지면상황 또는 장애물
- 보상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복원에 필요하지 않는 한, 지면상황을 개선 또는 안정화하거나 차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굴착 최저선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굴착했거나 과도 굴착으로 인하여 되메우는데 필요한 비용
- 보상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복원에 필요하지 않는 한, 배수
- 배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단, 적절한 예비 설비가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터널 천공기의 유기 또는 복구
- 벤토나이트, 완충물질, 굴착붕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매체, 물질 또는 지표안정액과 같은 작용재 등의 손해

보상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 최대 보상한도는 보험목적물을 손실 또는 손해 발생직전의 기준 또는 기술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복구하는데 사용된 비용으로 직접적인 손해구역의 미터당 평균건설비용의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최대 지급 비율 : %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지하매설 전선, 배관 또는 기타 설비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공사 개시 전에 관련 기관에 피보험자가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단계를 마쳤을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매설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지도(지하에 매설된 기타 설비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상에 표시된 위치와 동일한 지하에 매설된 기타 설비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청구는 손해액의 20% 또는 아래에 기재된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지도상에 표시된 위치와 다른 곳에 매설된 기타 설비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청구는 아래 b)에 기재된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단, 회사는 상기 시설물의 수리비용만을 보상하며 모든 결과적 손해와 별금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 : a) 손해금액의 20%

b) 1사고당 최소

농작물, 산림 및 양식 등 부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농작물, 산림 및 양식(사육, 재배, 경작, 양식 및 배양 등 포함)에 대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댐 및 저수지공사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건설공사 중에 발견한 연약지반(Soft Rock Areas)에 대한 그라우팅(GROUTING)이나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대이상으로 물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를 포함하여 배수와 관련된 비용
- 배수장치 고장으로 인한 손해. 단, 적절한 예비설비가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지하수 및 지표수의 배출을 위한 추가시설이나 추가 방수장치의 설치에 따른 비용
- 불충분한 지반다짐으로 인한 침하에 따른 손해
- 균열 또는 누수로 생긴 손해

공정구간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제방, 개착(Cuttings), 계단식파기 (Benchings), 도랑, 수로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대한 또는 이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당해 제방, 개착(Cuttings), 계단식파기

(Benchings), 도랑, 수로공사 또는 도로공사가 일정한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되는 경우에만 보상 하며, 회사의 1사고당 최대보상한도는 완공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에 기재된 총구간의 길이의 수리 비용으로 한다.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강우, 홍수 또는 범람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적정한 안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만 이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에서 적정한 안전조치라 함은 전 보험기간동안 건설현장에 대하여 2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또는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다만, 모래, 나무 등 장애물이 수로에서 즉각적으로 제거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산사태제거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의 사항은 보상하지 않는다.

- 산사태에 영향을 입은 지역의 사고발생 전 실 굴착 경비를 초과한 산사태 제거비용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침식된 경사지역이나 기타 정지 면의 보수를 위한 비용.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이 보험은 아래의 사항이 적용된다.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설계결함(특별약관으로 담보되는 경우), 재질결함 또는 기술적 졸렬로 인한 시설물, 시설물의 일부분, 같은 종류의 기계 또는 장비의 손실 또는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후에 아래의 비율로 보상한다:

- 100% 처음 2번째 사고
- 80% 3번째 사고
- 60% 4번째 사고
- 50% 5번째 사고

그 이상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심정(깊은 우물)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심정(깊은 우물)공사에 대하여는 아래에 명기한 사고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만을 보상한다.

- 지진, 화산활동, 지진해일
- 폭풍, 태풍, 홍수, 범람, 산사태
- 폭발적인 분출(blow-out) 또는 크레이터
- 화재 및 폭발
- 지하수의 흐름 또는 분출(artesian waterflow)
- 기술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진흙(mud) 손실
- 기술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헬암(shales)의 히빙(부풀어 오름) 또는 비정상적인 압력으로 발생한 심정 및 심정판(casing)의 붕괴

손해의 보상은 상기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이 처음으로 명백히 나타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비용(자재비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당해 사고로 인하여 공사 중인 심정의 개발을 포기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손해액의 10% 또는 아래의 자기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면책조항

다음은 보상하지 않는다.

- 굴착장치 또는 장비(드릴링 공사업자가 특별보험 가입 가능)의 손실 또는 손해
 - 어떠한 형태든 물속에서 꺼내는 작업에 소요된 비용
 - 심정을 손질하거나 모든 자극공사(acidizing, fracturing 등)를 포함한 심정의 상태를 복구 하기 위한 개수 작업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10%, 1사고당 최소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1. 아래의 이유로 파일 또는 옹벽의 전체 일부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는데 소용된 비용
 - a. 공사 중 잘못된 곳에 설치하여, 정렬이 잘못되어서, 또는 움직일 수 없어서(jammed)

발생한 비용

- b. 항타 또는 항발 작업 중에 발생한 분실, 유기, 또는 손상으로 인한 비용
 - c. 항타/항발 기계 또는 케이싱(casing)을 움직일 수 없어서 또는 손상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2. 파일이 끊어지거나 이음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수정하는 데 소요된 비용
 3. 물질의 형태에 관계없이 새어나가거나 침투해 들어온 상태를 수정하는데 소요된 비용
 4. 벤토나이트 등이 유실되어 이를 채워 넣거나 교체하는데 소요된 비용
 5. 파일 또는 옹벽이 응력시험이나 재하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혹은 파일 또는 옹벽의 시공결과가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6. 파일 또는 옹벽의 외관이나 크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 상기 조항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생한 손해가 담보됨을 입증할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상하수관설치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배관이나 도랑, 수직갱에 흥수나 실트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단, 1사고당 회사는 전부 또는 일부를 파헤친 도랑을 아래에 기재된 최대거리에 한하여 보상한다.

1. 배관설치직후 도랑범람으로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되메움과 같은 방법으로 배관이 잘 보호된 경우
2. 배관설치직후 배관에 물이나 실트 등과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 경우
3. 배관 압력시험이 끝난 즉시 그 끝난 부분에 대한 도랑에 되메운 경우

배수작업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최초에 예정된 양을 초과한 수량으로 인해 발생된 배수 작업비용.
2.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배출(discharge)을 위한 추가시설이나 추가 방수 장치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3. 배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 단, 적절한 예비설비가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4. 균열된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 누수방지 또는 굴착부분/지하층으로의 물 유입을 막기 위한 그라우팅(Grouting)이나 기타 보수조치에 소요된 비용.

이 특별약관에서 예비 설비라 함은 현장에 항상 비치된 예비전력 공급설비와 펌프(pump)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들은

1. 정상적으로 작동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2.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정기적 운전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3. 기존설비의 고장이나 운전 정지시 예비설비로의 자동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경사면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하여 공사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적정하고 입증된 안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만 이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에서 적정하고 입증된 안전조치라 함은 보험기간동안 항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1. 강우, 홍수 또는 범람에 의한 경사면 표면 침식방지
2. 지반강화, 안정화 또는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유실된 벤토나이트/토사 대체 또는 공극 발생시 되메우기를 위한 조치
4. 지표개선 또는 안정화를 위하여 경사면의 단면/형태의 유지(예를 들면 구멍 되메우기, 경사면 단면 안정화 등)
5. 건설공사 현장내의 수로 등에 유입된 장애물(모래, 바위, 나무 등)의 즉시 제거.

보험계약자는 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의 파일 및 굴착공사 관련 지침에 따라야 한다. 회사는 다음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 공사의 성격이나 수행상 예견되어진 손실 또는 손해
- 불완전한 지반보강으로 인한 지반 침하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기간 중 필요하게 된 손해방지 또는 경감조치 비용

기상대와 연락에 관한 특별조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갑작스런 해풍, 폭풍에 대하여 도래시점 12시간 이전에는 기상대와 계속적인 연락이 가능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보상하지 않는다.

건설현장과 해상로와의 항해 거리에 관한 특별조항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설현장이 해상로와는 최소한 ()m의 거리에 있지 않다면 보상하지 않는다.

Wet Risk와 관련한 면책조항

이 특별약관은 이 증권의 제1부문에 포함되며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다음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 1) 해상관련 모든 배상책임
- 2) 통상적인 바다/강의 작용의 결과로 인한 매립재료(토양, 모래, 자갈, 암석 등) 유실손해
- 3) 파일공사(파일박기, 뽑기 또는 치환)로 발생한 파일(말뚝)의 손해 및 파일을 유기(遺棄) 함으로서 발생한 손실
- 4) 보트, 선박, 바지선 또는 이와 유사한 부동(浮動)식 장비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손해
- 5) 공사작업에 적합한 기상조건을 기다림으로써 해상 건설장비를 이동 또는 철수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그밖의 비용
- 6) 통상적인 바다/강의 작용 결과로 인한 준설 및 재준설 비용
- 7) 침하, 침몰로 인한 정박지, 부두, 방파제 및 그와 유사한 시설물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8) 자연적 조류, 해류, 파도 및 토양침식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배상책임
- 9) 각종 와이어, 앵커, 체인 또는 부표류 등에 발생한 손해

Wet Risk와 관련한 보증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갑작스런 해풍, 폭풍에 대하여 ()시간 이전에는 기상대와 계속적인 연락가능 체제
- 2) 건설현장과 해상로와는 최소한 ()m의 거리

통상적인 바다/강의 작용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아래 기간 중에 한번 발생할 것으로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바다 또는 조수의 상태로 간주되는 통상적인 바다 또는 조수 작용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계약공사에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 1) () 년 관측기간 (일시적인 작업 : ()년 관측 기간)
- 2) 보퍼트풍력 계급 8까지 나타나는 바다 또는 통상의 조수 작용의 상태

건설현장외 보관창고에 관한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아래의 구역내에 있는 현장외 보관창고에 있는 보험목적물(제조업자의, 유통업자의, 또는 공급업자의 현장에서 생산, 처리, 또는 보관되고 있는 재산은 제외)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회사는 창고 또는 보관창고의 일반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 한다:

- 보관구역이 위치해 있는 지역 또는 보관하는 재산의 종류에 맞게 둘러싸여 있고 (빌딩 또는 울타리), 경계를 서고 있으며 그리고 화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개별 보관창고는 각각 50미터의 공지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보관창고는 20년 주기의 강우 또는 홍수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위치가 선정되어야 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 보관창고별 가액의 한도를 설정한다.

구역한도 :

보관창고별 최대가액 :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 1사고당 최소

추가보험료 :

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 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된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한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 준비와 관련된 행위
 - a.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 b.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c.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a.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 b.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 (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화재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 번개, 폭발, 화재 진화 또는 이로 인한 철거, 공해 또는 오염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료 환급 특별약관

회사는 건설공사가 완료되고 미지급보험금이 종결된 후 손해율이 ()%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증권에 기재된 총 보험료의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다.

정보통신조항

이 보험증권에서 재물 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한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지 않는다.

- A.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담보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보된다.
- B.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정치적 위험 부담보 조항

다음 사고의 직·간접적 결과로 야기된 손실이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 a)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위, 전투 또는 그와 유사한 작전수행(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 없이), 내전
- b) 합법적인 권한에 의한 몰수, 징집, 징발로 야기된 영구적 또는 단기 불법 점유, 강탈
- c) 민 또는 군의 봉기, 반란, 모반, 혁명, 군 또는 불법 권리, 호전적인 법 또는 계엄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 또는 선포되게 하는 사건이나 원인을 의도하거나 그러한 것에 이르게 하는 폭동, 소란
- d) 단체의 대리자 또는 관계자가 저지른 테러행위.

이 조항이 의도한 바에 따라 “테러”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특정 지역의 대중이 공포를 느끼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를 포함한다.

보험사가 이 조항을 이유로 손실 및 손해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조치, 소송, 처리 과정에서, 손실 및 손해가 담보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공공 권력의 조치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배상금이 줄어든 경우, 재보험의 책임도 비례하여 줄어든다.

공공 권력의 요구로 피보험자가 배상을 분담하는 경우 보험사 또한 상응하는 분담금을 부담한다.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 A.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피보험

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또는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B.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C. 회사는 상기(A)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상기 A, B, C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72 시간 특별약관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지속적인 (72) 시간 동안 발생한 지진, 회오리바람(사이클론), 흥수, 폭풍, 폭풍우, 물, 침하 또는 붕괴에 기인한 모든 손실, 멸실, 손해는 하나의 사고로 간주한다. 사고가 미치는 범위와 영역에 비추어, 보상하는 위험요인이 연속적이든 산발적이든, 또는 손실, 멸실, 손해가 동일한 지진학적 기상학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그 여부를 불문한다.

매 사고는 보상하는 위험요인(peril)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멸실, 손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개시일은 보험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보험기간 자동연장 특별약관

회사는 스케줄상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자동으로 ()개월 연장한다.

임시 물막이(Cofferdam) 수위 초과 손해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물막이(Cofferdam)의 수위보다 높아서 발생한 직접 그리고 간접적인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자연재해 부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자연재해(천재지변)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폭발, 붕괴, 지하매설물 확장담보 특별약관

1. 제2부문에 아래의 확장담보가 적용됩니다.:

본 증권은 폭발이나 붕괴 혹은 지하매설물의 손상 내에 포함되는 재물 손해에 적용됩니다.

본 확장담보는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피보험자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
- b. 완성 작업물의 위험 내에 포함된 재물손해

2. 추가적으로 아래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폭발손해는 폭파나 폭발로 인한 재물손실을 포함하며, 공기로나 증기로, 가압된 파이프, 원동기, 기계, 전력 송전 기기 등의 폭발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붕괴손해는 구축물의 손실 및 그로 인한 다른 재물에의 물적 손실을 포함합니다.

구축물의 손실은 다음의 원인으로 기인한 구축물의 붕괴나 구조적 파손을 의미합니다.

- 1) 토양의 안정작업, 굴착, 천공, 채움, 뒤채움, 터널링, 파일 항타, 가물막이 공사나 케이슨 작업
- 2) 건물이나 구축물의 이동, 지지, 응기나 파괴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지지대의 제거나 재건축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은 지하매설물의 손해와 그에 따른 다른 재물에 대한 물적손해를 포함합니다.

지하매설물의 손해는 토양 안정작업, 포장, 굴착, 천공, 채움, 뒷채움 또는 항타를 위하여 기계 장비를 이용하는 동안에 지하에 있는 전선, 배관, 파이프, 간선, 하수관, 탱크, 터널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에 부속된 설비에 발생된 물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특별약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한 손해액에 상관없이 보험 가입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피보험자는 공사기간중의 예상(공사)계약금액에 기초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추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피보험자가 공사완공시점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자에게 보고하며 회사는 최종 보험가입금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잔존물제거비용 담보 특별약관

보험자는 보험기간 동안 Section I)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보험가입목적물이 파손되어서 이를 파괴하거나 치우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사전에 합의된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보험기간동안 피보험목적물의 가액이나 실제공사금액이 예상프로젝트 혹은 예상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에게 통보되고 피보험자가 동의한 계정된 예상프로젝트 금액, 도급금액, 프로젝트 금액의 (%) 한도내에서 증액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증액은 그 내용이 사고발생이전에 증권에 기재되어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증가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효력 발생됩니다.

(위의 기입란이 공란인 경우, 해당 정보는 보험증권 스케줄의 해당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공공기관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해당 국가가 제정한 제규정, 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또는 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을 명세서에 명기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특별약관을 추가하기 이전에 발생한 제규정, 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비용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개조하기 위한 비용.

이 복구 작업은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타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완공(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50:50 해상/건설 손해 분담 특별약관

본 조항은 대한민국 국외에서 위탁 발송되는 해상적하보험의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60일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 a) 피보험자는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손상에 대하여 현장에 도착 직후 보험목적물의 개별 품목을 검사합니다.
- b) 추후에 개봉할 목적으로 남겨진 포장품목의 경우 포장에 대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육안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해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개봉하여 검사 후 발견된 손해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c) 이상이 없이 운송된 화물의 포장상태에 대해 아무런 손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개장 도중 발견된 다음의 수반된 손상은, 그러한 손상이 건설 현장 도착 전이나 후에 유발되었는지의 규명 여부에 따라 해상적하보험 또는 동 보험의 제1부문에서 다루어집니다.
- d) 화물이 입은 손상이 건설현장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에 유발되었는지의 규명이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손상에 대한 비용은 해상적하 보험자와 동 보험의 제1부문 보험자들 간에 균등하게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 가능한 보유한도액(자기부담금)의 50%가 적용됩니다.

전문가 및 조사자비용 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재물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과 관련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전문가 용역비에는 금융당사자의 기술적인 자문가 관찰 용역비와 이하에서 담보하는 사고임을 조사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에 의해 요구되어질 수 있는 입증을 위한 전문용역과 법적비용, 보험금청구를 위한 준비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에 열거된 비용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대주단보호조항

1. 보험의 양도 / 보험금 수취인 조항

년 월 일자 체결된 보험양도협정에 따라, 차주는 보험증권상의 모든 권리, 자격 및 이익(모든 보험금 및 보험료의 환급을 포함한)을 Security Agent 와 Secured Creditors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차주에게 지급될 모든 금원이 원화일 경우, intercreditor agent로부터 직접 명기된 타명의 계좌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을 때까지, 다음의 공항철도의 원화계좌로

지급됩니다.(계좌번호 :)

2. 대위권 포기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서 담보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3. Secured Creditors 의 책임

보험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Secured Creditors 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4. 변경

Intercreditor Agent 와 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증권상의 어떠한 사항(보상한도의 감액 또는 보험조건, 자기부담금의 상향조정, 면책사항 및 예외사항을 포함)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5. 손해분담 포기

보험자는 Secured Creditors, Intercreditor Agent 또는 Security Agent 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여타의 다른 보험에 대한 손해분담권리를 포기합니다.

6. 취소, 축소 및 보험담보

보험자는 Intercreditor Agent 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a)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계약의 종료 행위 이전 최소 45일(또는 테러, 전쟁 등 동질의 위험의 경우 더 짧은 기간) 이전에 보험자는 Intercreditor Agent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i) 만약 어떤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로 보험증권을 취소 또는 전체 또는 일부의 보험담보를 취소 할 경우,

(ii) 보상한도의 감액 또는 담보변경, 자기부담금의 증액, 면책사항 또는 예외사항, 원계약 증권상의 만기일 이전의 계약종료

(b) 보험료 납입의 불이행의 경우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c) 만약 보험자가 차주 또는 여타 피보험자 또는 Intercreditor 로부터 보험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만기일 최소 45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갱신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즉시 Intercreditor Agent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d) 보험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로 만들거나, 집행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나 누락 또는 사건을 보험자가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7. 통보 / 커뮤니케이션

(a) 이 조건 또는 증권상의 모든 통지 또는 기타 연락사항은 팩스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i) 만약 팩스로 송부될 경우, 전송 후 즉시 송신자의 팩스기기에 전송이 올바로 되었음
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b) Intercreditor Agent 의 주소 및 팩스번호는 Intercreditor Agent 에 의해 대주의
보험 브로커에게 통보됩니다.

(c) Intercreditor Agent 와 Security Agent 의 최초 통보 주소 및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ecurity Agent 및 Intercreditor :

주소 :

Fax No :

Email Address :

Attention :

보험금 가지급 조항

보험자는 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급될 보험금의 () % 수준까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기입란이 공란인 경우, 해당 정보는 보험증권 스케줄의 해당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보험금직접청구조항

원증권하에서 발생된 클레임에 대하여 원수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재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면 재보험자 및 원수보험자의 배상책임의무는 소멸됩니다.

각 재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재보험에서 정한 상대적 지분으로 한정되며, 원수보험사는 리딩재보험 지분만큼의 클레임에 대한 결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수취인 조항

보험과 관련한 차주에게 지급될 모든 금원이 원화일 경우, intercreditor agent 로부터 직접
명기된 타명의 계좌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을 때까지, 다음의 ()의 원화계좌로 지급 됩니다.

(계좌번호 :)

도면과 서류 조항

도면, 설계도, 파일, 서류, 원고 혹은 컴퓨터 기록 형태의 보험목적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부문은 저장되어있던 정보를 작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포함하여 도면, 설계도, 파일, 서류, 원고 혹은 컴퓨터 기록 등을 재작성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a) 피보험자는 도면, 설계도, 파일, 서류, 원고 혹은 컴퓨터 기록을 최근의 상태로 백업하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b) 왜곡되거나 이용 불가능한 정보로 인한 손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c) 사고당 및 총보상한도는 스케줄에 명기된 보험가입금액의 1%를 넘지 않습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누출, 오염, 오타 추가약관

본 증권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누출, 오염, 오타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신체상해나 재물손해. 단 본 조항 1은 신체상해 혹은 유형 자산의 물리적 손상 혹은 파괴, 손상 혹은 파괴된 재산의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고 예기치 못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누출, 오염, 오타이 보험기간중 급격하고 우연하고 예기치 못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누출, 오염 혹은 오타 물질을 제거하는 비용
 3. 별과금, 부과금 또는 징벌적 배상책임
- 본 조항은 동 보험하에서 동 조항이 없었더라면 보상되지 않았을 어떤 배상책임에 확장하여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용 조항

이 보험은 우선 적용됩니다. 다른 보험이 우선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의무는 우선 적용됩니다.

내륙운송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지역한도 내에서 보험목적물을 계약현장으로 운송(수로 또는 항공 운송제외)하는 중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운송별로 이 특별약관의 최대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위의 기입란이 공란인 경우, 해당 정보는 보험증권 스케줄의 해당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터널 및 갱도 공사에 관한 복원 비용 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터널, 갱도 및 임시적 그리고 영구적 지하 구조물 또는 장치에 관하여 이 보험증권의 제1부분에서 지급되는 최대보상금액은 보험의 목적을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기 직전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상태 혹은 표준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단, 아래에 명기된 평균미터당 건설비용의 백분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본 특별약관을 증권에 첨부함으로써 보상되는 보험금은 각 개별 공사가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 증권에서는 개별 공사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도, 이 보험증권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입금액과의 비율대로 감액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 증권에서 보상하는 개별공사가 타 시공자와 공동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개별공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담보됩니다.

- 피보험자의 현장이 타 시공자의 공사현장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보험료만을 보험자에게 지불하고, 해당 공사 위험을 담보합니다.
- 피보험자의 현장이 타 시공자의 공사현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전체 공사에서 본인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 보험료를 지불하고, 전체 공사에서 해당 비율만큼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 그러나 만일 피보험자가 타 시공자를 대표하여 전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피보험자는 타 시공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전체 공사위험을 담보합니다.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예기치 못한 지반상태 및 장애물로 인한 손해 ,
- 지반상태의 안정화, 보강, 지하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단, 보상하는 손해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는 제외함.

- 공사시방서를 초과한 과도굴착이나 이러한 과도굴착으로 인하여 구멍을 끼메우는데 필요한 비용
- 배수비용, 단, 보상하는 손해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는 제외함.
- 배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 단, 적절한 예비설비가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 터널굴착기계의 복구 혹은 포기
- 굴착을 지지하거나 지반 상태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토양 안정액, 혼탁액 또는 기타 물질
 최대보상비율 : 총 ()% - 상기 최대보상비율은 개별증권에서 보상하는 비율을 포함한 것입니다.
 (위의 기입란이 공란인 경우, 해당 정보는 보험증권 스케줄의 해당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면유실 보강 비용 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증권에서 별도로 표기한 사고당 보상한도까지 사면 유실 보강비용을 보상합니다.

만일 본 증권에서 보상하는 개별공사가 타 시공자와 공동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개별공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담보됩니다.

- 피보험자의 현장이 타 시공자의 공사현장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보험료만을 보험자에게 지불하고, 해당 공사 위험을 담보합니다.
- 피보험자의 현장이 타 시공자의 공사현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전체 공사에서 본인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 보험료를 지불하고, 전체 공사에서 해당 비율만큼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 그러나 만일 피보험자가 타 시공자를 대표하여 전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피보험자는 타 시공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전체 공사위험을 담보합니다.

보상한도액 : () 사고당

(위의 기입란이 공란인 경우, 해당 정보는 보험증권 스케줄의 해당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위에 관한 추가약관

지하수위 하강으로 야기된 지면침하에 의한 손해는, 지하수위 하강이 지하수의 차단벽의 예기

치 못한 급작스러운 사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사면에 관한 추가약관

사면 공사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는 단위 면적당 투입된 공사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지하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사 개시 전에 관련 기관에 피보험자가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매설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의 보상책임은 직접 손해인 위 시설물의 수리 비용에 한합니다.

방화설비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건설 현장에 충분한 방화 설비, 소방기구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화재 시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종업원들이 그와 같은 방화설비 및 소방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즉시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설 현장에 보험 목적물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보관 단위당 가액은 아래에 명시된 ()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각 보관 단위는 각기 50m의 공지 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연성 물질 (나무상자 등 포장재 포함) 특히 가연성 액체 및 기체는 공사중인 물건 또는 모든 가열성 작업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4. 연소성 물질 주변에서 용접, 납땜 또는 불을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소화작업에 숙련된 근로자가 적절한 소화 기구를 갖추고 그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공사 목적물의 가동에 필요한 모든 방화 설비는 시운전 개시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별첨 2

건설공사손해공제 약관

영국식 건설공사보험약관(번역문)

본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참고로 제작 된 것이며, 사고시 모든 보상은 해당 영문 담보 명세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 차

영국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부 표.....	116
규 정.....	117
제1부문 - 건설공사보험.....	118
제2부문 - 배상책임보험	119
조 건.....	120
제3부문 - 발주자 예정 이익상실 담보.....	122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27

영국식 건설공사보험 특별약관

1)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128
2)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129
3) 유지담보 특별약관.....	130
4)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130
5)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130
6)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131
7)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131
8)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131
9) 공사완료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132
10)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담보 특별약관	132
11)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구).....	132
12)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133
13)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133
14)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 계획에 대한 추가약관	133
15) 공사용중장비 및 기계기구담보 추가약관.....	134
16) 방화설비에 대한 추가약관.....	134
17) 건설자재에 관한 추가약관	135
18) 캠프 및 보관창고에 대한 추가약관.....	135
19) 공동보험 특별약관.....	135
20)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35
21) 환율 특별약관.....	136
22) 지진지역의 구조물담보 추가약관.....	136
23) 터널 및 갱도공사에 대한 추가약관.....	136
24) 지하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137
25) 농작물, 산림 및 문화재손해부담보 추가약관	137
26) 댐 및 저수지공사 추가약관.....	137
27) 공정구간에 관한 추가약관.....	137
28) 강우, 흉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138

29) 산사태제거에 관한 추가약관	138
30) 상하수관설치에 관한 추가약관	138
31) 터널, 간도공사, 임시 또는 영구적 하부구조물 및 시설물에 관한 추가약관	139
32)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	139
33) 도면, 시방서, 설계도 담보 특별약관	140
34) 구외 보관 담보 특별약관	140
35) 내륙운송확장담보 특별약관	140
36) 증액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자동 증액)	141
37) 증액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보상한도 증액)	141
38) 공공기관 특별약관	141
39) 50:50 해상/건설 손해 분담 특별약관	141
40) 72시간 특별약관	142
41) 급격하고 우연한 누출, 오염, 오탱과 청소비용 관련 추가약관	142
42) 폭발, 붕괴, 지하매설물 확장담보 특별약관	143
43) 공급업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143
44) 건설용 중장비 담보 특별약관	143
45) 대주단 조항	144
46) 정치적 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150
47) 정보기술 조항	150
48) 테러행위 부담보특별약관	151
49) 보험금 가지급 조항	152
50) 보험금 수취인 조항	152
51) 보험금 직접청구권 특별약관	153
52) 공동조사 조항	153
53)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153
54)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154
55) 보험가입금액 자동 복원조항	155
56) 지진 부담보 특별약관	155
57) 흉수 및 범람 부담보 특별약관	155
58) 폭풍, 바람으로 인한 수해(水害) 부담보 특별약관	155
59) 지하매설 전선, 배관 또는 기타 설비에 관한 추가약관	155
60) 건설현장의 방화설비와 화재안전에 대한 추가약관	156
61)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157
62)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	157
63) 대주단 보호조항	158
64) 코퍼댐 월류에 의한 손해 부담보	160
65)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160
66) 심정(깊은 우물)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160
67) 배수작업추가약관	161
68)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	161
69) 화재 부담보 특별약관	162
70) 피보험자 분담 조항	162

71) 보험금 수취인 조항.....	162
72) 임시복구 및 손해경감 담보조항.....	163
73) 법률비용담보(제3자 배상책임 보상한도액에 한함).....	164
74) 경사면 조항.....	164
75) 지하수 조항.....	164
76) 제3부분(예정이익상실담보) 확장 담보.....	164
77) 해상위험 특별면책조항.....	164
78) 해상위험Warranty 조항	165
79) 해상위험Warranty 조항-2.....	165
80) 우선 및 비분담조항.....	166
81) 우선 및 비분담조항.....	166
82) 전자기기 손해 담보.....	166
83) 특별환급금 특별약관.....	166
84)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166
85) 수중(반체절 포함) 준설 및 재준설 비용 담보 조항.....	166
86) 농작물, 산림 및 양식손해 담보 조항.....	167
87) 중고품기계 담보.....	167
88) 상, 하차작업을 포함한 내륙 및 내륙수상운송담보.....	167
89) 전쟁 및 민중봉기 부담보 특별약관.....	167
90) 공급업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167
91) 구매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168
92) 공공시설 확장담보 특별약관.....	168
93) 부분운영 담보 특별약관.....	168
94)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169
95) 보험기간 자동연장 특별약관.....	170
96) 건설 및 조립용기계 담보 특별약관.....	170
97) 특별비용 담보 특별약관-2.....	170
98) 전문가 비용 담보 특별약관.....	170
99) 잔존물제거비용 담보 특별약관.....	171
100) 보험가입금액 복원 특별약관.....	171
101) 공공기관 특별약관-2.....	171
102) 도면 및 시방서 담보 특별약관.....	172
103) 손실 방어조치 담보 특별약관.....	172
104) 반복테스트 특별약관.....	172
105) 원보험 조항 특별약관.....	172
106) 사고 통지 특별약관.....	173
107) 보험사고 조사자 특별약관.....	173
108) 임시 복구비용 담보 특별약관.....	173
109) 보험사고 준비 비용 특별약관.....	173
110) 관할법원 특별약관.....	173
111) 석면 부담보 특별약관.....	174
112) 징벌적 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174

113) 전문인 부담보 특별약관.....	174
114) 핵위험 부담보 조항.....	174
115) 전쟁 및 내전 면책 조항.....	175
116) 테러행위 면책 배서.....	175
117)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2.....	175
118) 안전조치 추가약관.....	176
119) 자재보관 추가약관.....	176
120) 협회확장방사능오염/화학적, 생물학적, 생화학 및 전자기적 무기에 의한 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176
121) 전산데이터 특별약관.....	177
122) 누출 탐지 비용 특별약관.....	178
123) 건설/조립 장비 담보 특별약관-2.....	178
124) 전기생성장비에 대한 적정공기공급유지 특별약관.....	179
125) 가시설물 특별약관.....	179
126) 전기생성장비에 대한 적정연료상태유지 특별약관.....	179
127) 부분운영담보 특별약관-2.....	180
128) 발주자의 피고용인과 대표자를 위한 특별약관	180
129) 잔존물 제거비용 특별약관-2	180
130) 증액조항(보험가입금액 자동 증액).....	180
131) 보험사고 협조조항.....	181
132) 보험료 환급특별약관(연간포괄계약용) :.....	181

영국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번역문)

별표에 기재된 보험계약자가 다른 진술서와 함께 회사(이하『당사』라 함)에 약정의 일부로 간주되는 질문서를 완비하여 서면으로 청약한 바에 대하여 이 증권은 별표에 표시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입증한다. 보험자는 (이 증권과 이에 첨부된 배서에 포함되어 있는 면책규정과 제조건에 따라) 별표의 보험기간 중 또는 연장된 보험기간 중 특별히 제외된 원인이외의 예기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음으로써 수리나 대체를 하여야할 때에는 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개별 항목에 대하여는 각각 목별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총체적으로는 총 보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부 丑

(유첨 명세표 참조)

피보험자

보험의 목적은 하기와 같은 명세로서 라고 호칭한다.
에 위치한다.

제1부문 - 전위협담보건설공사보험

항목 : 보험의 목적 : 보험금액 :

1. 영구 또는 일시공사, 혼입되는 자재포함
 2. 건설장비, 예시하면 비계, 보조다리, 목재, 피복, 공구 및 도구, 동력발생장치, 임시용수공급 및 오수처리설비, 가전물, 연료등
 3. 건설기계

제2부문 - 배상책임보험

배상한도 :

부터

까지

(보수기간 개월을 포함하여) (규정 제2조에 의해서 조정됨) 상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정당한 하기 대표자와 보험자의 대리인이 년 월 일에 서명함

규 정

제1조 기초공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공사와 또는 건설장비(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매손실 또는 손해보상금 중 별기의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 가) 지진, 폭풍우 또는 홍수 최초의
- 나) 기타의 원인 단 화재제외 최초의

건설기계(제3항)에 대한 손실 또는 부담에 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 가) 지진, 폭풍우 또는 홍수 최초의
 - 나) 기타의 원인 단, 화재제외 최초의
- (주) 화재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는 면책비율이 없다.

제2조 피보험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변경조건이나 기타의 원인으로 부표에 기재된 물건의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이 보험의 만료 시에 이를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된다.

본 조항은 총예상 계약금액이 증가될 때에 이를 지체 없이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피보험자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에 관하여는 조건 1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 시간외근무, 야간작업 공휴일작업, 급행운임 등에 대한 특별비용은 특별히 합의 한 경우에만 이 보험에서 보상한다.

제4조

- 가) 이 증권에 부보된 공사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에 인계되든지 또는 발주자에 의하여 사용될 때(어느 쪽이든 빠른 쪽에 따라)에는 인계 또는 사용된 분에 관한 보험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 보험은 다음 항 (나)의 경우에는 거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지속된다.
- 나) 보수기간에 관하여 부표에 명시가 있을 때에는 동기간중 보험자는 계약상의 보수조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공사물의 이용증 피보험자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

제1부문 - 건설공사보험

1. 당 회사는 다음의 경우이외의 원인으로 부표에 기재된 재산에 생긴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한다.

- 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다음의 원인으로 인한 또는 원인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가)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나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 내란, 모반, 혁명, 반란, 폭동, 파업, 민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또는 테러나 어떤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실상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조직체의 행위
 - 나) 몰수, 징발, 압류 또는 법에 의하거나 사실상으로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 또는 손해
 - 다) 핵반응, 핵반사 또는 방사선오염
- 二. 직접적으로 다음의 원인에 의한 손해
 - 가) 기계적 또는 전기적 파손 또는 교란
 - 나) 사용부족으로 인한 질의 저하, 퇴화, 부식, 산화 또는 마손

상기 (가), (나)의 원인에 의한 제외손해는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기계, 구조물 또는 공사물건에만 한하며 파손, 교란, 질의 저하 또는 마손의 결과로서 다른 공사물이나 재산에 생긴 손해 또는 손실은 담보된다.
 - 다) 승인된 공사규칙, 법규 또는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규칙에 위배된 피보험자(그의 고용인은 제외)의 행위
 - 라)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 三. 서류 및 제도, 계산서, 청구서, 통화, 인지, 증거서류 차용증서, 화폐, 지폐 또는 유가증권의 분실, 훼손, 또는 그것들에 대한 손해
- 四. 재고조사중 또는 조사후에 발견된 분실 또는 부족손해

2.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가) 재질, 설계 또는 세공의 결함을 개정하기 위한 비용, 이 제외손해는 전기한결함의 결과로서 발생한 공사물이나 재산손해의 복구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위약금, 과태금, 협상비용, 계약상의 손실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간접적인 손해
- 다) 일반도로 전용면허를 가진 추진식 차량, 승강기, 항공기, 선박 또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제2부문 - 배상책임보험

1. 당 회사는 이 증권에 기재된 공사수행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다음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가) 제3자의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 그러나 용역 또는 견습계약하에서 피보험자에 고용되었거나 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하수급계약하의 사람은 제외된다.

나) 제3자의 재산에 대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나 용역 또는 견습계약하에서 피보험자에 고용되었거나 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하수급계약하의 사람이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된다.

한 사고, 연속사고, 근원 또는 동일원인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이 증권상에서 당회사가 부담하는 총보상한도는 별표 제2부에 보상한도로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이 부문에 표시된 보상손해인 경우에는 당회사는 다음의 비용도 지급한다.

가)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자에 지급한 모든 비용

나) 당회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어서 지출한 모든 비용

3. 당회사는 다음에 관계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가) 추진식차량(일반도로전용이 아닌 차량과 계약에 의하여 작업수행상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차량을 제외) 승강기, 항공기 또는 선박

나) 자동차의 사용을 규제하는 어떤 법규하에서 부보가 강제되어지는 배상책임

다) 다음의 책임에서 발생되는 배상책임

① 피보험자, 발주자 또는 계약공사에 관계되는 회사의 고용인, 종업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에 귀속되지 않는 책임으로서 합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배상책임

라)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핵반응, 핵반사 또는 방사선오염으로 인한 신체의 상해, 사망, 재산의 손해와 또는 부수된 손해에 대한 배상

조 건

1. 보험기간의 중도에 중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당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합의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2. 본 증권상의 모든 조건 면책사항과 규정 또는 배서나 기타방법으로 표시된 사항은
 - 가) 서로 결합되어 본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며
 - 나) 당회사의 책임에 앞서서 피보험자가 준수해야할 선행조건으로 간주한다.
 3. 피보험자는
 - 가) 어떤 사고 또는 배상청구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회사가 제공한 양식과 조건에 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 나) 영장, 소환장이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개시되는 절차에 관한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이를 당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 다) 당회사가 문제해결, 배상청구에 대한 항의나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당회사에 모든 정보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물품이 분실, 도난 또는 고의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의 즉각적인 신고와 분실된 물품의 회수, 도난이나 고의적인 파손에 있어서는 범인의 발견과 당회사의 비용에 의한 고소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당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이 증권하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협상, 자급, 타결, 승인이나 부인 등을 하지 못한다.

피보험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의 소유 여부를 막론하고 어떤 재산을 당회사에 위탁할 권리가 없다.
 4. 피보험자는 당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손상된 문제의 재산을 내놓든지 거기에 접근하고 또한 당회사의 요청에 따라 배상청구에 관계되는 손실이나 손해가 담보된 위험중에서 사실상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피보험자는 노무자의 선택에 합리적인 주의를 가져야 하고 이 증권에서 담보된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공장과 기계를 효과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당회사는 언제든지 당회사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공장과 기계를 검사케 할 수 있다.
- 피보험자는 또한 사고의 합리적인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 증권에서 담보되어 있는 사고

가 발생한 때에는 당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의 경감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6. 이 보험은 손해의 분담을 하지 않으며 다른 보험에서 손해회복을 할 수 없으면 본 증권에 의한 손해만을 지급한다.
7. 이 증권하에서 보상될 수 있는 배상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회사는 다음 사항을 할수 있다.
 - 가) 피보험자의 명의나 그의 대신으로 어떤 절차나 문제타결에 관한 절대적인 행위 또는 통제를 하는 것
 - 나) 자기의 비용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명의로 이 증권에 담보된 바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이나 손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취하는 것
 - 다) 이 증권의 부표에 표시되어 있는 최고보상한도를 지급하거나 배상청구가 해결될 수 있는 금액(상기 배상청구 때문에 기히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을 지급한 후, 이 증권에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상금지급일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동일한 건의 배상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8. 이 증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서면으로서 선정한 일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만약 양당사자가 단일중재인의 선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일방이 서면으로 요청한 후 일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가 지정하는 이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며 중재인간에 합의가 안될 때에는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양중재인에 의하여 지정되는 일명의 심판인의 결정에 따른다.
심판인은 중재인과 같이 심리에 임하고 그 심의를 주재한다.
중재인과 심판인은 기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중재인과 심판인의 판정을 받는 것은 당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권취득의 전제조건이 된다. 만약 당회사가 이 증서하의 배상청구에 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거부한 후 12개월 이내에 여기에 규정된 중재에 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배상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보상받지 못한다.

제3부문 - 발주자 예정 이의상실 담보

회사는 피보험자(이 보험증권 제1부문 스케줄의 기명 발주자)에게 이 부문에서 정의한 매출액의 감소 또는 특별비용의 증가로 실제 총이익의 상실을, 이 부문에서 특별히 면책하지 않은 한,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기간 동안 제1부문하에서 담보되는 계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작업에 지장이 되어 사업개시가 지연되었거나 (이하지연) 피보험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 보상한다.

이 부문하에서 보상하는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 총이익 상실액 : 보상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달성하였을 매출액과의 차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특별비용 : 오로지 보상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을 매출액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 단, 이 비용 없이는 매출액 감소가 보상기간 내에 발생하였어야하고 이 비용은 방지시킨 매출 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문하의 연간보험가입금액이 연간매출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용어의 정의

보험기간

제1부문의 건설공사보험 물적손해 담보가 끝나는 시점과 이 부문의 스케줄상 명기된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종기로 하는 스케줄상 명기된 기간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

지연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이 개시되었을 이 부문의 스케줄상 명기된 개시일이나 수정된 개시일자

보상기간

이 부문의 스케줄상의 최대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로부터 지연으로 인해 피보험사업이 영향을 받는 동안의 기간

자기부담기간

회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스케줄상 명기된 기간. 해당금액은 자기부담기간으로 합의된 일수에 보상기간 중 발생한 일일평균손실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출액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피보험사업과정에서 임대한 설비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금액 (할인보험 가능)

연간매출액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에 달성하였을 매출액

연간총이익

연간매출액에서 특정변동비용을 차감한 금액. 특정변동비용이란 변동비용, 예를 들면 상품, 자재, 예비품 또는 서비스(작업의 유지상 필요하지 않는 한)를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포장비, 운반비, 화물비, 보관료,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 감찰료, 로열티 등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모든 비용.

총이익율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기간동안 달성하였을 매출액에 대한 이익비율

제3부문에 대한 특별 면책사항

회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어떠한 지연이나 지연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총이익상실액과 특별비용;

1-1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되지 않는 한 제1부문의 특별약관으로 담보되는 손실 또는 손해;

1-2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되지 않는 한 지진, 화산 폭발, 해일;

1-3 주변의 재산, 건설기계, 플랜트, 그리고 장비에 미친 손실 또는 손해;

1-4 작업 매체 또는 공급 원료의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피보험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자재의 부족, 파손, 변질, 악화 또는 손해;

1-5 공권력에 의한 제한 조치;

1-6 자금조달부족;

1-7 사고 발생 후 이루어지는 어떠한 결함이나 하자의 수정, 보완, 개선, 교정, 제거;

- 1-8 피보험자에게 인도되었거나 사용되어지거나 제1부문하의 담보가 끝난 손실 또는 손해;
2. 어떠한 별금으로 인한 손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공사의 지연 또는 미수행, 모든 종류의 별금
 3. 사업의 실제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 면허 또는 주문의 중단,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야기되는 사업상의 손해;
 4. 특별약관에 의하여 합의되지 않는 한 시험적 유형의 건설공사의 손실 또는 손해.

제3부문에 대한 적용조항

메모 1. 보험기간의 연장

제1부문에서의 보험기간 연장은 이 부문의 스케줄에 명기된 보험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시키지 않는다. 이 부문하의 보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연장사유와 함께 요청하여 하며,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문에 유효하다.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의 변경이 있을 경우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문에 유효하다.

메모 2. 손해사정의 기초

총이익율, 연간매출액 산정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로부터 획득 할 수 있는 피보험사업의 결과를 실질과 근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다음의 요인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 a) 사업 개시 후 12개월 동안의 피보험사업의 결과
- b) 지연이 발생치 않았을 경우 피보험사업에 영향을 주었을 변화와 특수상황
- c) 사업 개시 후 피보험사업에 영향을 주는 변화와 특수상황

메모 3. 보험료의 환급

피보험자가 피보험사업의 개시일 또는 지연의 발생없이 사업이 개시한 날 이후 회계기간 12개월 동안의 총이익이 보험금액보다 적다는 것(피보험자의 감사에 의해 확인돼야함)을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동안에 지불된 보험료의 1/3범위내에서 그 차액과 관련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단, 이 증권하에서 보상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환급보험료는 이러한 손해로 기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 차액만을 환급한다.

제3부문에 대한 특별조항

1. 피보험자는 이 부문의 스케줄에 명기된 간격으로 최근 공정 진척도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아래사항과 같이 최초 고지된 위험의 여하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가 승인한 약정서에 의해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이 증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예상 공정프로그램의 변경
 - 모든 작업항목의 변경, 조정, 추가
 - 규정된 건설방법의 이탈
 - 피보험이익의 변경(사업의 중단, 청산 또는 관재인이 임명되었을 경우 등)
3. 이 부문에서 지연이나 보상청구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a) 피보험자는 유선이나 전보로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확정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b) 피보험자는 어떠한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하여 공사의 방해를 감소시키거나 저지하는데 유익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하는데 동의, 허락하여야 한다.
 - c) 회사와 회사의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보험에 가입된 당사자들에 대한 편견없이, 당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책임있는 원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손해의 원인, 손실 또는 손해의 정도, 피보험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의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연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피보험자가 회사에게 이러한 행위 허락하는 증거가 된다. 만약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이 상기 활동 동안에 회사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문 하의 모든 이익은 상실된다.
4.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는 지연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허용한 시일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가 손해액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장부나 회계서류 및 관련청구서, 대차대조표, 증거물, 정보, 설명서, 기타 증거자료와 회사의 요청 시 보상청구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법적 진술서도 함께 작성, 구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 보험금의 최종확정이 있은 후, 한달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상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회사가 손해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받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후 한 달 후에,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의 최소금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아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a)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필요한 증거가 제시될 때 까지
- b) 만약 어떤 손해나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의 지연과 관련 피보험자에 협의를 두고 경찰, 형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사가 완결 될 때까지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를 제하고는 보류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 1 조

1. 이 증권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계약으로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2회분납

제 1회 : 책임개시일까지 보험료의 (50%)

제 2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50%)

2. 3회분납

제 1회 : 책임개시일까지 보험료의 (34%)

제 2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33%)

제 3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33%)

3. 4회분납

제 1회 : 책임개시일까지 보험료의 (25%)

제 2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25%)

제 3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25%)

제 4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25%)

2. 전항의 보험료 분납기일까지 당해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당해 분납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당해 분납보험료를 받을 때까지의 사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가 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보험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미납입 보험료 전액을 우선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다른 보험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국식 건설공사보험 특별약관 (번역문)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와 관련하여 이 특별약관상(항상 아래 특별조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으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1. 이 특별약관의 특별조건 2의 손해가 아닌 모든 공공질서 교란행위(파업이나 직장폐쇄와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에 참가한 자의 행위
2. 교란행위를 진압하거나, 진압을 시도하거나 또는 그 교란행위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기관의 행위
3. 파업을 선동하거나 직장폐쇄에 항거하는 파업자 또는 직장폐쇄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
4. 이 같은 행위를 저지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기관의 행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약정한다:

1. 이 보험증권의 제 조건과 제 면책 조항 및 제 규정은 다음의 특별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약관에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증권상의 손실 및 손해에 관한 규정도 이 특별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에 적용되어야 한다.
2. 다음의 특별조건은 이 특별약관에만 적용되며 보험 증권의 제 규정은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보험에 적용된다.

특별조건

1. 회사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a.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공정이나 작업의 자연이나 방해 및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b. 합법기관의 몰수, 징발 또는 명령에 따른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c. 타인의 불법적인 건물 점유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손실 또는 손해

- d. 모든 종류와 유형의 결과적 손해 또는 배상책임,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중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
- 그러나 회사는 전항 b, c.의 손해 중 소유권 박탈 이전에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 중에 발생하는 보험목적물의 물리적인 손해는 보상한다.
2. 회사는 직간접여부와 상관없이 아래로 인하여 또는 아래의 결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a.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함) 또는 내란
 - b. 모반, 민중봉기에 상당하는 소요, 군사적 봉기, 반역, 반란,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폭력
 - c. 강제적으로 법률상의(de jure) 또는 사실상의(de facto)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테러리즘 또는 폭력을 통해 압력을 가하려하는 단체를 위한 또는 대신한 모든 사람의 행위 어떠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 회사가 이 조항을 이유로 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가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가 이 보험에서 담보된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3. 회사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마지막으로 등록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함으로 이 보험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회사는 계약 파기일로부터 보험 미경과 기간에 비례한 보험료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
 4. 이 특별약관에서의 1사고당 보상한도란 168시간 지속되는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한다.

이 증권의 담보기간 동안 회사의 총보상한도는 1사고당 보상한도의 2배로 한다.

보상한도액 : 한사고당

자기부담금 : 한사고당

추가보험료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스케줄에 기재된 모든 피보험자가 이 증권의 제3자 배상책임으로 담보되며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 아래와 관련된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 보통약관의 제1부문에 의하여 담보되었거나 담보될 수 있는 항목(보상한도 또는 초과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 치명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나 사용자배상 책임보험에 담보되었거나 담보될 수 있는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신체상해 또는 질병
1 사고 또는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연속적인 사고들의 경우 회사의 총보상 한도액은 스케줄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추가보험료:

유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아래 명기된 유지기간 동안 피보험자인 공사업자가 계약상의 유지조항(Maintenance Provisions)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계약 공사에 입히 손해를 보상한다.

추가보험료 :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유지기간 동안에 계약공사에 발생한 아래의 손해를 보상한다.

- 피보험자인 공사업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유지조항 (Maintenance Provisions)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입힌 손해
 - 건설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유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추가보험료 :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아래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시각외 구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화물(항공운임 제외)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보험의 목적의 손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손해 폼목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특별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된다.

보상한도액 : 1사고당

추가보험료 :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항공운임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보험목적의 손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지급될 항공운임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아래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자기부담금액 : 보상 가능한 추가비용의 20%, 단 1사고당 최저
- 최대 보상한도액 :
- 추가 보험료:

설계결합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c)항은 삭제된다. 그리고 (d)항은 (d)-"재질결함이나 기술적 출렬 또는 설계결함으로 인한 교체, 수리 또는 세공 비용. 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목적물에만 적용되며, 재질결함이나 기술적 출렬 또는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결과로 정당하게 사용된 보험의 목적 물에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은 보상한다"로 대체 된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공사완료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공사의 일부가 인도되거나 사용되어 이 보통약관 제1부문에서 담보되는 항목의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추가보험료 :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4주이내의 시운전 또는 시선적기간이 보험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설비 또는 기계의 일부가 시운전이 완료되었거나 사용되었거나 또는 발주자에게 인도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종료되고 그 외의 부분은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증권의 보통약관 제1부문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c)와 (d)는 삭제되고 아래의 조항이 적용된다:

설계결함, 재질 또는 캐스팅(casting) 결함이나 조립결함을 제외한 기술적 출렬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중고품에 대한 보험기간은 시운전개시와 동시에 종료된다.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구)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이 계약의 보험의 목적이 건설공사 도중에 아래에 명기된 주위 재산에 입힌 급격하고도 우연한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주위재산은 건설공사 개시 이전에 그 상태가 양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회사와 협조하여 안전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 지하수 수위의 변화, 지반보강공사, 터널굴착공사 기타 지지대 및 하층토작업이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이 특별약관의 담보범위에 포함되나, 다음의 사항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2) 구조물의 안전성이나 사용자의 안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균열로 인한 손해
- (3) 건설공사중 추가로 필요로 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한사고당 보상한도액**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액 한 사고당 손해액의 20% 단, 최저자기부담금

주위재산명세서

한 사 고 당 보 상 한 도 액	
총 보 상 한 도 액	
자 기 부 담 액	한 사고당 손해액의 20% 단, 최저자기부담금 :
주 위 재 산 명 세 서	

추가보험료 :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하는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케줄에 명시된 ()을 초과할 수 없다.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건설현장 이외에 아래에 명기된 지역에서의 내륙운송 및 보관도중, 피보험자의 통제, 보관 및 보호하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자재 또는 재산의 손해를 확장 담보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송 및 보관지역 :

(2) 보상한도액

① 한 보관장소당 :

② 1회 운송당 :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 계획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가 작성 제출한 건설 및 조립공사의 일정계획 및 기타 서류와 기술적인 자료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계획이 아래에 명기된 기간 이상 변경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실 또는 손해는 회사가 손해 발생 전에 그 일정 계획의 변경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일정계획 변경기간 : 주

공사용증장비 및 기계기구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홍수 또는 범람으로 인해 입은 건설플랜트, 장비 및 기계의 손실, 손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책임에 대해 공사수행 후나 공사중단기간 동안에 이들 건설플랜트, 장비 및 기계가 20년 주기의 홍수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지역에 보존되어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방화설비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건설현장에 충분한 방화설비 소방기구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화재시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2) 종업원들이 그와 같은 방화설비 및 소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하며 또한 즉시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건설현장에 보험목적물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보관단위당 가액은()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각 보관단위는 각기 50m의 공지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연성 물질 (나무상자등 포장재 포함) 특히 가연성 액체 및 기체는 공사중인 물건 또는 모든 가열성 작업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 (4) 연소성 물질 주변에서 용접, 납땜 또는 불을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 한사람 이상의 소화작업에 숙련된 근로자가 적절한 소화기구를 갖추고 그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5) 공사목적물의 가동에 필요한 모든 방화설비는 시운전 개시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하여야 합니다.

건설자재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홍수 또는 범람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건설자재에 발생한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보상 한다. 단, 건설자재는 3일분의 소요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초과분은 20년 주기의 홍수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캠프 및 보관창고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화재, 홍수, 범람에 의하여 캠프 및 보관창고에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다만, 이 캠프 및 보관창고가 과거 20년 동안에 기록된 최고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각 저장 창고가 적어도 50m이상 떨어져 있거나 방화벽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다.

캠프당 보상한도액 :

개별 보관창고당 보상한도액 :

공동보험 특별약관

이 증권은 아래의 공동보험자를 대리하여 간사사인 ()가 발행하며 각 보험자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인수비율

회 사 명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이 증권상의 보험료를 회사에 ()회로 분납한다.
2. 1) ()회 분납

제 1 회 : 책임개시일까지 보험료의(%)

제()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

- 2) 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 보험료 전액을 차감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3. 1)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약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 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둔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 2) 회사는 유예기간 만료 7일전에 계약효력 상실을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 기간 만료일 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환율 특별약관

- a)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한다.
- b)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대고객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한다.

지진지역의 구조물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설계시에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건축관련 규정에 따라 지진위험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공사자재 및 공사기술과 제반 역학 계산이 적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진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터널 및 쟁도공사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건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 연약지반 (Soft Rock Areas)에 대한 그라우팅 (Grouting)이나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2)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굴착최저선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굴착했거나 과도굴착으로 인하여 구멍을 되메우는데 필요한 비용
- (3) 기대이상으로 물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를 포함하여 배수와 관련된 비용
- (4) 배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 단, 적절한 예비설비가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지하수나 지표수의 배출을 위한 추가시설이나 추가 방수장치의 설치에 따른 비용

지하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공사개시 전에 관련기관에 피보험자가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매설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의 보상책임은 직접손해인 위 시설물의 수리비용에 한합니다.

농작물, 산림 및 문화재손해부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농작물, 산림 및 양식(사육, 재배, 경작, 양식 및 배양 등 포함)에 대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댐 및 저수지공사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건설공사 중에 발견한 연약지반(Soft Rock Areas)에 대한 그라우팅(GROUTING)이나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대이상으로 물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를 포함하여 배수와 관련된 비용
- 배수장치 고장으로 인한 손해. 단, 적절한 예비설비가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지하수 및 지표수의 배출을 위한 추가시설이나 추가 방수장치의 설치에 따른 비용
- 불충분한 지반다짐으로 인한 침하에 따른 손해
- 균열 또는 누수로 생긴 손해

공정구간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제방, 개착(Cuttings), 계단식파기 (Benchings), 도랑, 수로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대한 또는 이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손해는 당해 제방, 개착(Cuttings), 계단식파기

(Benchings), 도랑, 수로공사 또는 도로공사가 담보목적물의 완공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명기된 총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건설되는 경우에만 보상하며, 회사의 1사고당 보상은 이러한 구간에 수리비용에 한한다.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강우, 홍수 또는 범람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적정한 안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만 이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에서 적정한 안전조치라 함은 전 보험기간동안 건설현장에 대하여 2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또는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다만, 모래, 나무 등 장애물이 수로에서 즉각적으로 제거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산사태제거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의 사항은 보상하지 않는다.

- 산사태에 영향을 입은 지역의 사고발생 전 실굴착 경비를 초과한 산사태 제거비용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침식된 경사지역이나 기타 정지 면의 보수를 위한 비용.

상하수관설치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배관이나 도랑, 수직갱에 홍수나 실트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단, 1사고당 회사는 전부 또는 일부를 파헤친 도랑을 아래에 기재된 최대거리에 한하여 보상한다.

1. 배관설치직후 도랑범람으로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되메움과 같은 방법으로 배관이 잘 보호된 경우
2. 배관설치직후 배관에 물이나 실트 등과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 경우
3. 배관 압력시험이 끝난 즉시 그 끝난 부분에 대한 도랑에 되메운 경우

터널, 쟁도공사, 임시 또는 영구적 하부구조물 및 시설물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건설방법의 변경 또는 예기치 못한 지면상황 또는 장애물
- 보상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복원에 필요하지 않는 한, 지면상황을 개선 또는 안정화하거나 차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굴착 최저선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굴착했거나 과도 굴착으로 인하여 되메우는데 필요한 비용
- 보상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복원에 필요하지 않는 한, 배수 비용
- 배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단, 적절한 예비 설비가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 터널 천공기의 유기 또는 복구
- 벤토나이트, 완충물질, 굴착붕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매체, 물질 또는 지표안정액과 같은 작용재 등의 손해

보상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 최대 보상한도는 보험 목적물을 손실 또는 손해 발생 직전의 기준 또는 기술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복구하는데 사용된 비용으로 직접적인 손해구역의 최초 미터당 평균건설비용의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최대 지급 비율:%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매사고당 명세서의에 명시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목적물을 복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전문가 용역비와 조사자 비용과 관련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전문가 용역비에는 금융당사자의 기술적인 자문과 관찰 용역비와 이하에서 담보하는 사고임을 조사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에 의해 요구되어질 수 있는 입증을 위한 전문용역과 법적비용, 보험금청구를 위한 준비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에 열거된 비용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도면, 시방서, 설계도 담보 특별약관

보험자는 손해가 어디서 또는 언제 발생했던지 본 증권에서 담보되는 위험의 결과로 손상된 도면, 시방서, 설계도 또는 기타 계약서류의 재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추가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외 보관 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아래의 구역내에 있는 현장외 보관창고에 있는 보험목적물(제조업자의, 유통업자의, 또는 공급업자의 현장에서 생산, 처리, 또는 보관되고 있는 재산은 제외)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회사는 창고 또는 보관창고의 일반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 한다:

- 보관구역이 위치해 있는 지역 또는 보관하는 재산의 종류에 맞게 둘러싸여있고 (빌딩 또는 올타리), 경계를 서고 있으며 그리고 화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개별 보관창고는 각각 50미터의 공지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보관창고는 20년 주기의 강우 또는 홍수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위치가 선정되어야 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 보관창고별 가액의 한도를 설정한다.

구역한도:

보관창고별 최대가액:

보상한도액 (1사고당):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 1사고당 최소

추가보험료 :

내륙운송화장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본 증권의 제1부문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계약현장까지 운송 중(수상 혹은 항공 운송중 위험 제외)에 보험목적물의 손실 혹은 손상을 확장 담보합니다. 단 동 특별약관하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은 운송당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증액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자동 증액)

동 보험의 제1부문하의 가입금액은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총 계약 금액입니다. 동 보험에서 담보되는 공사목적물의 계약금액이 보험기간 내에 증액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자동적으로 증액됩니다. 그러나 증액의 한도는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금액의 ()%를 초과하지 않으며, 초과 증액분에 대한 것은 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증액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보상한도 증액)

보험목적물에 손상 혹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교체 및/혹은 수리 및/혹은 개선비용이 계약의 개시시점에 원래 예상했던 비용을 초과하여 증가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가입금액의 추가 ()%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 증가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공공기관 특별약관

본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또는 훼손된 보험목적물의 복구에 있어서 순수하게 정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법률, 규정, 부칙 (또는 이의 상당하는 내용)을 따르기 위하여 발생된 추가 비용까지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확장조항은 다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a) 파손되지 아니한 보험 목적물
- (b) 자본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된 세금, 부과금, 추징금의 지급
- (c)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통지를 따르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

50:50 해상/건설 손해 분담 특별약관

본 조항은 대한민국국외에서 위탁 발송되는 해상적하보험의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60일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 a) 피보험자는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손상에 대하여 현장에 도착직 후 보험목적물의 개별 품목을 검사합니다.
- b) 추후에 개봉할 목적으로 남겨진 포장품목의 경우 포장에 대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육안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해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개봉하여 검사 후 발견된 손해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c) 이상이 없이 운송된 화물의 포장상태에 대해 아무런 손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개장 도중 발견된 다음의 수반된 손상은, 그러한 손상이 건설 현장 도착전이나 후에 유발되었는지의 규명 여부에 따라 해상적하보험 또는 동 보험의 제1부문에서 다루어집니다.

- d) 화물이 입은 손상이 건설현장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에 유발되었는지의 규명이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손상에 대한 비용은 해상적하 보험자와 동 보험의 제1부문 보험자들 간에 균등하게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 가능한 보유한도액(자기부담금)의 50%가 적용됩니다.

72시간 특별약관

연속된 72시간의 기간동안 지진, 화산활동, 지각운동, 폭풍우, 폭동, 동맹파업, 소요, 파괴, 악의적 행동, 홍수나 수해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나 손실은 자기부담금 적용시 하나의 사고로 간주됩니다. 상기 언급한 내용에 있어서 72시간 기간의 개시시점은 피보험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며, 72시간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두개이상의 72시간 기간이 중첩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개시 이전이나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단, 선택되어진 72시간의 기간이 보험기간 종료이전에 시작되어 보험기간의 종료 후 까지 연장되어진 경우, 마치 그러한 기간이 본 증권의 조건을 완전히 포함된 것처럼 보험자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누출, 오염, 오탱과 청소비용 관련 추가약관

본 증권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누출, 오염, 오탱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신체상해나 재물손해. 단 본 조항 1은 신체상해 혹은 유형 자산의 물리적 손상 혹은 파괴, 손상 혹은 파괴된 재산의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고 예기치 못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누출, 오염, 오탱이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하고 예기치 못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누출, 오염 혹은 오탱 물질을 제거하는 비용
3. 별과금, 부과금 또는 징벌적 배상책임

본 조항은 동 보험하에서 동 조항이 없었더라면 보상되지 않았을 어떤 배상책임에 확장하여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폭발, 봉괴, 지하매설물 확장담보 특별약관

1. 제2부문에 아래의 확장담보가 적용됩니다.:

본 증권은 폭발이나 봉괴 혹은 지하매설물의 손상 내에 포함되는 물적 손해에 적용됩니다.

본 확장담보는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피보험자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
- b. 완성작업물의 위험 내에 포함된 재물손해

2. 추가적으로 아래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폭발손해는 폭파나 폭발로 인한 재물손실을 포함하며, 공기로 나증기로, 가압된 파이프, 원동기, 기계, 전력 송전 기기 등의 폭발로 인한 손해는 제외 됩니다.

봉괴손해는 구축물의 손실 및 그로 인한 다른 재물에의 물적 손실을 포함합니다.

구축물의 손실은 다음의 원인으로 기인한 구축물의 봉괴나 구조적 파손을 의미합니다.

- 1) 토양의 안정작업, 굴착, 천공, 채움, 뒤채움, 터널링, 파일 항타, 가물막이 공사나 케이슨 작업
- 2) 건물이나 구축물의 이동, 지지, 응기나 파괴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지지대의 제거나 재건축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은 지하매설물의 손해와 그에 따른 다른 재물에 대한 물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지하매설물의 손해는 토양 안정작업, 포장, 굴착, 천공, 채움, 뒤채움 또는 항타를 위하여 기계 장비를 이용하는 동안에 지하에 있는 전선, 배관, 파이프, 간선, 하수관, 탱크, 터널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에 부속된 설비에 발생된 물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공급업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 부문하에서의 보상은 아래의 피보험 목적물의 공급업자 혹은 제조업자의 구내의 손실, 파괴 혹은 손상의 결과로 프로젝트의 상업운영일의 개시 지연, 중단 혹은 방해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을 포함하여 확장 담보합니다.

기명 공급업자:

건설용 중장비 담보 특별약관

이 부문하에서의 보상은 건설용 중장비, 도구, 기중기 임시빌딩 및 그 동산의 손실, 파괴 혹은

손상의 결과로 프로젝트의 상업운영일의 개시 지연, 중단 혹은 방해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을 포함하여 확장 담보합니다.

대주단 조항

제1부분

- ### 1. 이 증권에서:

“차주”란 () 를 의미합니다.

“금융약정”이란 차주, 대주단간 대리인, Security Agent 그리고 은행과 명기된 금융기관 간의 금융약정을 의미합니다.

“Facility Agent”란 때때로 차주가 통지하는 승계자 혹은 Credit Agreement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역할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은행”이란 은행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차주에게 투자, 재무, 자금조달 및 헛징수단 등을 제공하는 기타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 문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관련하여 수탁자, 수입자, 승계자, 교체 혹은 추가채권자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란 이 증권하에 보험을 가입한 각각의 실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urity Agent”란 은행을 위하여 그 권한 내에서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때때로 차주가 통지하는 은행의 승계자를 포함합니다.

“Security Assignment Agreement”란 차주가 혜택 특히 이 보험의 혜택을 Security Agent에게 양도하고 차주에 의해 행사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2. 보험자는 Security Assignment Agreement에 의거 차주가 Security Agent(은행을 위하여거나 혹은 대신해서)에게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발생되는 모든 Security Interest와 아래에 명시된 대로 지급될 보험 및 보험처리절차와 관련한 클레임(모든 종류의 클레임과 환급 보험료 및 이와 관련한 처리를 포함하여)을 위임하고 양도 할 것을 통지 받은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자는 기타 양도, 지시 혹은 이 보험하에서 차주의 권리나 이익을 방해하는 기타의 통지를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보험자는 이 보험이 피보험 당사자에게 가장 우선하고 타 보험과 분담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자의 책임액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타 보험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담 혹은 손해 분담의 주장을 포기합니다.

4. (a) 피보험자가 되는 각각의 당사자들은 이 증권의 각 조항하에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총 책임한도가 이 증권이나 조항하의 보상한도나 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증권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라는 용어로 그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이 별도의 실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증권하에 특정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이 증권의 보험조건이나 주어진 의무에 대해 타 피보험자의 정당한 준수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타 피보험자의 그러한 준수나 이행의 실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b) 보험자는 (i) 그 자료가 상당한 정도로 잘못된 자료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위험과 관련한 차주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적정한 자료를 받았고 (ii) 은행이나 그 은행의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혹은 컨설턴트에 대한 보험가입 결정과 관련해서 보험자에 의해 요구되거나 사용되어온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c) 특정 혹은 다수의 피보험 당사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그 지급되는 금액만큼 이 증권 하에 클레임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액과 총 보상한 도(만약 있다면)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 (d) 이 증권의 타 보험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당사자가 고의나 부정으로 미공개 혹은 허위진술 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서 이를 “무효화행위”라 합니다.), 보험자는 그 위험이나 클레임이 부적정하게 통보되거나 잘못 진술되었다는 이유로 이 보험을 무효로 할 수 없고, 이 보험하에 유효한 클레임을 거절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e) 그러나 특정 피보험자와 관련된 무효화행위는 피보험성이익을 가지고 있고 무효화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타 피보험자의 보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f)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의해 접수된 어떠한 클레임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혹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약으로 인하거나 협약하에 차주나 대주에게 부여된 권리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보험자가 가지거나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구상권이나 소송권을 포기합니다.
- 단, 그 상환청구권이 “무효화행위”的 결과로서 획득되고 “무효화행위”에 책임있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구상권이나 소송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제기한 클레임에 대해서 차주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최종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지급이 이루어질 때 까지 보험자는 차주나 은행에 대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니다.
5. 은행은 어떠한 고지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보험자는 Facility Agent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 (a) 만약 어떠한 보험자라도 어떠한 이유에서 이 보험이나 보험의 담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키고자 할 경우 적어도 ()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b) 보험료가 통지한 기간내에 지불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담보의 취소나 무효에 대해 적어도 ()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c) 원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계약종료, 보상한도나 담보범위의 감소, 공제금액의 증가 등에 대해 ()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 (d) 보험의 전체나 일부를 무효로 만들거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고려하는 어떠한 행위, 누락 또는 사건에 대해 알자마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7. Facility Agent는 본 보험과 관련된 통지의 수령 또는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은의 대리인이며 그 외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8. 보험자는 은행과 그들의 각각 임원, 직원, 대리인이나 자문인을 본 증권하에서 추가 피보험자로 인정합니다. 보험자는 은행 혹은 은행의 임원, 혹은 고용인 혹은 대리인 혹은 자문인이 가지고 있는 기타 보험에 대한 손해분담청구권을 포기합니다.
9. 피보험자는 원수보험자에게 모든 클레임, 환급보험료, 특혜지급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불할 금액을 지급하는 데에 취소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시하며 원수보험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지불은 아래의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1) 동 계약에 관련하여 혹은 동 계약하에서 차주의 계좌,
- (2) 보험금 수취 계좌 (계좌번호: 및 장소:) 혹은
- (3) Security Agent가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명시한) 다른 계좌. Security Agent를 제외한 차주나 원수보험자 혹은 다른 당사자에 의한 어떠한 지시도 원수보험자에 의해 이행되지 않습니다. 단 Security Agent나 Security Agent가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한 다른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 따라 원피보험 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제 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될 금액 내에서는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할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수보험자는 어떠한 형태의 공제 혹은 어떤 계정 혹은 어떤 형태로든 상쇄를 하지 않고 모든 관련 금액을 지급대상에게 지급합니다. 동 조항에 따라 보험금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지급한 금액만큼 원수보험자가 차주 혹은 기타 클레임 청구 피보험 당사자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제합니다. 동 조항내의 협정은 차주 혹은 원수보험자의 청산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10. 보험자는 은행의 보험에 대한 대가 수령을 인정하며이 보험하에서 다른 피보험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은행에게 지급책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보험자는 은행에 의

하여 지급되어져야 할 금액과 차주에 의하여 지급되어져야 하는 보험료나 기타 금액을 서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증권하에서 보험료의 지급이나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에 대한 차주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11. 상기 은행조항(Banks Clause) 6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은 은행과의 사전 동의하에 차주에 의한 본 보험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피보험자에 의하여도 해지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의 불이행을 제외하고는 본 보험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12. 본 배서조항은 증권의 사항들을 변경하며 증권에서 상충되는 조항이나 앞서 적용된 배서조항에 우선합니다.
13. 동 증권과 관련하여 혹은 증권하에서 Facility Agent에 대한 모든 통지 혹은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전달 혹은 팩스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지는 아래 시점에서 Facility Agent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i) 직접 전달되었을 경우, 전달된 시점
 - (ii) 팩스로 전송되었을 경우, 전송된 날짜 시점, 단 (i) 전송직후, 송신자의 팩시밀리에 올바른 전송이 확인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록 (ii) 전송일은 전송시점에 수신자 국가의 영업일이어야 하며, 수신인의 시간대를 기준 오후 5시 이전에 수취된 것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인 국가에서 다음 영업일에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 증권과 관련하여 혹은 증권하에서 모든 통지를 위한 Facility Agent의 주소 및 팩시밀리번호는 동 목적을 위하여 Facility Agent가 때때로 차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Facility Agent의 최초의 주소 및 팩시밀리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The Agent : ()
 Address : ()
 Fax No : ()
 Attention : ()

제2부분

제1부분에서 명시된 배서사항에 추가하여 모든 재보험은 실체적으로 아래의 배서사항을 포함합니다.

1. 본 증권에 있어서:

재보험양도협정은 원수보험자가 이행하는 재보험 양도를 의미합니다. 동 양도협정은 그

중에서도 특히 원수보험자의 차주에 대한 재보험금 양도사항을 포함합니다.

2. 재보험자는 재보험양도협정에 의거 “원수보험자는 차주에게 재보험에 관련된 그리고 재보험에 관련되거나 재보험하에서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현금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원수보험자 현재 및 미래의 권리 및 이익을 양도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재보험자는 기타 양도, 지시 혹은 재보험하에서 원수보험자의 권리나 이익을 방해하는 기타의 통지를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모든 클레임, 환급보험료, 특혜지급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불할 금액을 지급하는 데에 취소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시하며 재보험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지불은 아래의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4. 원수보험자는 리딩재보험자에게 (모든 재보험자를 대신함) 동 재보험증권하에서 클레임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선의로 늦게 통지된 경우에는 원수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원수보험자 혹은 리딩재보험자는 원수보험자 혹은 모든 재보험자를 대신하여 클레임을 야기 할 수 있는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원수보험자를 상대로 차주 혹은 은행에서 제기한 클레임을 조사, 사정 및 동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원수보험자 혹은 리딩재보험자가 차주 혹은 은행이 제기한 재보험클레임에 대하여 해결 또는 타협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 이러한 결정은 원수보험자 혹은 재보험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재보험자는 상기 조항 3하의 손실지불조항에 따라 원수보험자의 재보험 클레임을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본 재보험 및 상기 조항 3의 손실지급조항에 따른 재보험자의 지급의무는 원수보험자에게 지급책임(클레임에 대한 원수보험자의 동의 혹은 타협이든지, 법원명령 혹은 중재이든지 관계없이)이 발생하였을 때 생겨나며, 원수보험자가 실제로 클레임을 지급하였는지 혹은 차주나 은행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였는지는 관계없습니다.
6. 재보험자는 Facility Agent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 (a) 어떤 재보험자가 취소 혹은 무효 또는 이와 같은 취소 혹은 무효를 통지하기 전에 최소한 () 이전에 서면으로 Facility Agent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동 통지 내용은 어떠한 이유로든 (보험료 미납도 포함) 재보험하에서의 모든 혹은 어떤 담보가 취소 혹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b) 보상한도 혹은 담보범위 감소, 자기부담금의 증가 혹은 원 증권 종료일 이전에의 계약 종료가 발생하기 전 최소() 이전에 Facility Agent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 (c) 재보험의 전체나 일부를 무효로 만들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고려하는 어떠한 행위, 누락 혹은 사건에 대해 알자마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7. 동 증권과 관련하여 혹은 증권하에서 Facility Agent에 대한 모든 통지 혹은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전달 혹은 팩스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지는 아래 시점에서 Facility Agent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전달되었을 경우, 전달된 시점
 - 2) 팩스로 전송되었을 경우, 전송된 날짜 시점, 단 (i) 전송직후, 송신자의 팩시밀리에 올바른 전송이 확인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록 (ii) 전송일은 전송시점에 수신자국가의 영업일 이어야 하며, 수신인의 시간대를 기준 오후 5시 이전에 수취된 것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인 국가에서 다음 영업일에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 증권과 관련하여 혹은 증권하에서 모든 통지를 위한 Facility Agent의 주소 및 팩시밀리 번호는 동 목적을 위하여 Facility Agent가 때때로 차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Facility Agent의 최초의 주소 및 팩시밀리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The Agent : ()
 Address : ()
 Fax No : ()
 Attention : ()

정치적 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원인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다음의 원인으로 의하거나, 원인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 a)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 또는 내란
- b) 합법기관에 의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몰수, 징발 또는 압류
- c) 민중봉기 또는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일부인 폭동, 민요, 군사 봉기, 반역, 모반, 반란, 군사력, 찬탈자의 폭력, 계엄령 또는 포위상태 또는 이러한 계엄령, 포위상태를 공포 유지도록 하는 사건
- d) 개인 또는 조직체에 관련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자에 의한 테러 행위

상기의 테러 행위란 정치적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민간인 또는 그 종 일부를 위협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나 소송에서 손해가 이 조건에서 보상되지 아니함을 보험회사가 주장할 경우 이 손해가 보상된다는 거증책임은 피보험자가 져야 합니다.

피보험자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할 보상액이 정부기관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또한 비례적으로 감소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공공기관의 지시로 인하여 분담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인수지분에 상응하는 분담금 또는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기술 조항

이 보험증권에서 재물 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한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지 않는다.

- A.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담보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보된다.

- B.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테러행위 부담보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된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한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 준비와 관련된 행위
 - a.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 b.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c.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a.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 b.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 (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금 가지급 조항

보험자는 논쟁 중인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잠정적으로 동의한 보험금의 50%까지 가지급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험금 수취인 조항

“차주”인 _____ 와 하기 협정에 명기된 “Secured Parties” 간에(년 월 일)에 체결된 “보험양도협정(보험양도계약서)”에 의거하여, “차주”는 “Secured Parties”에게 이 보험증권 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이익, 이자 및 클레임(모든 클레임, 환급보험료, 특혜지급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을 양도하였습니다.

1. (After a Default): “차주”가 Default 상태임을 “Security Agent”로부터 통지되면, 모든 클레임 및 복구비용은 아래에 명기된 “Security Agent”의 은행계좌(또는 서면으로 명시된 “Security Agent”의 다른 계좌)로 직접 지불됩니다.:

계좌번호: [미정]

수취인 : []:

2. “차주”가 Default 상태임이 “Security Agent”로부터 통지되지 아니하면, 이 증권 하에서 지불금액은 아래에 명기된 “차주”的 계좌로 직접 지불됩니다.

계좌번호: []

수취인 : []:

[“차주가” Default 상태임이 “Security Agent”로부터 통지되지 아니하면, 지불할 것이 결정된 제3자에게 지불되는 클레임은 직접 제3자에게 지불될 것입니다.”]

위에서:

“Default”란 여하한 “채무불이행”, 또는 이에 필적하는 상태의 발생 또는 발생 통지를 말합니다.

보험금 직접청구권 특별약관

재보험자는 이증권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재보험자의 인수지분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권리를 갖습니다. 보험금 지급시 기존의 보상청구에 대한 재보험자와 원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지급된 보험 만큼 모두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재보험자 각각의 책임은 재보험을 통해 인수한 각각의 지분에만 한정됩니다. 원보험자는 보험금지급에 대해 최대지분 재보험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공동조사 조항

여기에서 언급된 조건들은 다른 어떤 보상조건에 대해서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재보험 계약에서는

-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경우 원수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원수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급 보험금의 결정과 조정에 대해 재보험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 재보험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조정 및 결정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에서 다른 조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2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당해 배상책임 관련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붕괴사고가 있었어야 한다.
-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상태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온전한 상태이었어야 하며 필요한 사고예방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경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상태에 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건설공사의 성격이나 수행방법으로 보아 예견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
- 건물, 토지 또는 재물의 안정성(stability)을 저해하지 않거나 그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견상의 손해
- 보험기간 중에 손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제비용

보상한도액 :/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액 :

추가보험료 :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1. 아래의 이유로 파일 또는 옹벽의 전체 일부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는데 소용된 비용
 - a. 공사중 잘못된 곳에 설치하여, 정렬이 잘못되어서, 또는 움직일 수 없어서(jammed) 발생한 비용
 - b. 항타 또는 항발 작업 중에 발생한 분실, 유기, 또는 손상으로 인한 비용
 - c. 항타/항발 기계 또는 케이싱(casing)을 움직일 수 없어서 또는 손상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2. 파일이 끊어지거나 이음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수정하는데 소요된 비용
3. 물질의 형태에 관계없이 새어나가거나 침투해 들어온 상태를 수정하는데 소요된 비용
4. 벤토나이트등이 유실되어 이를 채워 넣거나 교체하는데 소요된 비용
5. 파일 또는 옹벽이 응력시험이나 재하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혹은 파일 또는 옹벽의 시공결과가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6. 파일 또는 옹벽의 외관이나 크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상기 조항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하지 아니 하며, 발생한 손해가 담보됨을 입증할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 복원조항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보험기간동안 유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발생한 손해액과 잔여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지진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홍수 및 범람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홍수 및 범람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폭풍, 바람으로 인한 수해(水害) 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퍼트풍력계급 8등급(평균 풍속 62 km/h 초과) 이상의 폭풍 또는 이로 인한 수해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지하매설 전선, 배관 또는 기타 설비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공사 개시전에 관련 기관에 피보험자가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단계를 마쳤을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매설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지도(지하에 매설된 기타 설비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상에 표시된 위치와 동일한 지하에 매설된 기타 설비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청구는 손해액의 20% 또는 아래에 기재된 금액중에서 더 큰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지도상에 표시된 위치와 다른 곳에 매설된 기타 설비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청구는 아래 b)에 기재된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단, 회사는 상기 시설물의 수리 비용만을 보상하며 모든 결과적 손해와 별금은 보상하지 않는다.

- 자기부담금: a) 손해금액의 20%
- b) 1사고당 최소

건설현장의 방화설비와 화재안전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또는 이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1.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방화 설비, 소방기구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가능한 소화전이 현재 공사의 최상층보다 1층 아래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임시 마개로 봉인 되어있어야 한다.
2. 호스릴(hose reels)과 소화기를 보관하는 선반은 최소 2주 간격으로 점검한다.
3. 현지 법에 따라 필요한 소방구역은 거푸집이 제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기한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덱트 또는 기타 개구간은 공사 개시이전까지 잠정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4. 폐기물은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공사중인 모든 층은 가연성 폐기물을 매작업일마다 제거해야 한다.
5. 아래와 같은 “가열성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공사업자는 “허가 작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그라인딩(grinding), 절단 또는 용접 작업
 - 발염장치(blow lamps and torches)의 사용
 - 가열된 염청(bitumen)의 사용 또는 기타 모든 가열 작업

“가열성 작업”은 소방교육을 받고 소화기를 갖춘 최소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열성 작업” 현장은 작업 완료후 1시간 후에 점검한다.

6. 건설공사 또는 조립공사시 보관되는 자재는 보관 단위당 가액은 아래의 명기된 가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각 보관 단위는 각기 50m의 공지 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가연성 물질 특별히 액체와 기체는 건설공사 또는 조립공사 중인 재산과 모든 “가열성 작업”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보관되어야 한다.
7. 현장 안전 책임자가 임명되어 하며 믿을 수 있는 화재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가까운 소방대와 직접적인 통신연결이 지속되어야 한다.

방화계획과 현장화재 계획이 실행되고 주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공사업자의 고용인들

- 은 소방교육을 받고 매주 소방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까운 소방대는 건설현장을 익히고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8. 건설현장은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관리를 해야 한다.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이 보험은 아래의 사항이 적용된다.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설계결함(특별약관으로 담보되는 경우), 재질결함 또는 기술적 졸렬로 인한 시설물, 시설물의 일부분, 같은 종류의 기계 또는 장비의 손실 또는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후에 아래의 비율로 보상한다:

- 100% 처음 2번째 사고
- 80% 3번째 사고
- 60% 4번째 사고
- 50% 5번째 사고
- 그 이상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현존하는 재산 또는 피보험자의 관리, 관할, 통제하에 있는 재산이 제1부문에서 담보되는 건설 또는 조립 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회사는 보험가입목적물이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온전한 상태였고 또한 필요한 사고예방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만 피보험자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에 회사는 보험목적물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붕괴사고가 있었어야 보상하며 보험목적물의 안정성(stability)을 저해하지 않거나 그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견상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회사는 다음은 보상하지 않는다.

- 건설공사의 성격이나 수행방법으로 보아 예견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손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제비용

자기부담금:

추가보험료:

대주단 보호조항

원보험

1. 보험자는 이 보험이 피보험 당사자에게 가장 우선하고 타 보험과 분담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자의 책임액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타 보험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담 혹은 손해 분담의 주장을 포기합니다.

2. 보험의 양도 / 보험금 수취인 조항

(a) 년 월 일자 체결된 보험양도협정에 따라, 차주는 보험증권상의 모든 권리, 자역 및 이익(모든 보험금 및 보험료의 환급을 포함한)을 Security Agent 와 Secured Creditors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b) 보험과 관련한 차주에게 지급될 모든 금원이 원화일 경우, intercreditor agent 로부터 직접 명기된 타명의 계좌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을 때까지, 다음의 ()의 원화계좌로 지급 됩니다.(계좌번호 :)

3. 대위권 포기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서 담보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에 대하여 대위권 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4. Secured Creditors 의 책임

보험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Secured Creditors 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인정 합니다.

5. 변경

Intercreditor Agent 와 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보험증권상의 어떠한 사항(보상한도의 감액 또는 보험조건, 자기부담금의 상향조정, 면책사항 및 예외사항을 포함)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6. 손해분담 포기

보험자는 Secured Creditors, Intercreditor Agent 또는 Security Agent 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여타의 다른 보험에 대한 손해분담권리를 포기합니다.

7. 취소, 축소 및 보험담보

보험자는 Intercreditor Agent 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a)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계약의 종료 행위 이전 최소 45일(또는 테러, 전쟁 등 동질의 위험의 경우 더 짧은 기간) 이전에 보험자는 Intercreditor Agent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i) 만약 어떤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로 보험증권을 취소 또는 전체 또는 일부의 보험담보를 취소 할 경우,
 - (ii) 보상한도의 감액 또는 담보변경, 자기부담금의 증액, 면책사항 또는 예외사항, 원계약 증권상의 만기일 이전의 계약종료
- (b) 보험료 납입의 불이행의 경우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c) 만약 보험자가 차주 또는 여타 피보험자 또는 Intercreditor 로부터 보험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만기일 최소45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갱신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즉시 Intercreditor Agent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d) 보험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로 만들거나, 집행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나 누락 또는 사건을 보험자가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8. 통보 / 커뮤니케이션

- (a) 이 조건 또는 증권상의 모든 통지 또는 기타 연락사항은 팩스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 (i) 만약 팩스로 송부될 경우, 전송후 즉시 송신자의 팩스기기에 전송이 올바로 되었음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b) Intercreditor Agent 의 주소 및 팩스번호는 Intercreditor Agent에 의해 대주의 보험 브로커에게 통보됩니다.
- (c) Intercreditor Agent 와Security Agent 의 최초 통보 주소 및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ecurity Agent 및 Intercreditor :

주소 :

팩스:

이메일:

수신처 :

코퍼댐 월류에 의한 손해 부담보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코퍼댐의 월류로 인하여 발생된 직간접적인 손실, 손해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보험기간동안 피보험목적물의 가액이나 실제공사금액이 예상프로젝트 혹은 예상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권상에 명기된 보험가입금액은 예상프로젝트 혹은 예상도급금액의 ()% 한도내에서 증액되어질 수 있으며, 증액금액은 보험자에게 통보되고 보험자가 동의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증액은 그 내용이 사고발생 이전에 증권에 기재되어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증가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심정(깊은 우물)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심정(깊은 우물)공사에 대하여는 아래에 명기한 사고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만을 보상한다.

- 지진, 화산활동, 쭈나미
- 폭풍, 태풍, 홍수, 범람, 산사태
- 폭발적인 분출(blow-out) 또는 크레이터
- 화재 및 폭발
- 지하수의 흐름 또는 분출(artesian waterflow)
- 기술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진흙(mud) 손실
- 기술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헬암(shales)의 히빙 (부풀어 오름) 또는 비정상적인 압력으로 발생한 심정 및 심정관(casing)의 붕괴

손해의 보상은 상기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이 처음으로 명백히 나타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비용(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당해 사고로 인하여 공사 중인 심정의 개발을 포기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손해액의 10% 또는 아래의 자기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면책조항

다음은 보상하지 않는다.

- 굴착장치 또는 장비(드릴링 공사업자가 특별보험 가입 가능)의 손실 또는 손해
- 어떠한 형태든 물속에서 꺼내는 작업에 소요된 비용
- 심정을 손질하거나 모든 자극공사(acidizing, fracturing 등)를 포함한 심정의 상태를 복구하기 위한 개수작업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 1사고당 최소

배수작업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최초에 예정된 양을 초과한 수량으로 인해 발생된 배수 작업비용.
2.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배출(discharge)을 위한 추가시설이나 추가 방수 장치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3. 배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 단, 적절한 예비설비가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4. 균열된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 누수방지 또는 굴착부분/지하층으로의 물 유입을 막기 위한 그라우팅(GROUTING)이나 기타 보수조치에 소요된 비용.

이 특별약관에서 예비 설비라 함은 현장에 항상 비치된 예비전력 공급설비와 펌프(pump)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들은

1. 정상적으로 작동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2.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정기적 운전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3. 기존설비의 고장이나 운전 정지시 예비설비로의 자동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경사면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하여 공사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적정하고 입증된 안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만 이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에서 적정하고 입증된 안전조치라 함은 보험기간동안 항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1. 강우, 홍수 또는 범람에 의한 경사면 표면 침식방지
2. 지반강화, 안정화 또는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유실된 벤토나이트/토사 대체 또는 공극 발생시 되메우기를 위한 조치
4. 지표개선 또는 안정화를 위하여 경사면의 단면/형태의 유지(예를 들면 구멍 되메우기, 경사면 단면 안정화 등)
5. 건설공사 현장내의 수로 등에 유입된 장애물(모래, 바위, 나무 등)의 즉시 제거.

보험계약자는 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의 “파일 및 굴착공사 관련 지침”에 따라야 한다.

회사는 다음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 공사의 성격이나 수행상 예견되어진 손실 또는 손해
- 불완전한 지반보강으로 인한 지반 침하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기간 중 필요하게 된 손해방지 또는 경감조치 비용

화재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 번개, 폭발, 화재 진화 또는 이로 인한 철거, 공해 또는 오염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 분담 조항

- 보험자의 책임한도 : 보험가입금액 또는 제3자 배상책임보상한도액의 (%)
 - 피보험자 부담비율 조항 : (%)
 -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됨
(총발생사고금액 - 자기부담금) × (100% - 피보험자 부담비율)
- 여타한 경우라도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상한도액 특별약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수취인 조항

“차주”인 ()와 허가 협정에 명기된 “Secured Parties” 간에 ()에 체결된

“보험양도협정(보험양도계약서)”에 의거하여, “차주”는 “Secured Parties”에게 이 보험증권 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이익, 이자 및 클레임(모든 클레임, 환급보험료, 특혜지급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을 양도하였습니다.

1. (After a Default): “차주”가 Default 상태임을 “Security Agent”로부터 통지되면, 모든 클레임 및 복구비용은 아래에 명기된 “Security Agent”的 은행계좌(또는 서면으로 명시된 “Security Agent”的 다른 계좌)로 직접 지불됩니다.

계좌번호 : []
수취인 : []

2. “차주”가 Default 상태임이 “Security Agent”로부터 통지되지 아니하면, 이 증권 하에서 지불금액은 아래에 명기된 “차주”的 계좌로 직접 지불됩니다.

계좌번호 : []
수취인 : []

[“차주”가 Default 상태임이 “Security Agent”로부터 통지되지 아니하면, 지불할 것이 결정된 제3자에게 지불되는 클레임은 직접 제3자에게 지불될 것입니다.]

위에서:

“Default”란 여하한 “채무불이행”, 또는 이에 필적하는 상태의 발생 또는 발생 통지를 말합니다.

임시복구 및 손해경감 담보조항

회사는 이 증권상에 담보하는 위험에 의해 발생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기간 동안 담보 목적물에 손해를 최소화 또는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합당한 비용을 증권상 설정된 보상한도액 ()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는 위와 같은 작업을 시작한 후 24시간내에 보험자/재보험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자/재보험자는 이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실제 복구비용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만약 발생비용이 ()을 넘을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비용담보(제3자 배상책임 보상한도액에 한함)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스케줄에 설정된 제3자 배상책임보상한도액 내에서 제3자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경사면 조항

경사면 또는 지면에 보험사고 발생시, 단위 면적당 손해액은 그 구역의 단위 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하수 조항

지하수 차수벽의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해 지하수위의 변동으로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야기된 손실이나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지하수 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부분(예정이익상실담보) 확장 담보

1) 특별면책사항의 1.1 조항 삭제(적용 / 적용하지 않음)

단, 아래의 약관에 한함

-
-

2) 특별면책사항의 1.2 조항 삭제(적용 / 적용하지 않음)

해상위험 특별면책조항

이 특별약관은 이 증권의 제1부문에 포함되며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다음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 1) 모든 종류의 해상배상책임
- 2) 통상적인해수, 해파로 인한 충진물 또는 매립토양(또는 골재)의 유실
- 3) 파일공사중 파일(말뚝)에 발생한 각종 손실과 그 파일을 제거,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4) 케이슨, 바지선 또는 기타 물에 띄워서 사용하는 장비에 발생한 손실과 이러한 장비나 재료

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손해

- 5) 기상 악화로 해상장비를 동원 또는 철수하거나 기타 추가로 발생된 경비
 - 6) 통상적인해수, 해파로 인한 준설 및 재준설 비용
 - 7) 침하, 침몰로 인한 정박소, 부두, 방파제 혹은 그와 유사한 시설물에 발생한 손실 및 손해
 - 8) 자연적인조류나 해류, 파도, 토양침식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되는 손해 및 배상책임
 - 9) 견인줄, 닻, 체인, 부표, 오탁방지막 등에 발생한 손해 및 손실
- [통상적인 해수 활동이란 공사현장 부근 공해상에서의 풍속이 Beauport Scale8 이하에 해당하는 바다상태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함]

해상위험Warranty 조항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긴급한 폭풍의 12시간 예고를 위해 기상청과의 지속적인 접촉
- 2) 공공 항로와 작업장간의 거리 : 최소 ()m

해상위험Warranty 조항-2

이 특별약관은 이 증권의 제1부문에 포함되며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다음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 1) 배상책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상운송 위험
- 2) 통상적인유속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3) 일시적인정박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 4) 정박시설고장에 의한 직·간접 손해 면책
- 5) 동 보험의 목적물인 전구류 및 전기장치에 발생한 수해(水害)
- 6) 파일공사중 파일(말뚝)에 발생한 각종 손실과 그 파일을 제거,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7) 기상악화로 수상장비를 동원 도는 철수하거나 기타 추가로 발생된 경비
- 8) 침수된 목적물에 대한 구조 비용
- 9) 준설 및 재준설 비용
- 10) 견인줄, 닻, 체인, 부표, 오탁방지막 등에 발생한 손해 및 손실

우선 및 비분담조항

본 증권상의 보험조건과 관련하여, 본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우선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며, 만약 피보험자가 가입한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는 다른 증권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타증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선 및 비분담조항

대주단 및 담보권자에게는 고지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됨을 동의합니다.

전자기기 손해 담보

우연한 악의적인 데이터의 삭제를 포함한 전자기기 손해 담보. 단, 외적정보매체의 손실 및 손해의 결과만은 담보, 컴퓨터 바이러스 면책.

(보상한도액 :)

특별한급금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험료의 (%)는, 조립공사가 완료되고 미지급 보험금 지급이 끝난 후, 손해율이 (%)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보험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기간동안의 추정된 공사가액에 기초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공사완료시 공사의 최종가를 밝혀야 하며, 우리 회사는 그에 따라 최종보험료를 정산할 권리를 가집니다.

수중(반체절 포함) 준설 및 재준설 비용 담보 조항

- 보상한도액 : 총보상한도액 : () / ()한사고당
- 동 담보와 관련, 가장 가까운 상류댐()의 운영지침을 따른 방류인 경우, 보험기간 중 최근 10년 이래 최대 수위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됨
(최고수위 : m / 수위 기준)

- 최고수위는 수위측정과 조정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공식 자료를 의미함
 - 72시간담보조항

농작물, 산림 및 양식손해 담보 조항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제1부문 하에 보험가입된 목적물의 건설 및 조립과 직접 관련하여 보험기간 중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발생한 농작물, 산림 및 양식물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한도액 :
 - 자기부담금 :

중고품기계 담보

중고품기계의 경우 수리비는 실제 보험가입금액의 수리된 기계의 신재조달가액에 대한 비율로 비례적으로 감액되어 보상됨

중고품기계의 시운전은 독립된 전문가에 의해 발행된 무결점 및 목적에 적합한 증명서를 조건으로 보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음.

상, 하차작업을 포함한 내륙 및 내륙수상운송담보

본 담보는 공사현장 인근에 해상운송을 포함하며, 케이슨 제작장에서 방파제 구간까지의 해상 운송 및 케이슨을 포함함

(보상한도액 : 운송당 / 총보상한도액 :)

전쟁 및 민중봉기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과 특별약관의 상충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상에는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전쟁으로 분류여부와 상관없이), 내란, 반란, 혁명, 폭동, 봉기 또는 국가권력의 명령에 의한 목적물에 직간접적으로 끼친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 부문하에서의 보상은 아래의 피보험 목적물의 공급업자 혹은 제조업자의 구내의 손실, 파괴

혹은 손상의 결과로 프로젝트의 상업운영일의 개시 지연, 중단 혹은 방해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을 포함하여 확장 담보합니다.

기명 공급업자:

구매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 부문하에서의 보상은 아래의 피보험 목적물의 구매자의 구내의 손실, 파괴 혹은 손상의 결과로 프로젝트의 상업운영일의 개시 지연, 중단 혹은 방해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을 포함하여 확장 담보합니다.

기명 구매자:

공공시설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 부문하에서의 보상은 공공시설의 공급 중단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상업운영일의 개시 지연, 중단 혹은 방해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을 포함하여 확장 담보합니다.

공공시설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기간을 초과한 중단 기간동안 발생한 총이익의 상실에 대해서 보상기간을 한도로 하여 보상해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의 원인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공공시설의 공급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공공시설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재물 손실에 기인하지 않은 할당량
- 2) 기후, 기상의 상태로 발생한 물부족
- 3) 피보험자의 플랜트의 교란, 손해 또는 손실. 손실된 목적물이 동 증권상에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공시설의 공급부족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 4) 공공시설의 재개 이후에도 발생한 피보험자의 플랜트의 생산의 차질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전력, 수도, 가스 또는 스팀을 얘기하며, 이는 항시공급이 가능하고 충분한 여유분과 대체가능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공시설의 공급 중단이라 함은 동 증권상에 명시된 플랜트에 우연하고 급격한 재물손실에 기인한 공급의 중단 또는 감소를 의미합니다.

부분운영 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 상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아래 명기된 담보목적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a) 아래 명기된 담보목적물은 아래의 명기된 개시일로부터 공사의 완료 시점까지 부분 운영 (시운전이 있을 경우, 시운전을 완전히 마친 이후) 중에 있습니다.
- (b) 그러한 부분 운영은 본 증권하에서 담보 됩니다. 또한
- (c)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담보 기간은 공사의 완료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 (d) 부분운영 기간동안 제1부문(재물손해담보)에서 담보하는 손해에 대해서 폭풍, 허리케인, 싸이클론, 흥수, 수침피해, 침하, 산사태, 눈산태, 지진, 화산활동 및 쓰나미 등을 제외한 여타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에서 부분 운영이라 함은 담보목적물의 일부분이 운영에 들어는 갔으나, 발주자에게 인도되지 않아, 그 관리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부분운영되는 담보목적물 :
- 부분운영 기간의 개시일 :
- 자기부담금(한사고당) :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 A.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또는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B.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C. 회사는 상기(A)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상기A, B, C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보험기간 자동연장 특별약관

회사는 스케줄상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자동으로 ()개월 연장한다.

건설 및 조립용기계 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이 증권의 제1부문 담보는 기계 목록표에 명시된 건설 및 조립장비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 일반 도로용으로 인가된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에 발생한 손해

건설 및 조립용 장비의 보험가입금액은 개개의 보험가입 품목에 대하여 동종, 동능력의 신품 재조달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기부담액 : 보상액의 20%

최저 ()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

특별비용 담보 특별약관-2

동 증권상에 담보되는 사고로 인하여 목적물에 피해가 입었을 경우, 아래의 비용을 추가하여 보상해드립니다.

- 1) 통상적인 운송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품 또는 부품들을 급행화물 또는 특별배송으로 운송하는 비용
- 2) 평상 급여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구에 필요하여 발생한 휴무, 휴일, 야근수당

상기 조건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동안 한사고당 () 을 최대 한도로 손해액의 (%)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전문가 비용 담보 특별약관

동 증권상의 제 1부문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담보목적물에 발생한 사고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건축사, 조사자, 법률자문,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기타 비용(단 손해의

평가나 준비를 위해 발생한 비용을 제외)을 사고발생 시점에서의 다양한 공인된 기관들에서의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사고당최대 ()을 한도로 사고금액의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잔존물제거비용 담보 특별약관

동 증권에서는 보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을 확장 담보하여 드립니다.

외부유입으로 발생한 잔존물을 포함한 손상된 담보목적물의 잔존물제거, 해체 및 파손비용 및 버팀목 또는 지지대 비용

이 특약에 의해 보상하는 비용은 한사고당최대 을 한도로 손해액의 (%)입니다.

보험가입금액 복원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제 1부문에 적용된 메모 1 보험가입금액에 아래의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증권의 제1부문의 가입금액은 동 부문에서 손해 또는 손실을 보상함에 따라 지불된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그러나 사고발생시점으로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동 가입금액은 자동적으로 복원되며, 일할계산된 추가보험료가 피보험자에게 부가됨을 상호 동의합니다.”

공공기관 특별약관-2

동 보험에서 담보하는 제 1부문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법규에 의한 빌딩 또는 여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손상된 목적물의 복구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확장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1. 이 확장담보에 의한 복구비용 중 아래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a) 아래와 같이 이미 공표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규정 준수에 따라 발생한 비용
 - 동 증권상에서 담보하지 않는 손해 또는 손실
 - 손해 또는 손실 발생 전에 피보험자에게 고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파손되지 않은 목적물 또는 손상된 목적물이 기초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일 경우
2. 복구작업은 합리적인 대응조치를 전제로 개시 및 수행되어야 하며, 책임이 증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구역에서 수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3. 복구비용은 증권상 명기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4. 증권상의 조건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의 일부인 것으로 적용됩니다.

보상한도액 : 한사고당 / 총보상한도액

도면 및 시방서 담보 특별약관

제 1부문하에 동 증권에서는 동 증권상에서의 담보되는 사유로 인하여 문서, 도면 또는 시방서가 손실되거나 작업의 완료를 위하여 재작성 되어야 할 때, 담보 목적물의 문서, 도면 또는 시방서의 재작성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액 : 한사고당

손실 방어조치 담보 특별약관

만약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 또는 잠재적인 손해 또는 손실의 확대를 방지코자 합리적인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복테스트 특별약관

만약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어떠한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반복된 테스트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원보험 조항 특별약관

보통약관상의 분담보항을 삭제하며, 이로 인하여 동 증권상은 시공사 이외의 다른 관련자에 의해 가입된 다른 증권이 있다 하더라도 100%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시공사가 보험사고를 명기된 보험증권에만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관계자에 대한 보험자의 복구 권리에 타협하지 않고, 대위권을 허가해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고 통지 특별약관

증권상의 일반사항 5번 보험금 청구 기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회사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사고통지를 받지 아니하면 손실,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 14일이 30일로 변경됩니다.

보험사고 조사자 특별약관

동 증권상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손해조사자로 임명됩니다.

임시 복구비용 담보 특별약관

동 증권에 지급되는 보상은 담보 목적물이 계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쇄적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임시복구가 시행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상하여드립니다. 단, 동 금액은 한사고당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 준비 비용 특별약관

동 증권은 보험사고 발생시 독립적이고 입증된 전문가(예 : 회계사, 원가계산담당자, 감사자 또는 손해사정사)가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필요하여 사용될 경우, 이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비용은 동 증권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고와 관련된 준비 비용에 한하며, 이러한 사고는 동 증권상에 담보가능한 보험사고일 경우에 한사고당 ()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관할법원 특별약관

본 증권의 조건과 상관없이 보상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a) () 관할법원에 의해 손해에 대한 보상판결
- b) ()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원청구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만회될 수 있는 소송
비용

석면 부담보 특별약관

어떠한 형태 또는 양이든 석면의 결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동 증권상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의 가중에 의해 어떠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징벌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전문인 부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 또는 그들의 컨설턴트 또는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의 전문적인 지시 또는 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핵위험 부담보 조항

동 조항은 아래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어떠한 형태, 장치, 상태 또는 과정상에 포함된 핵, 원자,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직 간접적인 손해
- 원자력 폴 또는 다른 형태의 원자력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손해

동 면책사항은 (담보여부를 떠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에 적용됩니다.

상기사항에도 불구하고 핵, 원자, 방사성 물질 또는 프로세스를 통하여나 사용에 의한 전기발생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방사능 동위원소 사용된 민간 과학, 의학, 농업 또는 공업용의 통상적인 용도로 직접적으로 기인한 어떠한 손실, 손해, 비용에 동 면책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사항은 방사능 오염에 의한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면책사항은 손해, 손실 또는 비용에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른 원인에도 불구하고, 손해, 손실 또는 비용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담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전쟁 및 내전 면책 조항

동 증권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 증권은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전쟁유사행위 또는 내란, 폭동, 소요, 군사봉기, 반란, 군사력, 찬탈행위 또는 압수 또는 국유화 또는 징발, 정부나 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목적물의 파괴행위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테러행위 면책 배서

이 보험 및 배서의 반대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손해의 원인이나 사건이 동시에 손실을 발생시켰는지 또는 손실에 뒤이어 발생했는지를 불문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테러행위에 의하거나 기인하거나 관련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배서의 목적에서, 테러리즘 행위란 일인 또는 다수인의 무리가 단독으로 또는 단체나 정부를 위하거나 관련하여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목적 등 유사한 목적에서 무력,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이것들로 국한하지는 아니합니다)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부나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를 공포에 빠뜨릴 목적으로 행한 폭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배서는 테러행위와 관련한 통제, 방지, 억제 등의 행동에 의하거나 기인, 관련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자가 이 면책조항의 사유로 이 보험에서 손실, 손해, 비용의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이 배서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이외의 부분은 효력을 지속합니다.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2

보험개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임시 보험료로, 동 증권은 보험만기 시점에 계약자가 제시하는 실제공사금액을 기초로 하여 정산되며, 이에 따라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정치적 위험 면책 배서

이 보험 및 배서의 반대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손해의 원인이나 사건이 동시에 손실을 발생시켰는지 또는 손실에 뒤이어 발생했는지를 불문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다음의 원인에 의하거나 기인하거나 관련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불문함), 내란, 모반, 혁명, 반란, 민중봉기에 준하거나 일부로 간주되는 소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2. 테러리즘 행위.

이 배서의 목적에서, 테러리즘 행위란 일인 또는 다수인의 무리가 단독으로 또는 단체나 정부를 위하여나 관련하여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목적 등 유사한 목적에서 무력,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이것들로 국한하지는 아니합니다)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부나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를 공포에 빠뜨릴 목적으로 행한 폭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배서는 위 1 및 2조와 관련한 통제, 방지, 억제 등의 행동에 의하거나 기인, 관련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자가 이 면책조항의 사유로 이 보험에서 손실, 손해, 비용의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이 배서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이외의 부분은 효력을 지속합니다.

안전조치 추가약관

동 보험은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기본적 인기술적 공법을 적용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모든 공사가 지역표준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며, 이러한 작업을 준수하고 공사자료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재보관 추가약관

모든 자재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고 악의적인 타인이나 날씨에 의해 피해가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협회획장방사능오염/화학적, 생물학적, 생화학 및 전자기적 무기에 의한 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 약관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일치하지 않는 이 보험의 다른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1. 어떠한 경우에도 동 증권은 아래의 원인으로 발생한 직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1 핵연료 또는 핵폐기물 또는 핵연료의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이온화 방사선 또는 방사능 오염
 - 1.2 핵 설비, 원자로, 핵 조립품, 핵 성분의 방사선물질, 유독성물질, 폭발물, 위험물, 오염 물질
 - 1.3 핵분열이나 핵융합 또는 유사 핵반응을 수용한 무기나 장치
 - 1.4 방사능 물질이 지닌 방사선, 유독성, 폭발, 위험, 오염의 특성. 이 면책조항은 핵연료

이외의 방사선 동위원소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러한 동위원소는 상업, 농업, 의료, 과학, 기타 평화적인 목적에서준비, 운반, 보관, 사용됩니다

1.5 어떠한 화학, 생물학, 생화학, 전자기 무기

전산데이터 특별약관

1. Electronic Data Exclusion (전산 데이터 제외)

증권안의 어떠한 반대의 조항과 그 배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 a) 본 증권은 어떠한 원인에 의한 손해, 파괴, 변형, 삭제를 보상하지 않으며, 어떤 원인이나 사선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결과든지를 개의치 않고 사용상의 손해, 기능상의 저하 그리고 그러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자DATA는 커뮤니케이션과 해석, 조사를 위해 전자 또는 전자기계적 자료조사에 의해, 그리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조사와 조작을 위한 기구를 포함한 전기적으로 컨트롤되는 장치에 의해 유용한 형식으로 전환된 사실, 정보, 개념을 뜻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번식하는 암호, 악의적으로 유포된 믿을 수 없는 지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해롭고 타락한 지시나 암호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트로이목마’, ‘벌레’, ‘TIME OR LOGIC BOMB’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b) 그러나 위의 a)단락에서 서술된 어떤 것에 의하여 명기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모든 범주와 조건과 예외에 영향을 받는 이 증권도 직접적인 명기된 위험에 의한 물리적 손해를 담보할 것이다.

명기위험

화재, 번개

2. 증권안의 어떠한 반대의 조항과 그 배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행합니다.

증권상에 담보되는 전자DATA PROCESSING 기관이 증권상에 담보된 물리적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액 가치평가기초는 (DATA가) 삭제된 기관에 이전의 원본이나 백업으로부터 전자DATA를 카피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에는 그러한 전자DATA의 조사와 공사 뿐만 아니라 재생산, 수집, 조합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전자DATA PROCESSING 기관이 수리, 대체, 복구되지 않으면 가치평가기초는 내용이 삭제된(날아간) 기관의 비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증권은 피보험자나 다른 어떤 측에게, 설령 그 DATA가 다시 만들어질 수 없고, 수집되고 조합될 수 없다 하여도 그리고 그 전자 DATA의 가치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누출 탐지 비용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동 증권하에서 아래의 사항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정수압시험에 따른 누수조사 비용(특별장비의 대여, 운영, 운송비용을 포함)
- 2) 누출의 조사 및 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손상되지 않은 도량에 대한 토공사
예) 토공사, 파이프 라인 드러냄, 되메우기

다음사항을 전제로 함

- 누출이 담보가능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적이 있거나 현장에서의 시공잘못에 기인한 경우
- 이음새 용접의 100% 가 X-레이 투과되고 이로 인하여 발견된 결함이 적절히 조치된 경우

보상한도액 : 한사고당 / 테스트 구간당 / 보험기간동안

이음새 용접의 수리 잘못에 의한 사항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건설/조립 장비 담보 특별약관-2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추가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제 1부문하에 제출된 리스트상에 명기된 건설/조립 장비에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 정지, 파손 또는 교란, 냉매 또는 다른 유체의 동결, 결함있는 윤활작용 또는 오일/냉매 부족으로 발생한 건설플랜트, 장비 및 건설기계류의 손실 또는 손해. 그러나 이러한 고장 또는 교란의 결과로 사고가 외적 손실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적 손해는 보상한다
- 일반도로 전용허가를 가진 차량, 수상수송선박, 항공기의 손실 및 손해
건설플랜트, 장비 및 기계의 재조달가액 재조달가액이란 동종 동능력의 신품으로 대체하는 재조달 비용을 뜻함

전기생성장비에 대한 적정공기공급유지 특별약관

동 보험증권은 가스터빈에 공급된 공기가 적합한 수준이 되지 않거나 제작자 또는 공기 유입구의 공급업자가 제시한 설명서에 쓰여진 대로 조작되지 않을 경우, 정상가동 상태 또는 건설, 조립, 해체, 개조 또는 기계적 시운전, 예정에 없던 가동중단 및 가스터빈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한 시운전의 착수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에 발생한 손실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기유입구는 적절히 검증된 공학적 방법으로 모니터 되어야 하며, 공기 주입구는 항상 제작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설명서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기 흡입 시스템은 제작자 또는 공급업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용되는 공기필터는 제작자 또는 공급업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흡입시스템은 플랜트가 위치하는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히 디자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면책도 우연하고 급격한 담보 가능한 원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시설물 특별약관

동 증권은 가건물(숙소 및 그들의 내용물 제외) 및 기타 피보험자의 장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물품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의 기초는 이러한 설비들의 가치가 전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음을 보험개시 당시에 통보하고 스케줄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물품들의 사고 직전상태로의 상태로 수리 또는 수선하는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모든 가시설물들은 화재 및 안전사고에 항상 적절한 안전조치 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기생성장비에 대한 적정연료상태유지 특별약관

동 보험증권은 기계장치에 공급된 원료(가스, 액체, 고체)가 적합한 수준이 되지 않거나 제작자 또는 연료 공급업자가 제시한 설명서에 쓰여진 대로 조작되지 않을 경우, 정상가동 상태 또는 건설, 조립, 해체, 개조 또는 기계적 시운전, 예정에 없던 가동중단 및 가스터빈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한 시운전의 착수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에 발생한 손실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연료 품질규격이 적절히 검증된 공학적 방법으로 모니터 되어야 하며, 연료공급이 항상 제작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설명서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분운영담보 특별약관-2

동 보험은 전체 프로젝트의 최종 시운전의 완료시 까지 담보 목적물 중 시운전이 완료된 일부 목적물 또는 사용에 들어간 목적물에 발생한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확장하여 담보하여 드립니다.

단, 동 담보는 시운전이 완료된 담보목적물에 대한 재보험사의 사전조사 및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발주자의 피고용인과 대표자를 위한 특별약관

이 증권하의 Section II, 제 3자 배상책임 담보는 발주자의 피고용인, 대표자 그리고 작업조사와 감독을 목적으로 건설현장에 우연히 방문한 컨설팅기술자를 제3자로 간주하여 확장 적용 됩니다.

조 건

- (a) 회사의 총보상한도액은 Section II, 제3자 배상책임 스케줄에 명기된 보상한도액을 초과 하지 않습니다.
- (b) 피보험자는 스케줄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책임집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특별약관-2

본 증권에서는 보험자의 동의를 전제로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증권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파손 및 손상된 보험목적물 일부문의 잔존물을 분쇄 및 제거하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별표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확장 담보합니다.
기타 다른 보험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증액조항(보험가입금액 자동 증액)

동 보험의 제1부문하의 가입금액은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총 계약 금액입니다. 동 보험에서 담보되는 공사목적물의 계약금액이 보험기간내에 증액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자동적으로 증액 됩니다. 그러나 증액의 한도는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금액의()%를 초과하지 않으며, 동 특약은 피보험자의 추가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사고 협조조항

회사는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동 보험증권상 아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a) 보험회사는 담보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또는 그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된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재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b) 보험회사는 회사에 보험사고 또는 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재보험회사가 인지하고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c) 재보험회사는 통지된 보험사고와 관련한 모든 사고조사, 손해사정 및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한 손해사정인 또는 대리인을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d)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에 통보된 사고와 관련하여 재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조사인과 조사 및 사정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특별약관(연간포괄계약용) :

회사는 동 증권의 손해율이 연간포괄증권의 만기일에 손해율이 30%이하일 경우, 다음의 산정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환급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후 연간포괄증권에 포함된 모든 증권이 만기될 때까지 매년 동일한 날 정산을 계속 실시합니다.

손해율	환급보험료
30% 까지	정산시점에서 동 증권의 누적 포괄 경과보험료의 10% - 기지급된 환급보험료

$$* \text{ 손해율} = (A + B) / C$$

A = 누적 지급보험금(손해조사비 포함)

B = 지급준비금(정산일 기준 / 손해조사비 포함)

C = 누적 포괄 경과보험료

1) 연간포괄계약 해당 계약 : 인수연도 기준

2) 누적 포괄 경과보험료 =

$$[\text{납입보험료} \times \text{경과일수}^* / \text{보험기간}^{**}] - \text{기지급된 환급보험료}$$

* : 경과일수 = 정산일 - 개시일

** : 보험기간 =만기일 - 개시일

- 3) 손해율이 30% 이상일 경우, 기지급된 환급보험료 전액은 보험자에게 환수됩니다.
- 4) 환급보험료는 보험료 정산 이후, 매년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 5) 동 특약은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 협의된 보험인수 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별첨 3

건설공사손해공제 약관

독일식 조립공사보험약관(번역문)

본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참고로 제작 된 것이며, 사고시 모든 보상은 해당 영문 담보 명세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 차

독일식 조립공사보험약관(번역문)

일반면책사항	189
담보기간	189
일반조건	190
제1부문 - 물적 손해	191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192
제1부문의 적용조건	192
제2부문 - 제3자 배상책임	193
제2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194
제2부문에 대한 특수조건	194
제3부문 - 발주자 예정 이익상실 담보	194
제3부문에 대한 특별 면책사항	196
제3부문에 대한 적용조건	197
제3부문에 대한 특별조항	197

독일식 조립공사보험약관 특별약관(번역문)

1) 파업, 폭동 및 민중봉기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199
2)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200
3) 유지담보 특별약관	201
4)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201
5)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 계획에 대한 추가약관	201
6)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201
7)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202
8)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	202
9) 보증기간 담보 특별약관	202
10) 건설 및 조립용 기계담보 특별약관	203
11) 중고품기계 부담보 추가약관	203
12)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i)	203
13)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ii) - 촉매담보	204
14) 방화설비에 대한 추가약관	204
15) 건설현장외 보관창고에 관한 특별약관	204
16) 공동보험 특별약관	205
17)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205
18) 환율 특별약관	206
19)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206
20)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06
21) 내륙운송담보 특별약관	206
22) 보험료 환급 특별약관	207

23) 72 시간 특별약관	207
24) 시험비행담보 특별약관	207
25) 신체상해배상책임 특별약관	207
26)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208
27) Wet Risk와 관련한 면책조항	208
28) Wet Risk와 관련한 보증	208
29) 통상적인 바다/강의 작용	208
30) 지진지역의 구조물담보 특별약관	209
31) 지진 부담보 특별약관	209
32) 흉수 및 범람 부담보 특별약관	209
33)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209
34) 폭풍, 바람으로 인한 수해(水害) 부담보 특별약관	210
35) 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210
36) 캠프 및 보관창고에 대한 추가약관	211
37) 지하매설 전선 및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211
38) 농작물, 산림 및 양식 등 부담보 추가약관	211
39) 핵연료 구성요소 특별약관	211
40) 정화 비용 특별약관	212
41) 원자로 압력관 및 내부장치 특별약관	213
42) 침하 부담보 추가약관	213
43) 배관, 도관 및 케이블설치중 개방 도랑에 관한 추가약관	214
44) 관로 설치시 누출조사 비용 특별약관	214
45) 강, 철도제방, 도로 등의 하부관로를 뚫는 작업에 관한 특별약관	214
46) 강우, 흉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215
47) 수평방향 드릴링 부담보 추가약관	215
48) 라이닝, 플라스틱 장비 및 측매에 대한 특별약관 (배연정화플랜트용)	215
49) 고무라이닝, 플라스틱 코팅, 플라스틱 장비를 위한 방화 권고 사항 추가약관	216
50) 정보통신조항	218
51) 정치 위험 면책조항	219
52)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219
53) 보험기간 자동연장 특별약관	220
54) 보험 목적의 보관에 관한 추가약관	220
55) 내륙운송 및 보관 중 담보 특별약관	220
56) 자연재해 부담보 추가약관	220
57)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특별약관	221
58)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221
59) 잔존물제거비용담보 특별약관	221
60)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221
61) 공공기관 특별약관	221
62) 50:50 해상/건설 손해 분담 특별약관	222
63) 전문가 및 조사자비용 담보 특별약관	222
64) 대주단보호조항	222

65) 보험금 가지급 조항	224
67) 보험금 수취인 조항	225
68) 도면과 서류 조항	225
69) 급격하고 우연한 누출, 오염, 오탁 추가약관	226
70) 우선적용 조항	226
71)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226
72) 중고품 시운전담보 특별약관	226
73)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227

독일식 조립공사보험약관(번역문)

스케줄상의 기명 피보험자는 질문서와 함께 기타 이 계약을 위해 작성한 문서를 통해 보험회사 (이하회사라 한다)에 청약을 하며 당해 사항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 증권상 피보험자는 스케줄에 표시된 보험료를 회사에 지불하고 이 증권과 이에 첨부된 특별 약관 또는 추가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제 보험조건, 면책사항 및 각 조항에 따라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한도 내에서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일반면책사항

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구하고 다음의 원인으로 발생되거나 악화된 손실, 손해 또는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a)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함), 내란, 모반, 혁명, 반란, 폭동, 소요, 파업, 직장폐쇄, 민중봉기,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떤 정치 조직을 위하여거나 관련된 단체 또는 악의적인 사람들 또는 사람들, 음모, 몰수, 징발, 법에(de jure) 의하거나 사실에(de facto) 의하거나 공권력 의한 압류, 파괴 또는 손해
- b) 핵반응, 핵 방사선 또는 방사능오염
- c)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고의적 과실
- d) 전부 또는 일부의 공사 중단

어떤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 회사가 상기 a)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 파괴, 손해 또는 배상책임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파괴, 손해 또는 배상책임이 이 보험에서 담보된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담보기간

회사의 보상책임기간을 스케줄에 기재된 여하한 보험개시일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장구내에 서의 작업의 개시 또는 스케줄에 기재한 보험의 목적물이 하역된 직후부터 개시되고 담보된 피보험목적물의 건설공사가 인도되거나 최초의 시운전 또는 가동시험이 완료될 때(그중 빠른 시점)까지 계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운전이 시작된 날로부터(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4주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플랜트의 일부 또는 1개나 여러 개의 기계가 시험되어 가동되거나 인도된 때에는 그 특정품목에 대한 보상이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종료되며

기타 그 외의 품목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속된다. 중고품에 대한 보험기간은 시운전개시와 동시에 종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은 스케줄에 기재된 만기일에 종료된다. 보험기간의 연장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전제로 한다.

일반조건

1. 피보험자가 이행 및 수행할 것에 관련되는 이 증권의 제 조건을 성실히 준수 및 이행함과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질의서 및 청약서의 회답과 제진술서를 거짓없이 작성하는 것은 회사의 보상책임의 전제조건이 된다.
2. 스케줄과 각 부문은 이 증권에 포함되어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이 증권”이라는 표현은 스케줄과 각 부문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증권 또는 스케줄의 일부분 또는 각 부문의 일부에 있는 특정의미로써 사용되는 단어, 또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더라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한다.
3.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하여 회사의 합리적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규 정상의 필수조건과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4. a) 회사의 대리인은 언제라도 보험목적에 대한 안전조사 및 위험진단을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위험평가에 필요한 모든 명세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b) 피보험자는 위험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서면 또는 전보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예방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에 대하여 담보범위와 보험료도 조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 보험의 지속성을 서면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피보험자에 의한 중요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이 증권하에 보험금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는
 - a) 자체 없이 손실 또는 손해의 속성과 정도를 밝힌 서면뿐만 아니라 유선 또는 전보로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b) 손실 또는 손해를 최대한 경감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손해부분을 보존하고 회사, 대리인 또는 손해사정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d)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e) 절도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에는 경찰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사고통지를 받지 아니하면 손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조건하에서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를 수행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회사의 대리인은 수리나 변경 전에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만약 회사의 대리인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내에 사고조사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수리 또는 교체를 할 권리가 있다.

이 증권하에서 피해가 지속되는 목적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목적물이 자체 없이 적절하게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료된다.

6. 피보험자는 손해보상의 전후를 막론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가 이 증권에 의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취득 또는 대위하는 제3자(이 증권하의 피보험자는 제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또는 배상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와 사실을 이행하거나 이를 위하여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사실을 이행하고 협력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7. 책임에 관한 해석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 증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서면으로 선정된 1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만약 양당사자가 단일중재인의 선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요청한 후 1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가 지정하는 2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며 중재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1명의 심판인이 중재인의 서면에 의하여 임명된다. 심판인은 중재인과 함께 참석하여 그 심의를 주재한다. 배상금의 판정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권취득의 전제조건이 된다.
8. 만약 보험금의 청구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도 부당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거나 또는 이 증권 하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의 청구가 기각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인이나 심판인의 판정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증권 하의 모든 이익이 상실된다.
9. 이 증권하에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과 같은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타보험에 있을 경우 이러한 손실, 손해 및 책임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그 각각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0.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

제1부문 - 물적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이 증권에서 특별히 보상되지 않는 원인을 제외한 모든 예기치 못한 급격한 사고로 발생한 물적 손실 또는 손해를 입어 이를 수리 또는 대체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스케줄에 기재된 개별품목에

대한 담보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지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스케줄에 명기된 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에 규정한 대로 현금지불, 교체 또는 수리(피보험자의 선택)를 통하여 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회사는 이 증권에서 스케줄에 별도금액이 기재되면 보험금 청구시 잔존물 제거비용도 보상한다.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회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a) 1사고당 스케줄에 명기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 b) 별금, 지역으로 인한 손실, 이행의 결여, 계약 상실 등의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 c) 설계결함, 재질 또는 캐스팅(casting) 결함이나 조립결함을 제외한 기술적 헐렬
- d) 마모, 침식, 산화, 피각
- e) 서류, 제도, 계산서, 청구서, 통화, 인지, 증거서류, 화폐, 유가증권, 수표 그리고 용기, 상자, 나무상자와 같은 포장자재의 손실 또는 손해
- f) 재고 조사중에 발견된 손실 또는 손해

제1부문의 적용조항

메모 1.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의 필수조건으로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기재, 임금, 운임, 관세, 세금, 사용료, 조립비 등을 포함한 조립공사 완공시 보험목적의 가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피보험자는 임금이나 물가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그에 따라 증액시켜야 하며, 다만 이것은 회사가 증권에 기재한 이후에만 효력을 갖는다. 만약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보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 이 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보상받는 금액은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삭감하며 비례 보상한다. 여하한 목적들과 비목도 이 조건에 준해서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메모 2. 손해사정의 기초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이 증권상의 손해사정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 a) 수리가 가능한 손해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
(단, salvage 제외)
- b) 전손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의 시가(단, salvage 제외)

그러나 그 한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이내로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이어야 하며 제 조항 및 조건에 적합하여야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회사는 경우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가 이행된 것을 증명하는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승인 후 지급한다. 그러나 수리될 수 있는 모든 손해는 수리를 하되, 만약 수리비가 사고직전의 가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전항(b)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손해 사정한다.

최종 수리비용의 일부로서 총 수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잠정 수리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변경, 추가, 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이 증권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메모 3. 담보의 확정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공휴일 작업, 급행운임에 대한 특별비용은 사전에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한 경우에만 이 보험에서 담보한다.

메모 4. 주위재산 담보

공사현장 또는 인접한 재산 그리고 발주자나 공사업자의 재산 또는 그들의 보관, 감독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스케줄의 제1부문 4항에 별도의 금액이 기재되고 제1부문에 부보된 보험목적의 조립, 건설, 시험가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험기간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를 보상한다. 이 보상은 건설/조립 기계와 건설/조립 플랜트와 장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부문 - 제3자 배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스케줄에 명기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 a) 제 3자가 입은 우연한 신체상해 또는 병(치명여부에 관계없이)
- b) 제 3자가 입은 우연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

제1부문하에 보험가입된 목적물의 건설, 조립 및 시운전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해야하며 보험기간중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의 비용도 추가로 지급한다.

- a)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 b) 회사에 서면으로서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이 부문에서 회사의 배상책임액은 스케줄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회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1사고당 스케줄에 명기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2. 이 증권의 제 1부문에서 담보하였거나 담보된 것의 작업 또는 개량, 수리하는데 따른 비용
3. 다음의 결과적 책임
 - a) 공사업자, 발주자 또는 제1부문에서 담보가 된 부분이나 공사와 관련된 기타 다른 회사의 종업원, 근로자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상해 또는 질병
 - b) 공사업자, 발주자, 제1부문에서 담보가 된 부분이나 공사와 관련된 기타 다른 회사, 상기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소유, 관리, 관할, 통제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
 - c) 항공기, 수상수송선박 또는 일반도로 운행허가를 가진 차량으로 인한 손해
 - d) 피보험자에게 소속되지 않는 배상책임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배상책임

제2부문에 대한 특수조건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인정, 제의, 지불 또는 보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회사가 원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명의로 변호 또는 손해의 사정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명의로 배상청구, 손해보상 청구나 기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어떠한 소송절차의 이행이나 손해보상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며, 피보험자는 회사가 요구할 때에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하여야한다.
2. 회사는 어떠한 사고라도, 피보험자에게 1사고에 대한 보상한도까지 지급하거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 또는 당해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가 합의될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회사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을 이 부문하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부문 - 발주자 예정 이익상실 담보

회사는 피보험자(이 보험증권 제1부문 스케줄의 기명 발주자)에게 이 부문에서 정의한 매출액의 감소 또는 특별비용의 증가로 실제 총이익의 상실을, 이 부문에서 특별히 면책하지 않은 한,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기간 동안 제1부문하에서 보험 가입된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조립공사 또는 시운전일정에 지장이 되어 사업개시가 지연되었거나(이하

연) 피보험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 보상한다.

이 부문하에서 보상하는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 총이익 상실액 : 보상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달성하였을 매출액과의 차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특별비용 : 오로지 보상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을 매출액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 단, 이 비용 없이는 매출액 감소가 보상 기간내에 발생하였어야하고 이 비용은 방지시킨 매출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문하의 연간보험가입금액이 연간매출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용어의 정의

보험기간

제1부문의 조립보험 물적 손해 담보가 끝나는 시점과 이 부문의 스케줄상 명기된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종기로 하는 스케줄상 명기된 기간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

지연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이 개시되었을 이 부문의 스케줄상 명기된 잠정적 개시일이나 수정된 개시일자.

보상기간

이 부문의 스케줄상의 최대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로부터 지연으로 인해 피보험사업이 영향을 받는 동안의 기간.

자기부담기간

회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스케줄상 명기된 기간. 해당금액은 자기부담기간으로 합의된 일수에 보상기간 중 발생한 일일평균손실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출액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피보험사업과정에서 판매, 유통,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금액 (할인보험 가능)

연간매출액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에 달성하였을 매출액

연간총이익

연간매출액과 기말재고액의 합계액에서 기초재고액과 특정변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회계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특정변동비용이란 고정비용이 아닌 상품, 원자재, 예비품의 구입 및 공급비, 포장비, 운반비, 화물비, 보관료,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 감찰료, 로열티 등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모든 비용

총이익율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기간동안 달성하였을 매출액에 대한 이익비율

제3부문에 대한 특별 면책사항

회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어떠한 지연이나 지연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총이익상실액과 특별비용

1-1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되지 않는 한 제1부문의 특별약관으로 담보되는 손실 또는 손해;

1-2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되지 않는 한 지진, 화산 폭발, 해일;

1-3 주변의 재산, 건설기계, 플랜트, 그리고 장비에 미친 손실 또는 손해;

1-4 작업 매체 또는 공급 원료의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피보험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자재의 부족, 파손, 변질, 악화 또는 손해

1-5 공권력에 의한 제한 조치;

1-6 자금조달부족;

1-7 사고 발생 후 이루어지는 어떠한 결함이나 하자의 수정, 보완, 개선, 교정, 제거 ;

1-8 피보험자에게 인도되었거나 사용되어지거나 제1부문하의 담보가 끝난 손실 또는 손해;

2. 어떠한 별금으로 인한 손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공사의 지연 또는 미수행, 모든 종류의 별금

3. 사업의 실제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 면허 또는 주문의 중단,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야기되는 사업상의 손해

4. 특별약관에 의하여 합의되지 않는 한 시험적 유형의 조립공사의 손실 또는 손해

제3부문에 대한 적용조항

메모 1. 보험기간의 연장

제1부문에서의 보험기간 연장은 이 부문의 스케줄에 명기된 보험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시키지 않는다. 이 부문하의 보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연장사유와 함께 요청하여 하며,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문에 유효하다.

피보험사업의 예정개시일의 변경이 있을 경우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문에 유효하다.

메모 2. 손해사정의 기초

총이익율, 연간매출액 산정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로부터 획득 할 수 있는 피보험사업의 결과를 실질과 근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다음의 요인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 a) 사업 개시 후 12개월 동안의 피보험사업의 결과
- b) 지연이 발생치 않았을 경우 피보험사업에 영향을 주었을 변화와 특수상황
- c) 사업 개시 후 피보험사업에 영향을 주는 변화와 특수상황

메모 3. 보험료의 환급

피보험자가 피보험사업의 개시일 또는 지연의 발생없이 사업이 개시한 날 이후 회계기간 12개월 동안의 총이익이 보험금액보다 적다는 것(피보험자의 감사에 의해 확인돼야 함)을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동안에 지불된 보험료의 1/3범위 내에서 그 차액과 관련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제3부문에 대한 특별조항

1. 피보험자는 이 부문의 스케줄에 명기된 간격으로 최근 공정 진척도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아래사항과 같이 최초 고지된 위험의 여하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가 승인한 약정서에 의해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이 증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예상 공정프로그램, 시운전과정 등의 변경
 - 모든 작업항목의 기계 또는 공사의 변경, 조정, 추가
 - 규정된 건설 또는 작업상태의 이탈
 - 피보험이익의 변경(사업의 중단, 청산 또는 관재인이 임명되었을 경우 등)

3. 이 부문에서 지연이나 보상청구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a) 피보험자는 유선이나 전보로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확정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b) 피보험자는 어떠한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하여 조립공사 또는 시운 전 일정의 방해를 감소시키거나 저지하는데 유익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하는데 동의, 허락하여야 한다.
 - c) 회사와 회사의 혜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보험에 가입된 당사자들에 대한 편견 없이, 당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조립현장에 출입하여 책임있는 원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의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연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는 지연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허용한 시일 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가 손해액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장부나 회계서류 및 관련청구서, 대차대조표, 증거물, 정보, 설명서, 기타 증거자료와 회사의 요청 시 보상청구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법적 진술서도 함께 작성, 구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 보험금의 최종확정이 있은 후, 한 달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상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회사가 손해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받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후 한 달 후에,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의 최소금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아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a)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필요한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 b) 만약 어떤 손해나 피보험사업의 예정 개시일의 지연과 관련 피보험자에 협의를 두고 경찰, 형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사가 완결 될 때까지.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를 제하고는 보류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독일식 조립공사보험약관 특별약관(번역문)

1) 파업, 폭동 및 민중봉기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폭동, 파업 및 민중봉기에 관련하여 이 특별약관상(항상아래 특별조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으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1. 이 특별약관의 특별조건 2의 손해가 아닌 모든 공공질서 교란행위(파업이나 직장폐쇄와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에 참가한 자의 행위
2. 교란행위를 진압하거나, 진압을 시도하거나 또는 그 교란행위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기관의 행위
3. 파업을 선동하거나 직장폐쇄에 항거하는 파업자 또는 직장폐쇄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
4. 이 같은 행위를 저지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기관의 행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다:

1. 이 보험증권의 제 조건과 제 면책 조항 및 제 규정은 다음의 특별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약관에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증권상의 손실 및 손해에 관한 규정도 이 특별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에 적용되어야 한다.
2. 다음의 특별조건은 이 특별약관에만 적용되며 보험증권의 제 규정은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보험에 적용된다.

특별조건

1. 회사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a.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공정이나 작업의 지연이나 방해 및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b. 합법기관의 몰수, 징발 또는 명령에 따른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c. 타인의 불법적인 건물 점유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d. 모든 종류와 유형의 결과적 손해 또는 배상책임,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중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

그러나 회사는 전항 b, c.의 손해 중 소유권 박탈 이전에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 중에 발생하는 보험목적물의 물리적인 손해는 보상한다.

2. 회사는 직간접여부와 상관없이 아래로 인하여 또는 아래의 결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a.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함) 또는 내란
 - b. 모반, 민중봉기에 상당하는 소요, 군사적 봉기, 반역, 반란,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폭력
 - c. 강제적으로 법률상의(de jure) 또는 사실상의(de facto)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테러리즘 또는 폭력을 통해 압력을 가하려하는 단체를 위한 또는 대신한 모든 사람의 행위 어떠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 회사가 이 조항을 이유로 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가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가 이 보험에서 담보 된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3. 회사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마지막으로 등록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함으로 이 보험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회사는 계약 파기일로부터 보험 미경과 기간에 비례한 보험료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
4. 이 특별약관에서의 1사고당 보상한도란 168시간 지속되는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한다.

이 증권의 담보기간 동안 회사의 총보상 한도는 1사고당 보상한도의 2배로 한다.

2)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스케줄에 기재된 모든 피보험자가 이 증권의 제3자 배상책임으로 담보되며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 아래와 관련된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 보통약관의 제1부문에 의하여 담보되었거나 담보될 수 있는 항목 (보상한도 또는 초과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 치명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담보되었거나 담보될 수 있는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신체상해 또는 질병

1사고 또는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연속적인 사고들의 경우 회사의 총보상한도액은 스케줄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추가보험료 :

3) 유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아래 명기된 유지기간 동안 피보험자인 공사업자가 계약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계약공사에 입한 손해를 보상한다.

4)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유지기간 동안에 계약공사에 발생한 아래의 손해를 보상한다.

- 피보험자인 공사업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유지조항(Maintenance Provisions)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입한 손해
- 건설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유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5)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 계획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가 작성 제출한 건설 및 조립공사의 일정계획 및 기타 서류와 기술적인 자료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계획이 아래에 명기된 기간 이상 변경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실 또는 손해는 회사가 손해 발생 전에 그 일정 계획의 변경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일정계획 변경기간 :

주

6)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아래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화물(항공운임 제외)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보험의 목적의 손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손해 품목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특별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된다.

보상한도액 : 1사고당

추가보험료 :

7)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항공운임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보험목적의 손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지급될 항공운임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아래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자기부담금액 : 보상가능한 추가비용의 20%, 단 1사고당 최저
- 최대 보상한도액 :
- 추가 보험료 :

8)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c)항은 조립결함을 제외한 설계결함, 재질 또는 캐스팅(casting) 결함 또는 기술적 졸렬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입은 항목 또는 부분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즉,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전에 그와 같은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교정하기 위해 지출되었을 비용으로 대체된다. 단 이 특별약관은 토목공사와 관련된 항목이나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보증기간 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보증기간 동안에 조립결함, 설계결함, 재질 또는 캐스팅(casting) 결함 또는 기술적 졸렬로 인한 보험가입 목적물의 손실 또는 손해만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전에 그와 같은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교정하기 위해 지출되었을

비용은 제외한다.

이 특별약관은 직접 또는 간접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폭발 및 불가항력으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10) 건설 및 조립용 기계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이 증권의 제1부문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기계 목록표에 명시된 건설 및 조립 장비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단 아래는 보상하지 않는다.

-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 일반 도로용으로 인가된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에 발생한 손해

건설 및 조립용 장비의 보험가입금액은 개개의 보험가입품목에 대하여 동종 동능력의 신품 제조달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1) 중고품기계 부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 조항과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보험 목적에(중고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전 운전에 기인되는 손해
- 해체에 기인되는 손해(해체가 부보되지 않았을 때)
- 비금속성 품목에 대한 손해

12)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i)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 조항과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탄화수소를 설비내에 투입한 때로부터

1. 이 증권 제1부문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며 이를 화재와 폭발손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회사는 아래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a) 특약으로 포함되지 않은 촉매제의 손해
 - b) 어떠한 관의 과열이나 균열로 개질장치에 발생하는 손해
 - c) 발열반응에 따른 과열이나 균열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 d) 피보험자의 고의로 규정된 시방서 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안전장치의 제거로 보험 목적에 발생한 손해 위의 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배상책임

13)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ii) - 촉매담보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 제1조제2항a)는 부보된 공장 및 장치에 보상되는 손해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촉매제 손해로 대체한다.

14) 방화설비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건설 현장에 충분한 방화 설비, 소방기구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화재 시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종업원들이 그와 같은 방화설비 및 소방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즉시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설 현장에 보험 목적물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보관 단위당 가액은 아래에 명시된 ()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각 보관 단위는 각기 50m의 공지 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연성 물질 (나무상자등 포장재 포함) 특히 가연성 액체 및 기체는 공사 중인 물건 또는 모든 가열성 작업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4. 연소성 물질 주변에서 용접, 납땜 또는 불을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소화 작업에 숙련된 근로자가 적절한 소화 기구를 갖추고 그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공사 목적물의 가동에 필요한 모든 방화 설비는 시운전 개시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현장외 보관창고에 관한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아래의 구역내에 있는 현장외 보관창고에 있는 보험목적물(제조업자의, 유통업자의, 또는 공급업자의 현장에서 생산, 처리, 또는 보관되고 있는 재산은 제외)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한다.

회사는 창고 또는 보관창고의 일반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 한다:

- 보관구역이 위치해 있는 지역 또는 보관하는 재산의 종류에 맞게 둘러싸여있고 (빌딩 또는 울타리), 경계를 서고 있으며 그리고 화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개별 보관창고는 각각 50미터의 공지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보관창고는 20년 주기의 강우 또는 홍수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위치가 선정되어야 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 보관창고별 가액의 한도를 설정한다.

구역한도 :

보관창고별 최대가액 :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 1사고당 최소

추가보험료 :

16) 공동보험 특별약관

이 증권은 아래의 공동보험자를 대리하여 간사사인 ()가 발행하며 각 보험자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인수비율 회사명

17)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이 증권상의 보험료를 회사에 ()회로 분납한다.

2. 1) ()회분납

제 1 회 : 책임개시일까지 보험료의 (%)%

제() 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

제() 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

제() 회 : 년 월 일까지 보험료의 (%)%

2) 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3) 미납입 보험료 전액을 차감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3. 1)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약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 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둔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2) 회사는 유예기간 만료 7일전에 계약효력 상실을 예고하고 그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

기간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18) 환율 특별약관

a)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 16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한다.

b)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 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한다.

19)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하는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케줄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21) 내륙운송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지역내에서 조달한 목적물의 손실 또는 손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한다.

- 지역한도내에서 보험목적물을 계약현장으로 운송(수로 또는 항공운임 제외)중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충돌, 충격, 흥수, 지진, 범랑, 산사태 또는 낙석, 강도 또는 화재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보험목적물이 운송에 적절하게 포장되고 준비된 경우
- 이 추가약관의 보상한도는 운송별로 를 초과하지 않는다.

현장외 보관창고가 필요한 경우, 추가약관 15 및 37조가 추가로 적용된다.

지역내에서 조달한 목적물의 총가액:

자기부담금:

추가보험료:

22) 보험료 환급 특별약관

회사는 건설공사가 완료되고 미지급보험금이 종결된 후 손해율이 ()%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증권에 기재된 총 보험료의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다.

23) 72 시간 특별약관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지속적인 (72) 시간 동안 발생한 지진, 회오리바람(사이클론), 흥수, 폭풍, 폭풍우, 물, 침하 또는 붕괴에 기인한 모든 손실, 멸실, 손해는 하나의 사고로 간주한다. 사고가 미치는 범위와 영역에 비추어, 보상하는 위험요인이 연속적이든 산발적이든, 또는 손실, 멸실, 손해가 동일한 지진학적 기상학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그 여부를 불문한다.

매 사고는 보상하는 위험요인(peril)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멸실, 손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개시일은 보험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24) 시험비행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재보험 NMA 1779a 또는 재보험증권표 IS6이 시험비행에 적용된다고 합의한다. 이 특별약관은 시험비행이 정부(군대)에 이양되기 전에 적용된다.

25) 신체상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 회사는 스케줄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근무기간에 발생한 종업원의 신체상해를 보상한다. 종업원은 피보험자의 종업원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완공을 위해 고용된 종업원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기타 유사한 보험(산재보험)에 담보되었거나 담보될 수 있는 종업원은 이 보험에서 당해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담보하며 이 보험하에서의 총보험금액은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손해액에서 종업원이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26)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공사현장에 위치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재산을 소유, 점유, 사용, 관리 하고 있는 사람의 손해를 스케줄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건설/조립 기계 또는 장비에 대한 손해 또는 이 증권 제1부문(메모 4. 제외)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7) Wet Risk와 관련한 면책조항

이 특별약관은 이 증권의 제1부문에 포함되며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다음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 1) 해상관련 모든 배상책임
- 2) 통상적인 바다/강의 작용의 결과로 인한 매립재료(토양, 모래, 자갈, 암석 등) 유실손해
- 3) 파일공사(파일박기, 뽑기 또는 치환)로 발생한 파일(말뚝)의 손해 및 파일을 유기(遺棄)함으로서 발생한 손실
- 4) 보트, 선박, 바지선 또는 이와 유사한 부동(浮動)식 장비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손해
- 5) 공사작업에 적합한 기상조건을 기다림으로서 해상 건설장비를 이동 또는 철수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그밖의 비용
- 6) 통상적인 바다/강의 작용 결과로 인한 준설 및 재준설 비용
- 7) 침하, 침몰로 인한 정박지, 부두, 방파제 및 그와 유사한 시설물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8) 자연적 조류, 해류, 파도 및 토양침식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배상책임
- 9) 각종 와이어, 앵커, 체인 또는 부표류 등에 발생한 손해

28) Wet Risk와 관련한 보증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갑작스런 해풍, 폭풍에 대하여 ()시간 이전에는 기상대와 계속적인 연락가능 체제
- 2) 건설현장과 해상로와는 최소한 ()m의 거리

29) 통상적인 바다/강의 작용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아래 기간

중에 한번 발생할 것으로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바다 또는 조수의 상태로 간주되는 통상적인 바다 또는 조수 작용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계약공사에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 1) () 년 관측기간 (일시적인 작업 : ()년 관측 기간)
- 2) 보퍼트풍력 계급 8까지 나타나는 바다 또는 통상의 조수 작용의 상태

30) 지진지역의 구조물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설계시에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건축관련 규정에 따라 지진위험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공사자재 및 공사기술과 제반 역학계산이 적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진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31) 지진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32) 홍수 및 범람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홍수 및 범람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33)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이 보험은 아래의 사항이 적용된다.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설계결함(특별약관으로 담보되는 경우), 재질결함 또는 기술적 졸렬로 인한 시설물, 시설물의 일부분, 같은 종류의 기계 또는 장비의 손실 또는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후에 아래의 비율로 보상한다:

- 100% 처음 2번째 사고
- 80% 3번째 사고
- 60% 4번째 사고

- 50% 5번째 사고
그 이상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34) 폭풍, 바람으로 인한 수해(水害) 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퍼트풍력계급 8등급(평균 풍속 62 km/h 초과) 이상의 폭풍 또는 이로 인한 수해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35) 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된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한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 준비와 관련된 행위
 - a.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 b.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c.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a.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 b.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 (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6) 캠프 및 보관창고에 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화재, 홍수, 범람에 의하여 캠프 및 보관창고에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다만, 이 캠프 및 보관창고가 과거 20년 동안에 기록된 최고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각 저장 창고가 적어도 50m이상 떨어져 있거나 방화벽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다.

캠프당 보상한도액 :

개별 보관창고당 보상한도액 :

37) 지하매설 전선 및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공사 개시 전에 관련 기관에 피보험자가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단계를 마쳤을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매설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는 상기 시설물의 수리 비용만을 보상하며 모든 결과적 손해와 벌금은 보상하지 않는다.

38) 농작물, 산림 및 양식 등 부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농작물, 산림 및 양식(사육, 재배, 경작, 양식 및 배양 등 포함)에 대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39) 핵연료 구성요소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보험의 담보를 확대하여 핵연료 구성요소를 아래와 같이 보상한다.

1. 정의

연료 구성요소는 아래로 이루어진다.

- 연료 물질 (핵분열성, 핵분열성 물질로 변환 가능한, 합성 그리고 혼합 물질)
- 연료 피복 (fuel cladding)
- 지지대 (support structure)

2. 담보기간

이 추가약관은 이 계약이 유효할 때에 한하며 회사의 책임은 보험목적물이 조립공사 현장에 하역된 직후부터 개시 되며 각각의 연료 구성요소들이 원자로 압력관 안에 배치되면 종료된다. 이 추가약관의 평균 지속기간이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담보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3. 보상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요한 손실 또는 손해의 모든 수리 비용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후에 보상한다. 이 비용은 아래를 포함한다.

- a. 손상된 연료 구성요소에서 연료를 추출하고 이를 검사, 보관하는 비용
- b. 연료 피복 및 지지대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 c. 손상된 연료 물질을 다시 가공하는 비용
- d. 분실된 또는 손상된 연료 물질의 교체 비용
- e. 연료 물질, 연료 피복 및 지지대를 원료 구성요소로 조립하는 비용
- f. 수입 및 운송 관련 허가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운송료 및 보험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료 구성요소의 한 부분에 대한 보상한도는 각 부분이 보험가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4. 1사고당 자기부담금

5. 이 확대담보를 위한 추가보험료는 보험가입된 연료 구성요소의 실제 가액의 %로 한다.

연료 구성요소의 실제 가액 :

날짜 _____	연료 무게 _____	실제 가액 _____
----------	-------------	-------------

40) 정화 비용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합의

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보험의 담보를 확대하여 일반적인 운영중에 방사능에 오염되고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영향을 받은 목적물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추가비용을 보상한다.

이 정화 비용은 아래를 포함한다.

- a. 손상된 부분이 수리가능해지기 전에 발생한 비용,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운영중에 전리 방사선에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는 비용
- b. 손상된 목적물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비용, 예를 들면 차폐물 및 보호벽의 제거/교체
- c.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비용, 예를 들면 보호복, 휴식 시간, 방사선 노출제한 등
- d. 일반적인 운영중에 오염된 목적물을 수리할 수 없어 교체하는 추가 비용
- e. 사고 수리 후에 필요한 검사, 점검, 수용 조사표(acceptance surveys) 비용
- f. 방사능 잔해의 제거 및 처리 비용

이 추가약관의 총보상한도는 1사고당 _____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증권의 제1부문에서 담보되는 당해 목적물의 일반적인 수리 비용은 상기 보상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41) 원자로 압력관 및 내부장치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보험의 담보를 확대하여 원자로 압력관 및 내부장치(연료 및 흡수재 구성요소 제외)1)를 보상한다. 일반적인 수리비용이나 정화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 추가약관의 총보상한도는 1사고당 _____을 초과할 수 없다.

원자로 압력관의 외형조건은 아래에 첨부된 도면 No. _____으로 한정한다.

1) 연료 구성요소는

연료 물질 (핵분열성, 핵분열성 물질로 변환 가능한, 합성 그리고 혼합 물질), 연료 피복(fuel cladding) 그리고 지지대 (support structure).

흡수재 구성요소는 원자로의 안전봉(shut-down rods), 제어봉(control rods), 거친제어봉(shim rods) 그리고 구조적 물질.

42) 침하 부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불충분한 지반다짐, 하층토개발 또는 잘못된/불충분한 파일 때문에 발생한 침하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3) 배관, 도관 및 케이블설치증 개방 도량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폭 풍우, 비, 홍수 또는 범람으로 인해 배관, 도관 또는 케이블이 모래, 실트, 진흙, 침식, 붕괴, 부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굴착된 개방 도량 또는 그 안에 있는 목적물의 손실 또는 손해를 1사고당 최대거리 ()Km까지 보상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피보험자는 배관 끝 주변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배관 끝이 홍수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밤이나 휴일이나 상관없이 바로 배관을 막아야 한다.

44) 관로 설치시 누출조사 비용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이 증권하에서 다음도 보상한다.

- a. 정수역학적 검사(특별장비 대여, 운영 또는 운송 비용 포함)후에 발생한 누출조사 비용
- b. 손상되지 않은 도량에 대한 기초공사, 누출의 조사 또는 수리에 필요한 기초공사로 굴착 또는 관로를 파헤치고 되메우는 공사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보상한다.

-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거나 현장에서 공사실행이 잘못되어 누출이 발생한 경우
- 용접 이음새의 %를 엑스레이를 통해 점검하고 발견된 모든 결함을 제거한 경우

총보상한도액 :

조사구간당

1계약기간 동안

잘못된 용접 이음새의 수리로 인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45) 강, 철도제방, 도로 등의 하부관로를 뚫는 작업에 관한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보험가입금액 또는 아래의 보상한도 내에서 강, 철도제방, 도로 등의 하부관로를 뚫는 작업중에 발생한 손해를 적절한 드릴링 작업을 위해 필요한 토양분석(토양샘플, 시험천공, 체분석 등)이최신 기술표준에 따라 작업개시전에 실행되고 공사업자가 드릴링 기술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보상한다.

회사는 아래의 원인으로 인한 또는 결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드릴링이 목표지점에서 빗나간 경우, 예정된 방향에서 벗어난 경우
- 드릴링 진흙(예를 들면 벤토나이트)의 유실 또는 변화
- 수평방향 드릴링 부분의 관로의 외관 절연재에 대한 손해

보험가입금액1) (드릴링 비용+관로의 자재비용+드릴링 장비의 가액) :

드릴링작업당 보상한도액:

보험요율: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1사고당 최소

- 1) 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보험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가입금액의 복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46) 강우, 흉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강우, 흉수 또는 범람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적정한 안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만 이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에서 적정한 안전조치라 함은 전 보험기간동안 건설현장에 대하여 20년 주기의 강우, 흉수 또는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다만, 모래, 나무 등 장애물이 수로에서 즉각적으로 제거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47) 수평방향 드릴링 부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아래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 수평방향 드릴링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결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
- 수평방향 드릴링의 노선과 관련하여 관로 자체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

48) 라이닝, 플라스틱 장비 및 촉매에 대한 특별약관 (배연정화플랜트용)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특별 조건이 아래에 대해 적용된다.

- 고무로 만들어진 또는 플라스틱을 입힌 라이닝

-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비
- 촉매
 1. 아래의 원인으로 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손실 또는 손해만 담보
 - 보상하는 기타 부분에 대한 중요한 손해의 결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시운전의 지속적 영향으로 발생하지 않은 기계적 효과의 결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조립 또는 운영결함(운영결함은 제조사의 설명서를 따르지 않은 과실), 기술 부족, 과실, 악의적 손해의 결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아래 첨부된 배연정화시설용 라이닝 및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비에 대한 방화권고사항을 따랐으나 발생한 화재, 번개 또는 폭발의 결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촉매활동의 감소는 아래의 경우에만 손해로 인정된다.
 - 중요한 변화로 인해 활동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최소 10% 이상 감소된 경우
 - 시운전중 지속적인 운영의 영향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 설계결함, 계산 및 기준, 재질결함, 사용결함 또는 금속 지지대 라이닝안의 부식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1차손실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제거 비용을 보상한다.
 3. 6개월 이상의 시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가의 비율에 따라 보상(제거비용 포함)한다.
 - 유사 플랜트에서 이미 경험한 사용연한
 - 운전기록에 의해서 결정된 사용연한의 감소
 4. 이 증권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촉매활동의 감소가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은 증권상 확정되어 있는 최소금액인 20%이다.
 5. 상주 엔지니어/교대조장은 증권상 대표자로 간주된다.

제거비용 / 1사건당(event) 보상한도액
 / 추가보험료:

49) 고무라이닝, 플라스틱 코팅, 플라스틱 장비를 위한 방화 권고 사항 추가약관

(배연탈황플랜트(FGD 또는 DESOX) 및 배연제거플랜트(FGC)용)

FGD 및 FGC 플랜트에서의 많은 대화재는, 이와 같은 플랜트의 조립, 총정비 및 변경에 필요 한 기준은 일반적인 건설현장에 충분한 통상의 방화조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플랜트는 화재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화재예방이 필요 하다.

FGD 및 FGC 플랜트에 관련된 추가 위험

- 대량으로 사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화재하중
- 조립, 총정비 및 변경작업에서 사용되는 용제(접착제 포함)로 인한 화재하중
- 아래의 경우에는 소방을 어렵게 한다.
 - 독성화재가스로 인한 대량의 연기
 - 용기 및 배관내의 화재 확산
 - 건설현장의 높이 및 용기 / 배관으로 인한 진입방해
 - 건설현장이 높은 지역의 굴뚝효과와 인접작업장으로의 화재확산

화재 리스크를 경감하는 조치사항

1. 화재하중의 경감

- 라이닝 재료와 용제(접착제 포함)의 양은 최대한 1교대 작업분 필요량의 절반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포장재료는 즉각 제거하여야 한다.
- 비계 및 플랫폼은 목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 가능한한 거푸집은 불연재로 만들어야 한다 (또는 최소한 난연재)
- 보호덮개 및 보호막은 불연재로만 만들어야 한다.
- 사용되는 재료의 재고동산은 플랜트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라이닝 작업 개시전에는, 다음의 구조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난통로 및 비상계단은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 승강기와 소방용 승강기는 상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비상 발전설비 포함). 광전자 벽이 높도가 짙은 연기로 인하여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도 승강기 출입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
- 습식 소화설비는 상시 작동 가능하여야 하고, 가장 높은 방수구에서도 최소 4에서 5 bar의 작동압력을 가져야 한다.
- 배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소방대는 소방설비를 추가적으로 갖춘 소방통제소의 설치를 위해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대해서 조언하여야 한다(내압호스, 노즐, 커넥터, 커플링, 소화기, 방독설비, 구조장비 포함).

3. 소방 조치

라이닝 작업 개시전에는, 다음의 추가적인 소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플랜트는 배관 및 케이블 개구부를 포함한 내화 칸막이에 의한 몇 개의 방화구획으로 나뉘어

져야 한다. 불연재로 만들어지고 철판을 마주하고 있는 일시적인 내화 칸막이는 90분간 화재를 견뎌내어야 한다. 일반적인방화덮개, 배연차단기 또는 방화매트는 직경이 큰 덕트에 적합하지 않다.

- 작동 가능한 분무형 방류설비는 다양한 높이의 흡입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분무형 방류설비에 장착된 흡입기 분무 노즐을 위한 설비에 설치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분무형 방류설비가 선형으로 배열된 배관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 천공된 호스).
- 제어실 또는 소방대와 연결된 비상 통신장비를 갖춘 소방본부는 항상 순찰하여야 하고 더불어 중식시간 뿐만 아니라 작업 종료후 3시간까지, 야간, 스파크 발생 가능한 작업후에도 통제되어야 한다.
- 용접 및 기타 화기 작업(플레임 절단, 그라인딩, 버너싱 작업 등)은 작업 장소에 비치되고 소방본부에 의해서 매일 통제되는 새로운 작업허가를 필요로 한다.
- 화기작업의 개시전에는 적합한 소화 장비를 작업장 인근에 갖추어야 한다(수반가압호스, 커플링, 연결구 등).
- 유선 또는 통신장비를 작업지역에 갖추어야 한다.
- 가열장비(온도가 높은 램프 포함)는 인화성 물질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격자를 필요로 한다. 휴식중이나 일일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꺼야한다.
- 금연규정은 플랜트 지역내, 매점 및 작업준비를 하는 곳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경험사항

- 공단 방화 시스템상의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운영가능한 지원체계는 예기치 못한 이유로 인하여 다음 사항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장치가 된다.
- 전체적인 방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정이나 부수적인 유지관리로 인하여 언젠가는 가동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시스템의 단지 일부만 가동 중지되어야 하며 유사한 성능의 대체품이 상시가동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50) 정보통신조항

이 보험증권에서 재물 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한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지 않는다.

A.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담보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보된다.

- B.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51) 정치 위험 면책조항

다음 사고의 직.간접적 결과로 야기된 손실이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 a)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위, 전투 또는 그와 유사한 작전수행(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전
- b) 합법적인 권한에 의한 몰수, 징집, 징발로 야기된 영구적 또는 단기 불법 점유, 강탈
- c) 민 또는 군의 봉기, 반란, 모반, 혁명, 군 또는 불법 권력, 호전적인 법 또는 계엄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 또는 선포되게 하는 사건이나 원인을 의도하거나 그러한 것에 이르게 하는 폭동, 소란
- d) 단체의 대리자 또는 관계자가 저지른 테러행위.

이 조항이 의도한 바에 따라 “테러”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특정 지역의 대중이 공포를 느끼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를 포함한다.

보험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손실 및 손해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조치, 소송, 처리과정에서, 손실 및 손해가 담보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공공 권력의 조치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배상금이 줄어든 경우, 보험자의 책임도 비례하여 줄어든다.

공공 권력의 요구로 피보험자가 배상을 분담하는 경우 보험자 또한 상응하는 분담금을 부담한다.

52)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 A.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또는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B.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C. 회사는 상기(A)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 상기 A, B, C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53) 보험기간 자동연장 특별약관

회사는 스케줄상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자동으로 ()개월 연장한다.

54) 보험 목적의 보관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 목적물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보관 단위당 가액은 아래에 명시된 ()를 한도로 보상을 하며, 각 보관 단위는 각기 50m의 공지 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55) 내륙운송 및 보관 중 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지역한 도내에서 보험목적물을 계약현장으로 운송(수로 또는 항공운임 제외)하는 중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운송별로 이 특별약관의 최대 보상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56) 자연재해 부담보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자연재해(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7)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특별약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한 손해액에 상관없이 보험 가입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58)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피보험자는 공사기간중의 예상(공사)계약금액에 기초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추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피보험자가 공사완공시점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자에게 보고하며 회사는 최종 보험가입금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59) 잔존물제거비용담보 특별약관

보험자는 보험기간 동안 Section I)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보험가입목적물이 파손되어 서이를 파괴하거나 치우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60)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보험기간동안 피보험목적물의 가액이나 실제공사금액이 예상프로젝트 혹은 예상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에게 통보되고 피보험자가 동의한 계정된 예상프로젝트 금액, 도급금액, 프로젝트 금액의 (%) 한도내에서 증액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증액은 그 내용이 사고발생이전에 증권에 기재되어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증가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효력 발생됩니다.

(위의 기입란이 공란인 경우, 해당 정보는 보험 증권 스케줄의 해당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61) 공공기관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해당 국가가 제정한 제규정, 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또는 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을 명세서에 명기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특별약관을 추가하기 이전에 발생한 제규정, 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비용 또는 사고

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개조하기 위한 비용.

이 복구 작업은 보험회사의 동의 하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타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완공(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62) 50:50 해상/건설 손해 분담 특별약관

본 조항은 대한민국 국외에서 위탁 발송되는 해상적하보험의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60일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 a) 피보험자는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손상에 대하여 현장에 도착 직후 보험목적물의 개별 품목을 검사합니다.
- b) 추후에 개봉할 목적으로 남겨진 포장품목의 경우 포장에 대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육안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해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개봉하여 검사 후 발견된 손해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c) 이상이 없이 운송된 화물의 포장상태에 대해 아무런 손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개장 도중 발견된 다음의 수반된 손상은, 그러한 손상이 건설 현장 도착전이나 후에 유발되었는지의 규명 여부에 따라 해상적하보험 또는 동 보험의 제1부문에서 다루어 집니다.
- d) 화물이 입은 손상이 건설현장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에 유발되었는지의 규명이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손상에 대한 비용은 해상적하 보험자와 동 보험의 제1부문 보험자들간에 균등하게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가능한 보유한도액(자기부담금)의 50%가 적용됩니다.

63) 전문가 및 조사자비용 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재물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과 관련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전문가 용역비에는 금융당사자의 기술적인 자문가 관찰 용역비와 이하에서 담보하는 사고임을 조사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에 의해 요구되어질 수 있는 입증을 위한 전문용역과 법적 비용, 보험금청구를 위한 준비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에 열거된 비용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64) 대주단보호조항

1. 보험의 양도 / 보험금 수취인 조항

년 월 일자 체결된 보험양도협정에 따라, 차주는 보험증권상의 모든 권리, 자역 및

이익(모든 보험금 및 보험료의 환급을 포함한)을 Security Agent 와 Secured Creditors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차주에게 지급될 모든 금원이 원화일 경우, intercreditor agent 로부터 직접 명기된 타명의 계좌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을 때까지, 다음의 공항철도의 원화계좌로 지급됩니다.(계좌번호 :)

2. 대위권 포기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서 담보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3. Secured Creditors 의 책임

보험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Secured Creditors 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4. 변경

Intercreditor Agent 와 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보험증권상의 어떠한 사항(보상한도의 감액 또는 보험조건, 자기부담금의 상향조정, 면책사항 및 예외사항을 포함)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5. 손해분담 포기

보험자는 Secured Creditors, Intercreditor Agent 또는 Security Agent 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여타의 다른 보험에 대한 손해분담권리를 포기합니다.

6. 취소, 축소 및 보험담보

보험자는 Intercreditor Agent 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a)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계약의 종료 행위 이전 최소 45일(또는 테러, 전쟁 등 동질의 위험의 경우 더 짧은 기간) 이전에 보험자는 Intercreditor Agent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i) 만약 어떤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로 보험증권을 취소 또는 전체 또는 일부의 보험담보를 취소 할 경우,
- (ii) 보상한도의 감액 또는 담보변경, 자기부담금의 증액, 면책사항 또는 예외사항, 원계약 증권상의 만기일 이전의 계약종료

(b) 보험료 납입의 불이행의 경우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c) 만약 보험자가 차주 또는 여타 피보험자 또는 Intercreditor로부터 보험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만기일 최소 45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갱신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즉시 Intercreditor Agent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d) 보험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로 만들거나, 집행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나 누락 또는 사건을 보험자가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7. 통보 / 커뮤니케이션

- (a) 이 조건 또는 증권상의 모든 통지 또는 기타 연락사항은 팩스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 (i) 만약 팩스로 송부될 경우, 전송후 즉시 송신자의 팩스기기에 전송이 올바로 되었음이 기록 되어야 합니다.
- (b) Intercreditor Agent의 주소 및 팩스번호는 Intercreditor Agent에 의해 대주의 보험 브로커에게 통보됩니다.
- (c) Intercreditor Agent와 Security Agent의 최초 통보 주소 및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ecurity Agent 및 Intercreditor :

주소 :

Fax No :

Email Address :

Attention :

65) 보험금 가지급 조항

보험자는 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급될 보험금의 (%) 수준까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기입란이 공란인 경우, 해당 정보는 보험 증권 스케줄의 해당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지하매설 전선, 배관 또는 기타 설비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공사 개시 전에 관련 기관에 피보험자가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단계를 마쳤을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매설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지도(지하에 매설된 기타 설비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상에 표시된 위치와 동일한 지하에 매

설된 기타 설비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청구는 손해액의 20% 또는 아래에 기재된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지도상에 표시된 위치와 다른 곳에 매설된 기타 설비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청구는 아래 b)에 기재된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단, 회사는 상기 시설물의 수리비용만을 보상하며 모든 결과적 손해와 별금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 : a) 손해금액의 20%

b) 1사고당 최소

66) 보험금직접청구조항

원증권하에서 발생된 클레임에 대하여 원수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재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면 재보험자 및 원수보험자의 배상책임의무는 소멸됩니다.

각 재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재보험에서 정한 상대적 지분으로 한정되며, 원수보험사는 리딩 재보험 지분만큼의 클레임에 대한 결정을 따릅니다.

67) 보험금 수취인 조항

보험과 관련한 차주에게 지급될 모든 금원이 원화일 경우, intercreditor agent로부터 직접 명기된 타명의 계좌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을 때까지, 다음의 ()의 원화계좌로 지급 됩니다.
(계좌번호 :)

68) 도면과 서류 조항

도면, 설계도, 파일, 서류, 원고 혹은 컴퓨터 기록 형태의 보험목적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부문은 저장되어있던 정보를 작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포함하여 도면, 설계도, 파일, 서류, 원고 혹은 컴퓨터 기록 등을 재작성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a) 피보험자는 도면, 설계도, 파일, 서류, 원고 혹은 컴퓨터 기록을 최근의 상태로 백업하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b) 왜곡되거나 이용 불가능한 정보로 인한 손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c) 사고당 및 총 보상한도는 스케줄에 명기된 보험가입금액의 1%를 넘지 않습니다.

69) 급격하고 우연한 누출, 오염, 오탱 추가약관

본 증권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누출, 오염, 오탱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신체상해나 재물손해. 단 본 조항 1은 신체상해 혹은 유형 자산의 물리적 손상 혹은 파괴, 손상 혹은 파괴된 재산의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고 예기치 못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누출, 오염, 오탱이 보험기간중 급격하고 우연하고 예기치 못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누출, 오염 혹은 오탱 물질을 제거하는 비용
3. 별과금, 부과금 또는 징벌적 배상책임

본 조항은 동 보험하에서 동 조항이 없었더라면 보상되지 않았을 어떤 배상책임에 확장하여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70) 우선적용 조항

이 보험은 우선 적용됩니다. 다른 보험이 우선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의무는 우선 적용됩니다.

71)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보험기간동안 피보험목적물의 가액이나 실제공사금액이 예상프로젝트 혹은 예상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에게 통보되고 피보험자가 동의한 계정된 예상프로젝트 금액, 도급금액, 프로젝트 금액의 (%) 한도내에서 증액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증액은 그 내용이 사고발생이전에 증권에 기재되어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증가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효력발생 됩니다.

(위의 기입란이 공란인 경우, 해당 정보는 보험 증권 스케줄의 해당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72) 중고품 시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 및 그에 첨부된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변 압기에 대하여 시운전 또는 시험가동을 확장담보하기로 한다. 그러나 담보기간은 시운전 또는 시험가동 시작일부터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한 중고품에 대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1. 손해가 시운전, 시험가동 이전의 작동에 기인하는 경우
 2. (해체를 면책으로 하는 경우) 손해가 기계의 해체에 기인하는 경우
 3. 시험실에서 시험하는 동안 일어난 손해
- 단 이 특별약관은 토목공사와 관련된 항목이나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3)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1. 아래의 이유로 파일 또는 옹벽의 전체 일부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는데 소용된 비용
 - a. 공사 중 잘못된 곳에 설치하여, 정렬이 잘못되어서, 또는 움직일 수 없어서(jammed) 발생한 비용
 - b. 항타 또는 항발 작업 중에 발생한 분실, 유기, 또는 손상으로 인한 비용
 - c. 항타/항발 기계 또는 케이싱(casing)을 움직일 수 없어서 또는 손상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2. 파일이 끊어지거나 이음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수정하는데 소요된 비용
3. 물질의 형태에 관계없이 새어나가거나 침투해 들어온 상태를 수정하는데 소요된 비용
4. 벤토나이트 등이 유실되어 이를 채워 넣거나 교체하는데 소요된 비용
5. 파일 또는 옹벽이 응력시험이나 재하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혹은 파일 또는 옹벽의 시공결과가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6. 파일 또는 옹벽의 외관이나 크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상기 조항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생한 손해가 담보됨을 입증할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2017 건설공사손해공제 관련 법규집

07

건설공사손해공제 가입 관련법규

L O C A L F I N A N C E A S S O C I A T I O N

건설공사손해공제 가입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 입찰공사, 해당 공종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 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 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

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 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 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 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 가격 작성 시 제2장제5절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 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

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 통지 의무
-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 라. 보험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자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 · 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 ·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 이전 · 질권의 설정 ·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5. 손해보험

-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보험 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관급자재를 포

함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 라. “가”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까지로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해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제8절 “8. 공사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8절 “3”부터 “5”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사.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아. “가”부터“사”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집행 기준」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공제가입 및 사고처리 문의처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 본 부		
서 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7층 배상공제팀	02-3274-2021	02-3274-2009
▼ 지 부		
서 울 서울 종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1동 10층 자산관리과	02-2133-3298	02-2133-1031
부 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9층 회계재산 담당관실	051-888-2271	051-888-2249
대 구 대구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회계과	053-803-3095	053-803-3069
인 천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재산관리담당관실	032-440-2667	032-440-8653
광 주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회계과	062-613-3136	062-613-3119
대 전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토지정책과	042-270-6493	042-270-6469
울 산 울산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회계과	052-229-6372	052-229-2539
세 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예산담당관실	042-270-6493	042-270-6469
경 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회계과	031-8008-4180	031-8008-2339 (전자 0505-345-6014)
강 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회계과	033-249-2339	033-249-4098
충 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회계과	043-220-2836	043-220-2819 (전자 043-220-2829)
충 남 충남 흥성군 흥북면 충남대로 21(본관동) 충남도청 세정과	041-635-3645	041-635-3047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3층 회계과	063-280-2334	063-280-3168
전 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3층 회계과	061-286-3481	061-286-4831
경 북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풍익관2층 208호) 회계과	054-880-8543	054-880-8544
경 남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회계과	055-211-7898	055-211-3819
제 주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도청 제2청사 세정과	064-710-6918	064-710-6909